

出國報告（出國類別：考察）

韓國醫師考試 OSCE 與司法考試制度

服務機關：考選部

姓名職稱：楊部長朝祥·林主任秘書光基·黃副司長慶章

派赴國家：韓國

出國期間：98 年 11 月 9 日至 12 日

摘要

2009 年 9 月，韓國醫師國家考試除了傳統筆試之外，開始增加列考客觀結構式臨床考試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在亞洲國家中第一個於醫師國家考試中採用 OSCE。由於我國將於 2012 年將 OSCE 納入醫師考試制度，國內各醫學院代表決定於 2009 年 11 月 9 日至 11 日前往韓國觀摩醫師考試 OSCE，邀本部楊部長率團共同前往。

又由於我國定於 2011 年起，推動司法官及律師考試改進方案，新制考試第一試均為測驗式試題，及格者得應第二試，均為申論式試題；司法官另有第三試，為口試。為落實司法官及律師考試之持續改革，本部考察團乃決定於觀摩醫師考試結束後，順道參訪韓國司法考試主管機關及相關教考訓用機關、機構及學校。

目前韓國醫師考試包括實技考試與筆記考試 2 部分，二項考試均合格，始為醫師考試之最終合格者。實技考試計畫於 2009 年 7 月正式公告，醫學院畢業生報名時間為 2009 年 8 月 4 日至 8 日，測驗時間自 2009 年 9 月 23 日至 12 月 1 日 (原定 12 月 5 日止)，為期 51 天。本報告根據參訪所蒐集之資料，就韓國醫師考試及其實技考試制度進行研究分析，作為未來我國將 OSCE 納入國家考試流程之參考。

在司法試驗部分，現行韓國法曹人之養成制度，主要以法學教育、選拔試驗以及研修制度等三階段所構成。為改革法曹人養成制度，韓國自 2009 年起導入法學專門大學院(Law School)，包括 25 所大學，2,000 名的定員。韓國法務部並已配合研擬辯護士試驗法草案，經國會於 2009 年 4 月通過施行。新法以 Law School 碩士學位取得者為限，賦與辯護士試驗之應試資格；Law School 畢業後，5 年內以得應試 5 回為限。本報告根據拜會資料，分別就韓國現行司法試驗、導入新制之情形等分析研究，作為我國目前改進司法官及律師考試制度之參考。

關鍵字：醫師考試、OSCE、法曹、辯護士、律師考試、Law School

目 錄

壹、前 言	1
一、參訪與考察之緣起與行程	1
二、考察項目	3
貳、韓國醫師考試 OSCE	7
一、韓國醫師考試制度	7
二、OSCE	12
三、考試結果	18
參、韓國司法考試制度	19
一、舊司法試驗制度	19
二、司法研修院	35
三、引進美國式 Law School 之背景	42
四、未來的辯護士試驗新制	47
肆、心得與建議	49
附錄：	
1. 參訪及考察照片	55
2. 韓國保健醫療人國家試驗院簡報資料	59
3. 韓國司法試驗相關法令：中文翻譯	81
4. 大韓辯護士協會書面答覆資料	117
5. 韓國法務部書面答覆資料	133
6. 韓國司法研修院書面答覆資料	211

圖表目錄

圖 1	位於國試院地下一樓之第二考場平面圖	15
圖 2	韓國醫師國家考試之考試合格統計	18
表 1	參訪及考察行程	2
表 2	韓國醫師考試之考試方法	8
表 3	韓國醫師考試之考試時間表	9
表 4	韓國 2009 年醫師考試日程	11
表 5	OSCE vs. CPX	13
表 6	第二次試辦考試結果	14
表 7	試辦考試中對於腹痛個案之評分正確性	14
表 8	韓國醫師國家考試之考試合格統計	18
表 9	司法試驗之應試資格、試驗科目、試驗日數日程、場所、方式等	23
表 10	司法試驗對於障礙者之便宜措施提供內容	24
表 11	最近 10 年間司法試驗應試者及合格者	25
表 12	2008 年度第 50 回司法試驗第一次試驗合格者現況	26
表 13	2008 年施行第 50 回司法試驗第二次試驗合格者統計	29
表 14	2008 年施行第 50 回司法試驗最終合格者統計	32
表 15	韓國法曹人研修制度變遷過程	35
表 16	歷年司法研修院修畢者現況	36
表 17	司法研修生現況	37
表 18	司法研修院與美國 Law School 比較	38
表 19	司法研修院學期別・修習領域別履修學分	39
表 20	司法研修院人員構成	40
表 21	司法研修院修畢者最近 5 年間就業現況	41
表 22	韓國設有法學專門大學院之 25 所大學	43

壹、前 言

一、參訪與考察之緣起與行程

2009 年 9 月，韓國醫師國家考試除了傳統筆試之外，開始增加列考客觀結構式臨床考試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在亞洲國家中第一個於醫師國家考試中採用 OSCE。由於我國將於 2012 年將 OSCE 納入醫師考試制度，在台灣醫學教育學會謝博生理事長支持下，國內各醫學院代表經韓國首爾大學 Yoon-seong Lee 教授協助接洽，決定於 2009 年 11 月 9 日至 11 日前往韓國觀摩醫師考試 OSCE，邀本部楊部長率團共同前往。經各醫學院推薦，醫界觀摩團成員共 13 人：台北醫學大學蔡淳娟主任、長庚大學簡竹君主任、台灣大學醫學院朱宗信醫師、中山醫學大學楊仁宏主任、中國醫藥大學陳祖裕主任、台北醫學大學陳志榮主任、慈濟大學高聖博主任、國防醫學院任益民主任、高雄醫學大學田英俊主任、成功大學醫學院王明誠主任、陽明大學黃金洲主任、輔仁大學蔡育倫主任、高雄醫學大學劉克明教授，推劉克明教授為團長。

為改進醫師考試制度，本部由部長率團前往，隨團人員包括林主任秘書光基、專技考試司黃副司長慶章。又由於我國定於 2011 年起，推動司法官及律師考試改進方案，新制考試第一試均為測驗式試題，及格者得應第二試，均為申論式試題；司法官另有第三試，為口試。為落實司法官及律師考試之持續改革，本部考察團乃決定於觀摩醫師考試 OSCE 結束後，順道參訪韓國司法考試主管機關及相關教考訓用機關、機構及學校；經請駐韓國台北代表部協助，本部考察團除於 2009 年 11 月 9 日下午、10 日上午參訪韓國保健醫療人國家試驗院之醫師考試 OSCE，並於 10 日下午、11 日依序拜會大韓辯護士協會、法務部、司法研修院及首爾大學法學院法學研究所，考察韓國司法考試制度。參訪及考察行程詳如表 1。

表 1 參訪及考察行程

日期	時間	主要行程
11月9日 (一)	15:10~ 15:20	會晤韓國保健醫療人國家試驗院金鍵相院長、Park, Byung Ha 事務總長、首爾大學 Yoon-seong Lee 教授等 地點：Conference room (5 th floor) & OSCE center, NHPLEB(韓國保健醫療人國家試驗院)
	15:20~ 15:30	Introduction of NHPLEB by video 韓國保健醫療人國家試驗院金鍵相院長、Park, Byung Ha 事務總長、試驗管理局朴斗奎局長、Kim, Hyun Chan 課長、題庫管理局 Kyoungsin Lee 局長、首爾大學 Yoon-seong Lee 教授等全程陪同
	15:30~ 16:00	漢陽大學校 Hoonki Park 副教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iefing on Clinical Skill Assessment in Korea Medical Licensure Examination • Watching video for applicants
	16:00~ 17:50	Q&A
11月10日 (二)	09:50~ 1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bservation on OSCE on site - 2 teams × 4 persons per centers
	11:00~ 11:50	Q&A
	15:00	本部拜會大韓辯護士協會 會晤大韓辯護士協會金平祐協會長、鄭相龍事務總長、Julia Jiyeon Yu 事務次長、林治龍辯護士兼企劃理事等
11月11日 (三)	10:00	本部拜會韓國法務部 會晤 Sung, Yung-Hoon 法務次長暨檢事長、法曹人力課崔世勳課長暨部長檢事、Ki-Hong Min 檢事等
	14:00	本部拜會韓國司法研修院 會晤朴國洙院長、Park, Cheng-Son 副院長、Lee, Ting-oh 首席教授、Chung, Sung-jae 教授、Sang Yong Oh 教授暨判事等
	16:00	本部拜會首爾大學法科大學暨法學大學院 會晤金建植學長暨院長、丁相朝教務副院長、宋沃烈學務副院長

二、考察項目

本次參訪與考察，觀摩韓國醫師 OSCE 部分，係由我國醫界觀摩團與韓國保健醫療人國家試驗院安排。考察韓國司法考試制度部分，係由本部商請韓國台北代表部協助接洽，並擬附考察旨趣及議題，由韓國台北代表部畢秘書秀嫵翻譯為韓文。

對於韓國司法考試制度，考察議題包括：

(1)法官 Judges、檢察官 Prosecutors、律師 Attorneys 資格取得流程為何？各流程主管機關為何？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 취득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각 과정의 주관기관이 있습니까?

(2)司法考試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有無考試及格名額 national quota 限制？如有名額限制，如何訂出，理由為何？

사법시험은 합격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만약 정원이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정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採行美式法科大學院 American style law school 之考量基礎？2009 年 3 月首度招生的法科大學院，目前課程設計、教學情形如何？未來法科大學院是否會取代目前司法官訓練所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之功能？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채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9 년 3 월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한 로스쿨의 현재 교학 과정 및 수업 현황은 어떠합니까? 이후 로스쿨이 현재의 사법연수원의 기능을 대체할 예정입니까?

(4)新制司法考試之推動經過？新制司法考試之內涵與特色為何？

새로운 사법시험 제도의 추진과정은? 또 그 주요내용과 특징은 무엇입니까?

(5)2007 年韓國與美國簽署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對於韓國法律服務業 legal services 之開放有何規範？有何影響？

2007 년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였습니까? 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6)司法考試一年舉行幾次? 其應考資格、考試科目、天數、時程、考試地點、考試方式(筆試、口試等)、試題題型、計分方式為何? 有無收取報名費? 收費標準為何?

사법시험은 1 년에 몇 번 시행합니까? 응시자의 자격요건, 시험과목, 시험일수, 시험일정, 시험장소, 시험방식, 시험유형, 채점방식은? 응시료 유무는?

(7)司法考試從受理報名到公布及格名單，需時多長? 包括那些作業流程?

사법시험은 시험실시공고가 발표되고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며 그 과정은 어떠합니까?

(8)司法考試之報考人數、錄取人數? 歷年增減情形?

사법시험의 응시자와 합격자는 각각 몇 명입니까? 최근 그 수의 증감추세는?

(9)司法考試及格人員如何成爲法官、檢察官或律師? 是自願選擇或由法院、法務部選擇? 根據的原則為何?

사법시험 합격자는 어떻게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누어집니까?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원 혹은 법무부치가 선발합니까?

(10)每年經司法考試及格之法官、檢察官及律師人數?

매년 사법시험을 통한 판사, 검사, 변호사 수는 어떻게 됩니까?

(11)有無免經司法考試及格，即取得法官、檢察官或律師資格的管道?

사법시험을 보지 않고, 곧바로 판사, 검사, 혹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까?

(12)外國人可否取得韓國法官、檢察官或律師資格? 如何取得? 韓國人持有外國學歷者，可否報考司法考試? 外國學歷如何採認與韓國學歷相當?

외국인이 한국의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까? 한국인 중 외국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외국 학력은 어떻게 국내 학력과 비교합니까?

(13)法官、檢察官及律師有無在職訓練?

판사, 검사, 변호사도 재직교육을 받습니까?

(14)司法考試之各應試科目有否訂定命題範圍、標準、參考書目?如有,是否公布?

사법시험 과목문제는 그 범위나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또 참고서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발표합니까?

(15)司法考試有無組織考試委員會?考試委員之組成、資格?考試委員之酬勞?

사법시험을 담당하는 고시위원회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구성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또 대우는 어떻습니까?

(16)司法考試之試題有無建立題庫 question bank?或是由考試委員在考前臨時命題?有無組織命題工作小組?

사법시험 문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시위원이 시험 전에 문제를 출제합니까? 시험문제 출제팀을 구성합니까?

(17)司法考試是否利用電腦儲存試題及實施測驗?如何維護試題安全?

사법시험은 컴퓨터에 시험문제를 저장합니까? 어떻게 시험문제의 보안을 유지합니까?

(18)司法考試有無公布考畢試題及答案?考生能否提出試題疑義?

사법시험은 시험이 끝난 후 문제와 답안을 발표합니까? 시험응시자가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19)有無身心障礙人員參加司法考試,有無優待措施?身心障礙人員錄取比率約有多少?

신체장애인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때 혜택이 있습니까? 신체장애자의 합격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20)未來發展方向及待解決問題。

미래발전 방향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21)請提供相關法令及統計資料。

관련 법규와 통계자료를 요청합니다.

貳、韓國醫師考試 OSCE

一、韓國醫師考試制度

韓國醫師考試之主辦機關為韓國保健醫療人國家試驗院(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簡稱「國試院」(국시원)。國試院負責韓國各類醫事人員考試, 包括:

1. 醫師(의사) / 牙醫師(치과의사) / 韓醫(한의사) / 護理師(간호사) / 助產師(조산사)
2. 藥師(약사) / 韓藥師(한약사) / 韓藥調劑士(한약조제) / 營養師(영양사)
3. 醫療技士(의료기사) (包括: 臨床病理士(임상병리사) / 放射線士(방사선사) / 物理治療師(물리치료사) / 職能治療師(작업치료사) / 牙體技術士(치과기공사) / 牙科衛生士(치과위생사) / 醫務記錄師(의무기록사) / 眼鏡士(안경사))
4. 衛生士(위생사) / 1級/2級應急救助員(1급/2급 응급구조사)
5. 義肢(의지) / 補助機器士(보조기기사)
6. 醫師預備試驗(의사예비시험) / 牙醫師預備試驗(치과예비시험)

自 2009 年起, 韓國醫師國家考試之考試方法, 包括實技考試(실기시험)與筆記考試(필기시험)二種。其中實技考試包括 2 種考試: 臨床能力考試(clinical performance exam, CPX) 6 題, 每題 100 分, 計 600 分; 客觀結構式臨床考試(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6 題, 每題 50 分, 計 300 分。實技考試總分為 900 分。

筆記試驗共計 3 科, 包括: (1)醫學總論 (1, 2), (2)醫學各論 (1, 2, 3, 4, 5, 6, 7)。 (3)保健醫藥關係法規。筆記試驗均採選擇題, 共 500 題, 除保健醫藥法規 20 題每題 0.5 分外, 其他每題 1 分, 總分為 490 分。其中, 醫學總論 2 及醫

學各論 1 選擇題中並包括所謂的 R 型試題，或稱擴張結合型(확장결합형)之試題，主要是參考美國醫師考試，就臨床狀況判斷、理解與應用等，進行綜合能力檢測之試題形式。

表 2 韓國醫師考試之考試方法

1.實技考試				
出題問題數		配分	總分	試驗方法
12 問題	CPX 6 問題	100 分/1 問題	600 分	應考人根據既定的考試時間及鐘聲，在 12 個試驗室中依序執行各試驗室的主題課題。根據應考人的執行過程及結果，進行評價。
	OSCE 6 問題	50 分/1 問題	300 分	
2. 筆記考試				
考試科目數	問題數	配分	總分	問題形式
3	500	1 分/1 問題。但，保健醫療關係法規 0.5 分/1 問題	490 分	客觀式 5 選項及 R 型

2009 年報名之韓國醫師國家考試，先舉行實技考試，再於 2010 年 1 月舉行筆記考試，實技考試與筆記考試分別計分，二者均合格者，始為醫師考試合格者。實技考試計舉辦 51 天，每天舉辦 3 梯次，上午舉行 1 梯次，下午舉行 2 梯次，每梯次應試者考試時間為 157 分鐘。

筆記考試分 2 天各 4 節考試舉行，第一、二節均考 95 分鐘，第三節考 70 分鐘，第四節至第八節均考 80 分鐘。

有關韓國醫師試驗之應考資格，應考人應具備以下各款應考資格：

1. 具有下列資格者：

- (1) 在醫學專攻之大學畢業，領有醫學士學位者
- (2) 在醫學專攻之專門大專院畢業，取得碩士或博士學位者

表 3 韓國醫師考試之考試時間表

1. 實技考試				
考試科目	考試形式	入場時間		考試時間
病歷聽取，身體診察，與患者的意思溝通，診療態度，基本技術的手記	利用標準化患者與模擬患者，以及模型等的實技考試	1cycle	~08:25	09:00~11:37(157 分)
		2cycle	~12:00	12:35~15:12(157 分)
		3cycle	~15:00	15:35~18:12(157 分)
※但，CPX 問題為 1 問題 10 分(※各考試問題之間隔各為 5 分)，OSCE 問題為 1 問題 5 分。				
2. 筆記考試				
第一日				
節次	考試科目(問題數)	考試形式	入場時間	考試時間
1 節	醫學總論 1(80)	客觀式	~08:30	09:00~10:35(95 分)
2 節	醫學總論 2(35), 醫學各論 1(38)	客觀式(包含 R 型)	~11:00	11:10~12:45(95 分)
點心時間 12:45~13:45(60 分)				
3 節	醫學各論 2(37), 保健醫藥關係法規(20)	客觀式	~13:45	13:55~15:05(70 分)
4 節	醫學各論 3(58)	客觀式	~15:25	15:35~16:55(80 分)
※ 第二節之 R 型問題，醫學總論 2 有 12 問題，醫學各論 1 有 30 問題。 ※ 保健醫藥關係法規：「保健醫療基本法」、「地域保健法」、「國民健康增進法」、「傳染病預防法」、「後天性免疫缺乏症預防法」、「檢疫法」、「醫療法」、「應急醫療有關法律」、「血液管理法」、「麻藥類管理有關法律」、「國民健康保險法」及其各附屬施行令暨施行規則。				
第二日				
節次	考試科目(問題數)	考試型式	入場時間	考試時間
5 節	醫學各論 4(58)	客觀式	~08:30	09:00~10:20(80 分)
6 節	醫學各論 5(58)	客觀式	~10:40	10:50~12:10(80 分)
點心時間 12:10~13:10(60 分)				
7 節	醫學各論 6(58)	客觀式	~13:10	13:20~14:40(80 分)
8 節	醫學各論 7(58)	客觀式	~15:00	15:10~16:30(80 分)

(3) 經保健福祉主管部長官認許為相當於以上第一、二款之外國學校畢業，領有外國醫師執照，並經預備試驗(의사 예비시험)合格者。

(4) 1994 年 7 月 8 日當時保健社會部長官承認之外國醫科大學肄業，經當年大學畢業醫師預備試驗合格者。

2. 以醫學為專攻之大學或專門大學院，預定 6 個月內取得該當學位者，視同具備前述第 1、2 款資格。

具有下列各款情事之一者，不得應考：

(1) 精神保健法第 3 條第 1 款規定之精神病患者。但經相關機關認定合格者，不在此限。

(2) 嗎啡、大麻或其他毒品中毒者。

(3) 禁治產或限定治產者。

(4) 犯有醫療法或刑法有關虛偽詐欺診療費、違反各種醫療關連法令，刑之執行未終止者。

應試申請書提出及受理，分為 2 種途徑，一為網路報名，另一為現場報名，如果是外國大學畢業初次應考者，應以現場報名方式確認應考資格，不可網路報名。持國內學歷者於現場報名時，應提出表件：報名書表一份、相片二張、應屆畢業者應繳預定畢業證明文件一枚、報名手續費。持外國學歷者於現場報名時，應提出表件：報名書表 1 份、相片二張、執業證影本一份、畢業證書一份、誠實證明一份、出入境證明一份、報名手續費，其中執照影本、畢業證書、誠實證書應在當地韓國外交使領館長認證。

合格者決定及發表，韓國醫師考試之合格者決定，係以筆記考試及實技考試均合格者為最終合格者。分述如下：

1. 筆記考試以全部科目總分 60% 以上，每一科目得分 40% 以上者，為合格者。

2. 實技考試由醫科大學教授所組成之合格者審議委員會決定合格分數後，得分超過標準者為合格。合格分數之計算方法有關詳細事項，由保健福祉主管部長官決定後公布(2009 年合格標準決定方式請見下節說明)。

自始不具應考資格者，於合格者發表之後，仍予取消合格資格。

表 4 韓國 2009 年醫師考試日程

區分		日程		備考
報名書 表受理	期間	實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net 受理 • 現場報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應試手續費 <ul style="list-style-type: none"> —實技：510,000 韓圓 —筆記：227,000 韓圓 • 受理時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場報名: 09:30~16:00 * 例假日及午休時間 (12:00~13:00)除外 —網路報名: 00:00~24:00 * 但，網路報名受理最後一日之報名受理時間至 21:00
		筆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net 受理：2009. 9. 24~ 9.29 • 現場報名：2009. 9. 28 ~ 9. 30 	
	場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網路受理 [國試院網頁] • 現場受理：國試院 6 樓會議室 		
入場證處理期間		實技：2009. 8. 31~考試日(個人別) 筆記：2009. 10. 23 ~ 考試日		
考試進 行	日期	實技：2009. 9. 23 ~ 12. 05 筆記：2010. 01. 07 ~ 01.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應考人準備物品 <ul style="list-style-type: none"> —實技：攜帶入場證、身分證、看診袍、應診器、鋼筆、筆記道具 (黑色原子筆) —筆記：攜帶入場證、身分證、筆記道具。
	場所	實技：國試院(廳舍內之醫師實技考試中心) 筆記：2009. 11. 17 公告		
最終合 格者發 表	日期	2010. 0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如登錄手機號碼者，以 SMS(手機短訊)通報。
	場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試院網頁 • 自動回答電話：060-700-2353 		

合格者發表後，合格者名簿可以由以下方式確認：(1)國試院網站 [考試資訊]-[合格者查詢]網頁。2. ARS 自動答覆系統，電話號碼：060-700-2353，ARS 利用期間：合格者發表日 0 時開始，為期 7 日；必須使用電子式電話機(公用電話除外)。3. 以登錄攜帶型電話號碼者為限，得以 SMS 通知合格與否。

醫師考試合格者，於辦理執照交付之申請，應提出執照證交付申請書一份、

畢業證書正本一份、醫師診斷證明一份等證明文件。申請書受理後約 2 週以內，即發給執照，依執照交付申請書所載住所地個別寄發(掛號)。

二、OSCE

客觀結構式臨床考試(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主要是經由模擬臨床實境測試醫學生之臨床能力，將醫學生照顧病人時所應用之溝通技巧、態度、行為及價值觀列入評核重點。

韓國專家團在韓國保健醫療人國家試驗院金鍵相院長(Prof. Kim, Kun Sang)領軍下，兩度造訪加拿大 Medical Council of Canada (MCC)的 OSCE 考試中心，2006 年起先對外國醫學系畢業生參加韓國醫師國家執照考試者採用 OSCE，並以這 3 年經驗作為 2009 年施行全國醫學院畢業生參加 OSCE 之基礎。

韓國在其醫師考試中所採取之實技考試，英文名稱並非 OSCE，而係「臨床技能評量」(Clinical Skills Assessment, CSA)，目的是在平衡醫師執照考試之技能領域、提昇醫師品質、提供大學臨床實務教育轉型之動力、學習全球化之策略。在韓國的醫師考試概念架構中，CSA 包括 2 部分：一為 OSCE，另一為臨床能力考試(clinical performance exam, CPX)，其實均屬 OSCE 之概念範疇。表 5 是韓國對於 OSCE 與 CPX 之區別。

為了推行實技考試，2008 年 5 月 19 日公布實技考試試題之各題標題，包括核心程序技能(OSCE)40 種(53 題)，臨床問題(CPX)48 種(63 題)。2008 年 10 月 14 日公布實技考試之模型與設施，並完成醫病互動評分指南(PPI rating guide)，目前題庫中計有 120 題，預期在 3 年內可以增加至 300 題。

表 5 OSCE vs. CPX

	客觀結構式臨床考試(OSCE)	臨床能力考試(CPX)
考試單元(Unit of exam)	聚焦式(focused)、片斷式(segment)	完整性(Comprehensive)
時間長短(Duration)	短，5-10 分鐘	長，≥10 分鐘
評分者(Rater)	教授	標準病人(SP)
知能領域	身體的或程序的技能 (Physical or procedural skills)	資料蒐集(Data gathering)，醫病互動(Physician patient interaction, PPI)

實技考試試題之製作，是先由外部教授草擬，經過 2 次審核及修正後，再進行最後的微調，透過試演作最佳矯正。至於 CPX，其標準病人(Standardized patients)是由國試院獨立甄募，經訓練合格後，均需簽署合約，約定標準病人在離職後一年內不得到南韓任何醫學院校擔任任何職務。其人數，每一個案重複配置 2-4 名標準病人，俾於臨時狀況時隨時有預備人力可以補充，共約有 110 人。每次考試每位標準病人約需出席 4-5 小時(含考試前準備的時間)。

標準病人之訓練，共有 3 位主要訓練指導人員，1 位為專業護理人員，2 位為資深演員。基本訓練課程約 4-6 次，每次 3-4 小時，課程內容包括表演及評分訓練；其中醫病互動評分訓練因各站均適用相同模式，只進行 1 次。南韓目前儲備的標準病人主要透過網路招募而來，招募對象為戲劇系學生、演員和家庭主婦為主，尚無具醫護背景的標準病人。標準病人在一般實際演練 2-3 回後，大多可達考試機關要求的標準。為辦理 2009 年醫師實技考試，韓國約於七月開始訓練標準病人，九月開始參加考試工作。支付標準病人的費用分訓練期間和考試期間：在訓練期間，每位標準病人每小時可支領約 10 美元(約 11,220 韓圓)。參與考試工作的每位標準病人每小時可支領約 20 美元(約 22,440 韓圓)。

至於醫師評分員之甄募對象，是各醫事校院之教授，且須與應試者無關係者。評分員之甄募名額，原則上每一醫事校院中，每 4-5 名應試者即聘 1 位教授。例如，某學校有 100 位應試者，即自該校聘 20-25 位教授。為辦理 2009 年醫師實技考試，韓國計甄募了 606 位教授或醫師(Professors or doctors)。

韓國爲了推行醫師考試的實技考試，多次舉辦試辦考試(Pilot Test)，2009年4月27日至30日舉行第三次試辦考試時，共有288名高年級醫學生參加，相當於每位學生代表實際考試時之10-15位應試者；教授評分員則有56人，來自41所醫學校院，每校院各1-2人。

由標準病人擔任評分員，常會引發專業性不足的疑慮，對此，韓國曾透過試辦考試方式進行評估，發現標準病人評分結果，與教授評分十分接近；無論是透過監視器評分的標準病人，還是擔任表演者的標準病人，評分結果幾乎完全相同(參見表6)。而且，標準病人比專業醫師評分結果更能獲得應試者之同意(參見表7)。

表6 第二次試辦考試結果

	總分	教授評分	標準病人評分	應試者猜測
CPX	100	46.5	45.7	57.7
病史	49.8(100)	22.6(45.4)	21.8(43.8)	
身體	29.3(100)	11.4(38.9)	11.2(38.2)	
病人教育	7.5(100)	3.4(45.3)	3.3(44.0)	
醫病互動	18.6(100)	11.3(60.8)	11.5(61.8)*	
			11.5(61.8)**	
OSCE	50(100)	28.5(57)		53.1

註：

1. ()轉換為總分100。
2. *為標準病人透過監視器觀察之評分。**為擔任演員之標準病人所作之評分。

表7 試辦考試中對於腹痛個案之評分正確性

單位：%

評分者	知能領域	項目同意度	應試者同意度			
			90% ↑	85% ↑	80% ↑	70% ↑
醫師	病史	95.1	63.4	94.8	94.8	97.4
	身體	87.2	60.8	60.8	79.1	92.8
	醫病互動	93.6	72.5	72.5	91.5	91.5
	全部	91.4	29.4	43.8	68.6	82.4
標準病人甲	病史	96.9	72.5	90.8	90.8	99.3
	身體	92.3	79.7	79.7	93.5	98.0
	醫病互動	96.7	85.0	85.0	95.4	95.4
	全部	94.4	52.3	64.1	81.7	92.8
標準病人乙	醫病互動	96.8	86.9	86.9	96.1	96.1

韓國實技考試計畫於 2009 年 7 月正式公告，醫學院畢業生報名時間為 2009 年 8 月 4 日至 8 日，考試時間自 2009 年 9 月 23 日至 12 月 1 日(原定 12 月 5 日止)，為期 51 天。報考者全國 41 所大學醫學院校共 3,546 位。

實際運作時，設有標準病人臨床看診之 CPX 共 6 站，程序技能測驗之 OSCE 共 6 站，合計 12 站。各站之時間分配：每站有 1 分鐘之說明，CPX 每站看診 10 分鐘，加上站與站之間停留 5 分鐘；而 OSCE 每站 5 分鐘，合計每位應考人考試時間為 157 分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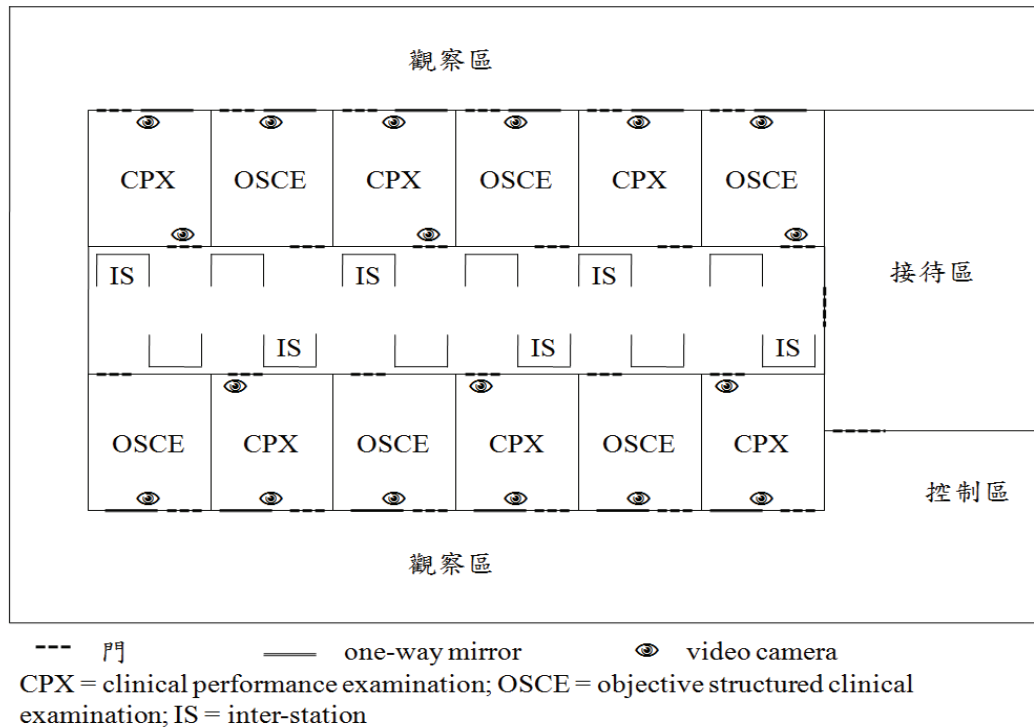


圖 1 位於國試院地下一樓之第二考場平面圖

資料來源：醫界觀摩團參訪韓國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心得報告

客觀結構式臨床考試(OSCE)與臨床能力考試(CPX)之評分員不同，OSCE 每站於考試房間中由一位教授擔任評分員，CPX 則由標準病人(SP)在房間外透過單向鏡(one-way mirror)擔任評分員，房間中有另一位也同樣擔任評分員之標準病人

(SP)進行醫病互動(PPI)。同時，整個考試流程均予錄影，以監測考試之品質，並作為未來合格標準設定時之參考。

客觀結構式臨床考試(OSCE)利用模型與標準病人為測驗對象，測驗項目為一般臨床技能及身體診察，由醫師在測驗站外聽、觀察並評分，測驗時間為 5 分鐘。OSCE 試驗室內有考題所需之考具、置放考具的桌面，由教授擔任評分員之桌椅和評分用電腦等。

臨床能力考試(clinical performance exam, CPX)以標準病人為對象，測驗項目為面談、病史詢問、身體診察及回答測驗問題，前 3 項測驗時間 10 分鐘，最後 1 項是在離開該測驗站後回答問題 5 分鐘，在測驗站內表現由標準病人評量。在 CPX 試驗室內置有問診桌及檢查床各一張，以及供應試者及標準病人坐的椅子兩張。在考室的角落處有一台電腦和桌椅，供試驗室內的評分員(由 SP 擔任)在應試者完成任務後評分。CPX 試驗室遠離中央走道的牆壁外側為觀察區，在該面牆壁上除了有一片單面鏡可供人員在觀察區內觀察應試者及 SP 的表現，另有一道門與觀察區相通，以利試驗室外的評分員(也是 SP)能與室內的評分員相互討論。

實技考試對於程序技能之評分檢查表(Checklists)，著重應試者之無菌處理技術與熟練程度，對於程序作業的結果紀錄是否正確，亦列入評分參考。對於 SP 站之評分檢查表，則強調病史、身體檢查與臨床禮貌、資訊分享、醫病互動。其中醫病互動所重視的，包括：有效詢問技巧、主動聆聽、瞭解病人觀點、有效的資訊分享、關係建立及專業化。臨床禮貌著重於個人衛生、接納性、準備妥當的言詞等。

站與站之間停留時(Inter-station)，評估應試者有無能力根據先後順序決定可能之處方，並提出立即處置方案，包括診療上對病人的激勵、診治計畫、病人教育等。

每一應試者考完全部實技考試需時 157 分鐘，每天可安排 3 梯次。目前韓國僅設單一實技考試之考場，即國試院，並由該院負責辦理考試；而國試院中又分

設 2 組實技考試試場。每個場次應試者 12 人，一天測驗應試者之人數可達 72 人。

考試日期之排定，採 2 階段配置、半隨機指定(semi-random assignment)，以期每一醫學校院均可集中於 10-20 天內應試。應試者必須透過網路線上報名，遇有必須調整日期時，也僅調整在同一醫事校院之考試期日內。

每一天考試是由不同的試題組合進行。以骨幹體系為基礎，進行平衡取樣，並兼顧計分的等化。在程序技能之 OSCE 部分，主要是將擬測技能進行代表性取樣，測試之重點為程序，包括基本的身體檢查、緊急程序、基本外科技能等。

實技考試之計分方式為總分 900 分，包括程序之 OSCE 各站： $50 \times 6 \text{ 站} = 300 \text{ 分}$ 。標準病人之 CPX 各站： $100 \times 6 \text{ 站} = 600 \text{ 分}$ ，其中資料蒐集占 55-75%，醫病互動占 20-40%，跨站停留作業占 5%。評分檢查表的每一項目均可能有不同的權重。

實技考試之合格標準決定，與筆記考試之合格決定脫鉤，採用修正式的 Angoff 法，並將考試日期、評分員、考題組合等納入計算公式中。計分時，先將 CPX 之 6 站(各 100 分)及 OSCE 之 6 站(各 50 分)之實得分數換算成標準分數，以該組應試者各站-1 個標準差之分數合計後之分數(如 407 分，12 站合計總分 900 分)，即為合格標準之參考數值。這些數值提報至由 12-15 位代表成員組成之合格標準設定委員會(Committee of standard setting)討論，這些成員對每站至少參與評分 3 次以上，透過錄影的應試者表現、實際成績分布，以及跨站間之評分，重新檢視資料後進行成績等化，會中經過三輪的討論，定出每一站的及格分數。應試者除總分須達及格標準之外，同時必須至少通過 12 站中之 8 站，才真正通過實技考試。在參訪期間，韓國專家們對不及格比率的討論仍在進行中，一般認同宜在 5-10%之間。

韓國醫師考試合格標準設定採取之 modified Angoff 方法是在考後才進行，與一般做法不同；第二階段之總站數及格標準之決定，則根據委員對不通過率的想法作調整，企圖維持一個合理的淘汰率，以免激發社會大眾的質疑，其用心主要在於順利引進 OSCE 考試技術。

韓國醫師考試自 2009 年起採行實技考試，最大的效果在於「考試引導教

學」，各醫學校院紛紛設置技能實驗室(Skills lab)，愈來愈多校院採行以臨床實際病人為基礎或以標準病人為基礎的教育及考試，包括 OSCE、CPX。更重要的是課程的改變，各醫學校院更加重視面談、身體檢查技能、緊急臨床處置等訓練。

三、考試結果

Yoon-seong Lee 教授於 2010 年 1 月 19 日通知，自 2009 年起採行實技考試的 2010 年韓國醫師考試，已經放榜，實技考試計有 3,456 人應試，合格者 3,289 人，合格率为 95.2%；1 月 7 日至 8 日舉行之筆記考試，計有 3,452 應試，合格者 3,349 人，合格率为 97.0%。總計應試者 3,469 人(部分應試者可能僅參加二項考試中之一項考試)，合格者 3,224 人，合格率为 92.9%。

表 8 韓國醫師國家考試之考試合格統計

職種	回数	試験施行日	合格者発表日	報考人員	應試人員	合格人員	合格率(%)
醫師	70	2006.01.10-11	2006.01.19	3,816	3,743	3,489	93.2
	71	2007.01.09-10	2007.01.18	3,765	3,735	3,305	88.5
	72	2008.01.09-10	2008.01.18	4,059	4,028	3,887	96.5
	73	2009.01.08-09	2009.01.20	3,770	3,750	3,510	93.6
	74	2010.01.07-08	2010.01.18	3,481	3,469	3,224	92.9

資料來源：韓國國試院網頁 <http://www.kuksiwon.or.kr/>，2010/2/3 下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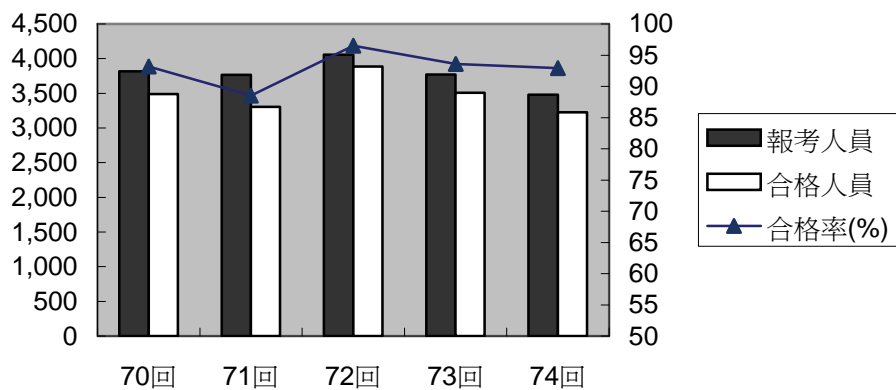


圖 2 韓國醫師國家考試之考試合格統計

參、韓國司法考試制度

韓國於 2007 年透過立法導入了美國式的 Law School 制度，2009 年 3 月開設了 25 所法學專門大學院，配合 3 年碩士課程不久將出現畢業生，同年韓國國會通過辯護士試驗法，未來將針對法學專門大學院畢業生辦理辯護士試驗，逐步取代現行司法試驗，以及取代目前試驗合格人員須參加司法研修院 2 年課程之制度。司法試驗將繼續舉辦至 2017 年，在過渡期間，逐年減少預定錄取名額，最後全面以 Law School 作為法曹人之養成制度。

一、舊司法試驗制度

韓國現行《檢察廳法》與《法院組織法》中，規定檢事、判事「於經司法試驗合格，司法研修院所定課程結業者之中任命」，因此，未通過司法試驗者，不得逕行取得判事、檢事、辯護士之資格。另外，韓國現行《辯護士法》中，亦規定：「經司法試驗合格，司法研修院所定課程結業者」取得辯護士資格，換言之，未經司法試驗合格，也不可能取得辯護士資格。

韓國判事、檢事、辯護士資格取得流程，過去長久以來，主要區分為法學教育、選拔試驗與研修制度等三個階段。這個制度下的法學教育主要係由法科大學負責；法曹人選拔藉由司法試驗實施，司法試驗原係由行政自治部(행정자치부)主管，自 2002 年起，改由行政府(행정부)所屬之法務部(법무부)主管；對於獲得選拔者，由司法研修院負責其研修，司法研修院係由最高法院主管。

韓國在美式 Law School 導入以前，依據舊制度，司法試驗合格者(사법시험 합격자)應在最高法院(대법원，直譯為大法院)管轄下之法曹養成機關司法研修院(사법연수원)，接受為期 2 年的法律實務修習以後，即取得辯護士資格，並可據以取得判事、檢事之任用資格。原則上，修畢司法研修院之後，依本人志願成為判事(판사)、檢事(검사)、辯護士(변호사)，但欲成為判事、檢事，通常係於司法研修院修畢者之中另外進行選拔，以經競爭合格者為對象，始任用為判事、檢事。其中檢事選拔係由法務省(법무부)負責，判事選拔係由最高法院轄下之法院行

政處(법원 행정처)負責。依據《辯護士法》(변호사법)第 4 條，司法試驗合格後，司法研修院之課程終了者，及具有判事或檢事資格者，定為取得辯護士資格之對象；依據《檢察廳法》(검찰청법)第 29 條，司法試驗合格後，司法研修院課程終了者，及具有辯護士資格者，定為取得檢事資格之對象；依據《法院組織法》(법원조직법)第 42 條第 2 項，司法試驗合格後，司法研修院所定課程終了者，及具有辯護士資格者，定為取得判事資格之對象。

依據《司法試驗法》，司法試驗每年實施 1 回以上之試驗(第 3 條第 1 項)。但目前通常一年以施行 1 回為原則。此外，現行韓國司法試驗設採行定員制(정원제)，有合格定員(預定錄取名額)，即於該次試驗實施以前，透過事前公告，公布「選拔預定人員」(선발예정인원)，並據此決定合格者。依照《司法試驗法》第 4 條之規定：「選拔預定人員於每次試驗施行時，由法務部長官聽取第 14 條所規定之司法試驗管理委員會之審議意見，以及最高法院與辯護士法第 78 條所規定之大韓辯護士協會之意見後，決定之。」韓國法務部表示，其制度背景是司法試驗過去長期採行絕對分數制(절대점수제)，基於每年法曹人供需變動，擔心法曹人有供需不足或超過之事態，同時也須兼顧司法研修院之收容能力，爰決定採行定員制。

根據韓國法務部的說明，司法試驗管理委員會基於司法試驗將於 2017 年廢止，目前已決定就司法試驗之最終選拔人員(최종선발인원)分階段縮減，2009 年為 1,000 名，2010 年為 800 名，2011 年為 700 名，2012 年為 500 名，2013 年為 300 名。

應試者之資格要件為，於《高等教育法》第 2 條各款所規定之學校、《平生教育法》第 21 條或第 22 條所規定之社內大學或遠隔大學形態之平生教育施設(以下稱「學校」)中，履修一定學分以上之法學科目者；依《學分認定等有關法律》之規定，其履修一定學分以上法律科目之情事，獲得學分認定者(第 5 條第 1 項)。另由於第一次試驗語學科目得以其他試驗機關之試驗成績取代，實質上「公認英語試驗一定分數以上」亦為第一試驗之應考資格條件。

外國人亦得於司法試驗中應試，並無限制。如要能夠在司法試驗中應試，應

履修法學科目 35 學分以上及公認英語試驗一定分數以上。但是，前述法學科目僅依現行《高等教育法》所定國內教育機關中開設之科目予以認定。因此，無論是國內學歷者、國外學歷者，只要履修法學科目 35 學分，即可於司法試驗中應試，對國外學歷者並無差別待遇。外國人在韓國司法試驗中應試合格後，通過司法研修院所定 2 年課程，即可取得辯護士資格。但不得任用為判事、檢事(《國家公務員法》第 26 條之 3、《公務員任用令》第 4 條)。依據大韓辯護士協會的說明，依《司法研修生之登錄及任命上申有關內規》(‘사법연수생의등록및임명상신에관한내규’)條項，司法研修生任命之除外可能對象中，其實包含外國人。不過，依但書條項，於最高法院院長認可時，亦容許得以任命外國人為司法研修生。

司法試驗之流程，第一次試驗以採選擇型試題為原則，得混用記入型試題；第二次試驗採論述型試題，僅第一次試驗合格者可以應試；第三次試驗實施面談(直譯：面接)試驗，僅第二次試驗合格者可以應試(司法試驗法第 8 條)。其應試科目，於第一次試驗時，為憲法、民法、刑法及大統領令所定之科目；第二次試驗之科目，為憲法、民法、刑法、商法、行政法、民事訴訟法及刑事訴訟法。對於其中部分科目，得以大統領令定其出題範圍後，據以實施試驗(第 9 條第 1 項)。有關司法試驗科目是否訂定命題範圍及標準一節，目前僅限第一次試驗之選擇科目，有定其出題範圍後再實施試驗，並藉試驗實施之公告予以周知。其他的第一次試驗必須科目及第二次試驗之科目，均未決定出題範圍或出題水準。對於應試科目，並未明定參考書籍，一般係由應試者根據各該科目之著名教科書、考畢試題等，就各該科目之讀書範圍及重點，彼此交換心得而已。

為辦理司法試驗問題之出題方向及基準、計分基準決定、合格者決定等，另組織「司法試驗管理委員會」。《司法試驗法》第 14 條起至第 16 條對於司法試驗管理委員會分別有所規定。委員會由包含委員長及副委員長 2 人，共 13 人之委員組成。現行司法管理委員會之組成：包括法務部長官為委員長，法務部次官、判事 2 人、檢事 1 人、辯護士 2 人、法學教授 3 人、《非營利民間團體支援法》第 2 條所規定之非營利民間團體推薦者 1 人、非屬辯護士或法學教授但具司法試驗相關經驗與德望者 2 人(第 14 條第 3 項)，總共 13 人。有關具體的待遇事項，

係由法務部主管。

根據韓國法務部之說明，於司法試驗時，事前會由各該科目專攻教授等，構築「問題銀行」(문제은행)，俾據以辦理問題之出題。在其後實際試驗問題出題之階段中，選定出題委員(출제위원)後，組成出題小組(출제팀)；該出題小組應循合宿出題(합숙출제)方式，從問題銀行所收錄之問題中，選定一部分，加以複合·變形後，出題成爲實際之試驗問題。

司法試驗之問題，係於特定場所，由出題委員與行政支援小組，經過數日間之合宿出題過程而完成出題。爲嚴密維護合宿出題之保防安全，內外部間之物件搬出口及人員往來，均予統制；內外部間之通信，亦從源頭予以斷絕。藉由這些安全措施之實施，澈底維持試題問題之保安。此外，據韓國法務部提出之資料顯示，司法試驗並未利用電腦儲存試題及實施測驗。

有關考畢試題之公布，司法試驗終了後，第一次、第二次試驗均於法務部之司法試驗 Homepage(www.moj.go.kr/barexam)上，公開試驗問題。至於對於答案之疑義處理申請，可分二方面說明：一方面，如係第一次試驗，試驗終了後，其選擇題之假定答案(가답안)於 Homepage 揭示之特定期間內，亦受理試驗應試者對於假定答案之異議申請。受理異議申請結束之後，由各出題委員組成之答案確定會議(답안확정회의)中，就應試者們之異議申請當否進行檢討之後，將最終正答予以確定公布。另一方面，如係第二次試驗，以合格者發表後之不合格者爲限，提供受験生之本人答案閱覽機會。

就司法試驗之作業時程而言，以 2009 年爲例，預定選拔出約 1,000 人的司法試驗合格者，2 月 2 日試驗實施公告後，於 11 月 27 日最終合格者發表。不過，根據韓國法務部之說明，通常司法試驗於該年度 1 月初辦理試驗實施公告，而於 12 月中公布合格者；司法試驗全年間的施行日程包括：

- 1 月初旬：公告該年度司法試驗實施計畫
- 1 月中旬：受理司法試驗應試申請書
- 2 月下旬：實施司法試驗第一次試驗
- 4 月中旬：公布司法試驗第一次試驗合格者

- 6月下旬：實施司法試驗第二次試驗
- 10月中旬：公布司法試驗第二次試驗合格者
- 11月中旬：實施司法試驗第三次試驗
- 12月初旬：公布司法試驗最終合格者

試驗日數、日程、場所、方式、類型等，依司法試驗法施行令所定方式公告之(第3條第2項)，而依《司法試驗法施行令》第2條，公告係於每年1月31日止，於官報及 Internet Homepage 或日刊紙等公告之。應試手續費應按法務部令所定金額繳納；繳納應試手續費時，得以相當金額之收入印紙，附貼應試申請書之方式處理。依《司法試驗法施行令》第8條，至2009年止，本項費用為3萬韓圓；2010年起調高至5萬韓圓。有關韓國司法試驗之應考資格、考試科目、天數、時程、考試地點、考試方式(筆試、口試等)、試題題型、計分方式，以及報名費、收費標準，請參見表9韓國法務部提供之資料。

表9 司法試驗之應試資格、試驗科目、試驗日數日程、場所、方式等

區分	第一次試驗		第二次試驗	第三次試驗
應試資格	取得法學科目 35 學分以上及公認英語試驗一定分數以上者		第一次試驗合格者	第二次試驗合格者
試驗科目	必須科目	憲法、民法、刑法	憲法、行政法、民法、商法、民事訴訟法、刑法、刑事訴訟法	集團面談 一般面談 深層面談
	選擇科目	刑事政策、法哲學、國際法、勞動法、國際貿易法、租稅法、知的財產權法、經濟法中 1 科目		
試驗日數	1 日		4 日	1 日
試驗日程	2 月下旬左右		6 月下旬左右	11 月中旬左右
試驗場所	首爾、釜山、大邱、仁川、光州、大田等全國 6 個都市中・高等學校		首爾地域內之大學校	司法研修院
試驗方式	選擇型試驗		論述型試驗	口述試驗
試驗類型	法律知識測定型、事例型等		事例型、論文型	試驗委員裁量
計分方式	光學標記閱讀機(OMR)卡片判讀方式		試驗委員徒手作業計分	上中下三階段計分
應試費	3 萬圓(現在擬調高為 5 萬圓)			

對於身心障礙人員參加司法試驗之優待措施，以及身心障礙人員錄取比率問題，根據大韓辯護士協會之說明：聽覺障礙相當 2 或 3 級時，語學(英語)試驗得以聽力部分除外，另以一定分數為基準；其他身體障礙人障礙之種類等，以向法務部通報，經認定為應試時有明顯困難之應試者為限，得提供試驗問題之點字印刷等必要處置。韓國法務部也表示：全盲人、弱視者等，於應試時有明顯困難之障礙者(直譯：障礙人)，如於提出應試申請書時進行障礙者登錄者，可獲得提供試驗應試上之便宜措施。韓國法務部將障礙者參加司法試驗時之便宜措施提供內容整理下表。此外，自從司法試驗最初施行迄今，僅 2008 年第 50 回之司法試驗中，有全盲人應試者 1 名最終合格。

表 10 司法試驗對於障礙者之便宜措施提供內容

障礙類型		便宜措施提供內容
視覺障礙	全盲人 (校正視力 0.04 以下， 視野 10 度以內)	- 提供點字問題紙、電腦 - 延長試驗時間 (第一次試驗 2 倍、第二次試驗 1.5 倍)
	弱視者 (校正視力超過 0.04 未 滿 0.3)	- 擴大問題紙 - 延長試驗時間 (第一次試驗 1.5 倍、第二次試驗 1.33 倍)
肢體障礙	手之使用有嚴重困難者	- 每節(教示)別，延長試驗時間 20 分鐘

司法試驗合格率甚低，2007 年應試 18,114 人，1,011 人最終合格；2008 年應試 17,829 人，1,005 人最終合格，這二年合格率均為 5.6%。不過，合格者在最近 10 年有增加之趨勢，請參見法務部 2008 年之最近 10 年間合格者統計。

表 11 最近 10 年間司法試驗應試者及合格者

(以 2008 年 11 月 25 日為基準)

年度	第一次試驗			第二次試驗			第三次試驗	
	應試者	合格者	合格分	應試者	合格者	合格分	應試者	合格者
2008	17,829	2,511	252.02 (72.0057)	4,877	1,005	353.74 (47.1653)	1,015	1,005
2007	18,114	2,808	73.14	5,024	1,008	355.00 (47.3333)	1,022	1,011
2006	17,290	2,665	79.57	5,007	1,002	350.64 (50.0914)	1,002	994
2005	17,642	2,884	86.00	5,038	1,001	341.22 (48.7457)	1,001	1,001
2004	15,446	2,692	83.00	5,028	1,009	47.36	1,009	1,009
2003	24,491	2,598	82.00	5,012	905	42.64	906	906
2002	24,707	2,640	83.50	4,764	999	49.79	999	998
2001	22,365	2,406	87.96	4,578	991	50.57	991	991
2000	16,218	1,985	84.44	3,762	801	53.28	801	801
1999	17,301	2,127	81.75	3,554	709	48.50	709	709

韓國法務部提供了相關法令及統計資料，包括：

1. 關連法令(如附錄 3、附錄 4)

- 司法試驗關連：司法試驗法、同法施行令及施行規則
- Law School 及辯護士試驗關連：法學專門大學院設置·運營有關法律及同法施行令、辯護士法、同法施行令及施行規則(草案)

2. 司法試驗關連統計資料(如以下各統計表)

- 第 50 回司法試驗第一次試驗合格者統計
- 第 50 回司法試驗第二次試驗合格者統計
- 第 50 回司法試驗最終合格者統計

表 12 2008 年度第 50 回司法試験第一次試験合格者現況

■ 成績分布

得分	全體		男子			女子		
	人員	比率(%)	人員	比率(%)	占有率(%)	人員	比率(%)	占有率(%)
總計	17,829	100	12,004	67.33	100	5,825	32.67	100
350 以上	0	0.00	0	0.00	0.00	0	0.00	0.00
300 以上 350 未滿	33	0.19	22	0.12	0.18	11	0.06	0.19
340 分帶	0	0.00	0	0.00	0.00	0	0.00	0.00
330 分帶	0	0.00	0	0.00	0.00	0	0.00	0.00
320 分帶	0	0.00	0	0.00	0.00	0	0.00	0.00
310 分帶	7	0.04	4	0.02	0.03	3	0.02	0.05
300 分帶	26	0.15	18	0.1	0.15	8	0.04	0.14
250 以上 300 未滿	2,659	14.91	1,815	10.18	15.12	844	4.73	14.49
290 分帶	100	0.56	57	0.32	0.47	43	0.24	0.74
280 分帶	257	1.44	170	0.95	1.42	87	0.49	1.49
270 分帶	504	2.83	326	1.83	2.72	178	1	3.06
260 分帶	816	4.58	563	3.16	4.69	253	1.42	4.34
250 分帶	982	5.51	699	3.92	5.82	283	1.59	4.86
200 以上 250 未滿	5,086	28.53	3,583	20.1	29.85	1,503	8.43	25.8
240 分帶	1,189	6.67	858	4.81	7.15	331	1.86	5.68
230 分帶	1,139	6.39	771	4.32	6.42	368	2.06	6.32
220 分帶	1,033	5.79	745	4.18	6.21	288	1.62	4.94
210 分帶	902	5.06	637	3.57	5.31	265	1.49	4.55
200 分帶	823	4.62	572	3.21	4.77	251	1.41	4.31
150 以上 200 未滿	3,483	19.54	2,335	13.1	19.45	1,148	6.44	19.71
190 分帶	727	4.08	500	2.8	4.17	227	1.27	3.9
180 分帶	734	4.12	500	2.8	4.17	234	1.31	4.02
170 分帶	673	3.77	442	2.48	3.68	231	1.3	3.97
160 分帶	676	3.79	444	2.49	3.7	232	1.3	3.98
150 分帶	673	3.77	449	2.52	3.74	224	1.26	3.85
100 以上 150 未滿	4,019	22.54	2,634	14.77	21.94	1,385	7.77	23.78
140 分帶	658	3.69	439	2.46	3.66	219	1.23	3.76
130 分帶	797	4.47	537	3.01	4.47	260	1.46	4.46
120 分帶	720	4.04	474	2.66	3.95	246	1.38	4.22
110 分帶	928	5.21	604	3.39	5.03	324	1.82	5.56
100 分帶	916	5.14	580	3.25	4.83	336	1.88	5.77
100 未滿	2,549	14.3	1,615	9.06	13.45	934	5.24	16.03

■ 年齡別/性別之第一次試驗合格者現況

年齡	全體		男子		女子	
	人員	比率(%)	人員	比率(%)	人員	比率(%)
總計	2,511	100.00	1,709	68.06	802	31.94
10 未滿	0	0.00	0	0.00	0	0.00
18 以上 20 未滿	1	0.04	1	0.06	0	0.00
18	0	0.00	0	0.00	0	0.00
19	1	0.04	1	0.06	0	0.00
20 以上 25 未滿	489	19.48	250	14.64	239	29.8
20	3	0.12	3	0.18	0	0.00
21	36	1.43	23	1.35	13	1.62
22	121	4.82	77	4.51	44	5.49
23	141	5.62	56	3.28	85	10.6
24	188	7.49	91	5.33	97	12.09
25 以上 30 未滿	1,068	42.53	663	38.79	405	50.5
25	204	8.13	107	6.26	97	12.09
26	245	9.76	149	8.72	96	11.97
27	244	9.72	155	9.07	89	11.1
28	200	7.97	135	7.9	65	8.1
29	175	6.97	117	6.85	58	7.23
30 以上 35 未滿	609	24.26	484	28.34	125	15.59
30	146	5.82	98	5.74	48	5.99
31	135	5.38	102	5.97	33	4.11
32	112	4.46	96	5.62	16	2.0
33	109	4.34	97	5.68	12	1.5
34	107	4.26	91	5.33	16	2
35 以上 40 未滿	256	10.2	229	13.41	27	3.37
35	68	2.71	59	3.45	9	1.12
36	65	2.59	62	3.63	3	0.37
37	49	1.95	45	2.63	4	0.5
38	39	1.55	33	1.93	6	0.75
39	35	1.39	30	1.76	5	0.62
40 以上 45 未滿	69	2.75	66	3.86	3	0.37
40	21	0.83	21	1.23	0	0.00
41	15	0.60	13	0.76	2	0.25
42	15	0.60	15	0.87	0	0.00
43	10	0.40	10	0.59	0	0.00
44	8	0.32	7	0.41	1	0.12
45 以上 50 未滿	15	0.6	12	0.7	3	0.37
45	2	0.08	2	0.11	0	0.00
46	6	0.24	6	0.35	0	0.00
47	5	0.20	3	0.18	2	0.25
48	1	0.04	0	0.00	1	0.12
49	1	0.04	1	0.06	0	0.00
50 以上	4	0.16	4	0.23	0	0.00
51	1	0.04	1	0.06	0	0.00
52	1	0.04	1	0.06	0	0.00
53	1	0.04	1	0.06	0	0.00
55	1	0.04	1	0.06	0	0.00

■ 學歷別/性別之第一次試驗合格者現況

區分		申請人員	應試人員	合格人員	比率(%)		
					申請者 對比	應試者 對比	合格者 對比
總計	計	21,082	17,829	2,511	100.00	100.00	100.00
	男子	14,527	12,004	1,709	68.91	67.33	68.06
	女子	6,555	5,825	802	31.09	32.67	31.94
研究所肄業以上	計	2,133	1,745	249	10.12	9.79	9.92
	男子	1,669	1,347	200	7.92	7.56	7.96
	女子	464	398	49	2.2	2.23	1.95
大學畢業	計	9,036	7,439	1,332	42.86	41.72	53.05
	男子	6,473	5,203	915	30.7	29.18	36.44
	女子	2,563	2,236	417	12.16	12.54	16.61
大學肄業或中途退學	計	9,804	8,587	926	46.5	48.16	36.88
	男子	6,292	5,401	590	29.85	30.29	23.50
	女子	3,512	3,186	336	16.66	17.87	13.38
三年制以下大學	計	34	19	3	0.16	0.11	0.12
	男子	27	18	3	0.13	0.10	0.12
	女子	7	1	0	0.03	0.01	0.00
高等學校畢業以下	計	75	39	1	0.36	0.22	0.04
	男子	66	35	1	0.31	0.20	0.04
	女子	9	4	0	0.04	0.02	0.00

■ 學歷別/法學專攻別之第一次試驗合格者現況

學歷	合格者		專攻		非專攻	
	人員	比率(%)	人員	比率(%)	人員	比率(%)
總計	2,511	100.00	1,937	77.17	574	22.86
研究所肄業以上	249	9.92	170	6.77	79	3.15
大學畢業業	1,332	53.05	962	49.66	370	14.74
大學畢業以上 計	1,581	62.96	1,132	45.1	449	17.88
大學結業・肄業・中途退學	926	36.88	805	32.07	121	4.82
三年制以下大學畢業・中途退學・肄業	3	0.12	0	0.00	3	0.12
高等學校畢業・中途退學	1	0.04	0	0.00	1	0.04
學歷未詳	0	0.00	0	0.00	0	0.00
未經大學畢業 計	930	37.05	806	32.07	125	4.98

表 13 2008 年施行第 50 回司法試験第二次試験合格者統計

□ 第二次試験合格者現況

○ 年齢別・性別現況

区分	全體		男子		女子	
	人員	比率	人員	比率	人員	比率
總計	1,005	100.0	621	61.79	384	38.21
18 未滿	0	0.00	0	0.00	0	0.00
18 以上 20 未滿	0	0.00	0	0.00	0	0.00
18	0	0.00	0	0.00	0	0.00
19	0	0.00	0	0.00	0	0.00
20 以上 25 未滿	187	18.61	100	16.10	87	22.66
20	0	0.00	0	0.00	0	0.00
21	4	0.40	4	0.64	0	0.00
22	22	2.19	15	2.42	7	1.82
23	74	7.36	38	6.12	36	9.38
24	87	8.66	43	6.92	44	11.46
25 以上 30 未滿	539	53.63	315	50.72	224	58.33
25	95	9.45	44	7.09	51	13.28
26	138	13.73	70	11.27	68	17.71
27	127	12.64	76	12.24	51	13.28
28	102	10.15	71	11.43	31	8.07
29	77	7.66	54	8.70	23	5.99
30 以上 35 未滿	210	20.90	155	24.96	55	14.32
30	50	4.98	28	4.51	22	5.73
31	52	5.17	37	5.96	15	3.91
32	44	4.38	36	5.80	8	2.08
33	32	3.18	27	4.35	5	1.30
34	32	3.18	27	4.35	5	1.30
35 以上 40 未滿	62	6.17	47	7.57	15	3.91
35	23	2.29	17	2.74	6	1.56
36	14	1.39	10	1.61	4	1.04
37	12	1.19	10	1.61	2	0.52
38	6	0.60	5	0.81	1	0.26
39	7	0.70	5	0.81	2	0.52
40 以上 45 未滿	6	0.60	4	0.64	2	0.52
45 以上 50 未滿	1	0.10	0	0.00	1	0.26
50 以上	0	0.00	0	0.00	0	0.00

○ 學歷別・性別現況

區分	全體		男子			女子		
	人員	比率	人員	比率	占有率	人員	比率	占有率
總計	1005	100.00	621	61.79	100.00	384	38.21	100.00
研究所肄業以上	132	12.13	94	9.35	15.14	38	3.78	9.90
大學畢業	488	48.56	293	29.15	47.18	195	19.40	50.78
大學畢業以上 計	620	61.69	387	38.51	62.32	233	23.18	60.68
大學結業・肄業・中途退學	383	38.11	232	23.08	37.36	151	15.02	39.32
三年制以下大學畢業・中途退學・肄業	0	0.00	0	0.00	0.00	0	0.00	0.00
高等學校畢業・中途退學	2	0.20	2	0.20	0.32	0	0.00	0.00
未經大學畢業 計	385	38.31	234	23.28	37.68	151	15.02	39.32

○ 學歷別・法學專攻別現況

區分	全體		法學專攻		非法學專攻	
	人員	比率	人員	比率	人員	比率
總計	1005	100.00	817	81.29	188	18.71
研究所肄業以上	132	13.13	105	10.45	27	2.69
大學畢業	488	48.56	376	46.02	112	11.14
大學畢業以上 計	620	61.69	481	47.86	139	13.83
大學結業・肄業・中途退學	383	38.11	336	33.43	47	4.86
三年制以下大學畢業・中途退學・肄業	0	0.00	0	0.00	0	0.00
高等學校畢業・中途退學	2	0.20	0	0.00	2	0.20
未經大學畢業 計	385	38.31	336	33.43	49	4.88

○ 第一次試驗免除・未免除現況

區分	全體		第一次試驗免除		第一次試驗未免除	
	人員	比率	人員	比率	人員	比率
總計	1,005	100.00	767	76.32	238	23.68

○ 出身大學別現況

出身大學名	合格人員	出身大學名	合格人員
首爾大學서울대학교	274	仁荷大學인하대학교	4
高麗大學고려대학교	183	淑明女子大學숙명여자대학교	3
延世大學연세대학교	105	圓光大學校원광대학교	3
成均館大學성균관대학교	76	光云大學校광운대학교	2
梨花女子大學이화여자대학교	64	崇實大學校송실대학교	2
漢陽大學한양대학교	53	弘益大學홍익대학교	2
韓國中央大學중앙대학교	26	陸軍士官學校육군사관학교	2
國立釜山大學부산대학교	22	韓國嶺南大學영남대학교	2
西江大學서강대학교	20	江原大學강원대학교	1
全南大學전남대학교	19	教育大學교육대학교	1
慶熙大學경희대학교	15	韓東大學校한동대학교	1
慶北大學校경북대학교	14	忠北大學校충북대학교	1
韓國外國語大學한국외국어대학교	13	淸州大學校청주대학교	1
警察大學경찰대학	13	安東大學校안동대학교	1
建國大學건국대학교	12	神聖女子大學성신여자대학교	1
東國大學동국대학교	12	慶尙大學校경상대학교	1
亞洲大學아주대학교	11	仁川大學校인천대학교	1
全北大學전북대학교	8	東義大學동의대학교	1
忠南大學校충남대학교	7	大邱大學校대구대학교	1
東亞大學동아대학교	6	京畿大學경기대학교	1
國民大學국민대학교	5	其他四年制大學	3
首爾市立大學校서울시립대학교	5	其他	2
檀國大學단국대학교	5	總計	1,005

表 14 2008 年施行第 50 回司法試験最終合格者統計

□ 最終合格者現況

○ 年齢別・性別現況

年齢	全體		男子		女子	
	人員	占有率	人員	占有率	人員	占有率
總計	1,005	100.0	623	61.99	382	38.01
18 未滿	0	0.00	0	0.00	0	0.00
18 以上 20 未滿	0	0.00	0	0.00	0	0.00
18	0	0.00	0	0.00	0	0.00
19	0	0.00	0	0.00	0	0.00
20 以上 25 未滿	187	18.61	101	16.21	86	22.51
20	0	0.00	0	0.00	0	0.00
21	4	0.40	4	0.64	0	0.00
22	22	2.19	15	2.41	7	1.83
23	73	7.26	38	6.10	35	9.16
24	88	8.76	44	7.06	44	11.52
25 以上 30 未滿	538	53.53	315	50.56	223	58.38
25	93	9.25	43	6.90	50	13.09
26	139	13.83	71	11.40	68	17.80
27	130	12.94	79	12.68	51	13.35
28	100	9.95	69	11.08	31	8.12
29	76	7.56	53	8.51	23	6.02
30 以上 35 未滿	211	21.00	156	25.04	55	14.40
30	50	4.98	28	4.49	22	5.76
31	50	4.98	36	5.78	14	3.66
32	44	4.38	36	5.78	8	2.09
33	34	3.38	28	4.49	6	1.57
34	33	3.28	28	4.49	5	1.31
35 以上 40 未滿	62	6.17	47	7.54	15	3.93
35	23	2.29	17	2.73	6	1.57
36	14	1.39	10	1.61	4	1.05
37	12	1.19	10	1.61	2	0.52
38	6	0.60	5	0.80	1	0.26
39	7	0.70	5	0.80	2	0.52
40 以上 45 未滿	6	0.60	4	0.64	2	0.52
45 以上 50 未滿	1	0.10	0	0.00	1	0.26
50 以上	0	0.00	0	0.00	0	0.00

○ 學歷別・性別現況

區分	全體		男子			女子		
	人員	比率	人員	比率	占有率	人員	比率	占有率
總計	1005	100.00	623	61.99	100.00	382	38.01	100.00
研究所肄業 以上	131	13.03	94	9.35	15.09	37	3.68	9.69
大學畢業	490	48.76	295	29.35	47.35	195	19.40	51.05
大學畢業以上 計	621	61.79	389	38.71	62.44	232	23.08	60.73
大學結業・肄業・中途退學	383	38.11	233	23.18	37.40	150	14.93	39.27
三年制以下大學畢業・中途退學・肄業	0	0.00	0	0.00	0.00	0	0.00	0.00
高等學校畢業・中途退學	1	0.10	1	0.10	0.16	0	0.00	0.00
未經大學畢業 計	384	38.21	234	23.28	37.56	150	14.93	39.27

○ 學歷別・法學專攻別現況

區分	全體		法學專攻		法學非專攻	
	人員	比率(%)	人員	比率(%)	人員	比率(%)
總計	1005	100.00	813	80.90	192	19.10
研究所肄業 以上	131	13.03	103	10.25	28	2.79
大學畢業	490	48.76	374	46.00	116	11.54
大學畢業以上 計	621	61.79	477	47.46	144	14.33
大學結業・肄業・中途退學	383	38.11	336	33.43	47	4.86
三年制以下大學畢業・中途退學・肄業	0	0.00	0	0.00	0	0.00
高等學校畢業・中途退學	1	0.10	0	0.00	1	0.10
未經大學畢業 計	384	38.21	336	33.43	48	4.78

○ 免除・未免除現況

區分	全體		第一次試驗免除		第一次試驗未免除		第一、二次試驗免除	
	人員	比率	人員	比率	人員	比率	人員	比率
總計	1,005	100.00	757	75.32	237	23.58	11	1.10

○ 出身大學別現況

出身大學名	合格人員	出身大學名	合格人員
首爾大서울대	275	圓光大원광대	4
高麗大고려대	182	淑明女大숙명여대	3
延世大연세대	104	其他四年制大學기타 4년제대학	
成均館大성균관대	77	光云大광운대	2
梨花女大이화여대	63	崇實大숭실대	
漢陽大한양대	53	弘益大홍익대	
中央大중앙대	26	陸軍士官學校육군사관학교	
釜山大부산대	22	嶺南大영남대	
西江大서강대	21	江原大강원대	1
全南大전남대	19	教育大교육대	
慶熙大경희대	15	韓東大한동대	
警察大學경찰대학	14	忠北大충북대	
慶北大경북대	13	清州大청주대	
建國大건국대	12	朝鮮大조선대	
東國大동국대		安東大안동대	
韓國外大學국외대		神聖女大성신여대	
亞洲大아주대	11	慶尙大경상대	
全北大전북대	7	仁川大인천대	
忠南大충남대		東義大동의대	
東亞大동아대	6	大邱大대구대	
國民大국민대	5	京畿大경기대	
仁荷大인하대		其他기타	
首爾市立大서울시립대		總計	
檀國大단국대			1,005

二、司法研修院

韓國對於通過考試之合格者，自 1945 年起即設有「試補」的養成制度；1962 年起，改於首爾大學附設司法大學院。1971 年，為辦理司法試驗合格者之教育，於最高法院管轄下設立司法研修院，為大韓國唯一之法律實務養成機關。自成立以來，總計養成 14,400 餘名之法曹人；大韓國判事 99%、檢事 100%、辯護士 85%均經過司法研修院之養成。自 1978 年起，司法研修院掌理事項，增加了實施新任法官研修(신임법관연수)；1983 年起，實施法官 Seminar(討論會，법관세미나)；1979 年起，實施軍法務部試補委託教育(군법무관시보 위탁교육)。綜言之，司法研修院之主要業務，包括：(1)司法研修生修習：法曹人(判事、檢事、辯護士)之養成。(2)法官研修：對於法官之繼續教育。(3)其他研修：軍法務官試補(군법무관시보)委託教育、司法輔佐官(사법보좌관)候補者教育。

表 15 韓國法曹人研修制度變遷過程

法曹人養成制度	司法官試補制度	司法大學院制度	司法研修院制度
施行期間	1945 年~1961 年	1962 年~1970 年	1971 年~現在
性格		首爾大學附設	最高法院轄下

司法試驗合格者應在最高法院所屬之法曹人養成機關「司法研修院」(사법연수원,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中，接受 2 年間之法律實務修習以後，於司法研修院修畢者之中，依本人之選擇，除得為辯護士外，如志願成為判事、檢事者，應以司法試驗成績與司法研修院成績合算後之成績為基準，根據自身之適性，通過另外之選拔過程。其中檢事選拔由法務部負責、判事選拔由最高法院所轄之法院行政處負責；通過後，再由最高法院、法務部分別任用為判事、檢事。

司法研修生具有國家公務員(국가공무원의)之身分，須負擔充實義務(충실의무)、兼職禁止義務(겸직금지의무)、營利行為禁止義務(영리행위금지의무)等，國家以預算支給一定額度之給與(급여)。

表 16 歷年司法研修院修畢者現況

期別	修畢年 別	任命人員	修畢人員	判事 (預備判 事)	檢事	辯護士等	法務官		
							判事	檢事	辯護士等
1	1972	32	32	7	7	-	8	4	6
2	1973	49	49	15	4	-	7	19	4
3	1974	81	80	26	4	-	31	15	4
4	1975	79	79	26	13	-	18	18	4
5	1976	59	59	14	10	1	14	18	2
6	1977	58	58	11	5	-	19	20	3
7	1978	58	58	10	9	2	23	11	3
8	1979	58	58	13	7	3	21	10	4
9	1980	74	72	13	12	3	27	13	4
10	1981	98	98	34	10	5	33	16	-
11	1982	112	112	31	15	8	33	22	3
12	1983	150	149	46	21	10	44	26	2
13	1984	273	267	55	60	53	46	40	13
14	1985	311	310	46	55	106	34	20	49
15	1986	301	299	34	44	97	47	35	42
16	1987	307	302	42	34	99	43	35	49
17	1988	309	307	34	26	94	45	39	69
18	1989	297	293	34	34	88	46	34	57
19	1990	305	300	40	33	101	36	40	50
20	1991	304	301	44	36	108	47	33	33
21	1992	300	295	37	54	82	40	36	46
22	1993	297	303	42	37	96	61	41	26
23	1994	289	291	45	38	88	55	36	29
24	1995	293	291	56	48	40	39	29	79
25	1996	284	285	59	43	58	74	32	19
26	1997	292	289	85	43	80	52	17	12
27	1998	315	315	76	61	85	52	15	26
28	1999	496	486	74	73	207	72	21	39
29	2000	592	590	100	86	265	64	39	36
30	2001	694	678	109	89	327	58	37	58
31	2002	717	712	114	89	373	50	24	62
32	2003	800	798	109	82	437	59	25	86
33	2004	976	966	113	77	630	146(公 60)		
34	2005	972	957	96	85	629	147(公 55)		
35	2006	887	895	91	90	506	170(公 75)		
36	2007	998	975	89	88	618	180(公 73)		
37	2008	977	974	95	76	306	192(公 92)		
38	2009	971	980	92	88	612	188(公 65)		
計		14,465	14,363	2,057	1,686	6,217	4,060		

* 軍法務官欄之判事・檢事・辯護士等之人數，為軍服務後任官或成為辯護士之數字。

* 「公」指公益法務官。

* 37 期之修畢者中，辯護士及其他人員以 2008. 1. 31. 為基準。

資料來源：引自司法研修院 Homepage <http://jrta.scourt.go.kr/intro/situation.asp?flag=6>，
2010/2/3 下載。

有關每年經韓國司法試驗合格之法官、檢察官及律師人數，由於法曹人供需增加，現在通過司法試驗約 1,000 名合格，其中各約 90 餘名成爲判事、檢事，其餘則成爲辯護士。司法研修院修畢者中，如係未履行兵役義務者，應以法務官身分履行兵役義務，其後得直接成爲判事、檢事、辯護士。以 2009 年結業之研修生爲例，最後成爲預備判事、檢事、辯護士者，分別爲 92 名、88 名、612 名。詳細資料如表 16。

只有司法試驗合格之人，才能成爲司法研修生(사법연수생)；而要取得法曹人之資格，則必須履修 2 年的教育課程。司法研修院 2008 年入院之第 39 期計有 1,001 人獲任命爲司法研修生，其中女性 348 人，占 34.76%；平均年齡 29.07 歲；非法律系畢業者占約 1/4(請參見表 17)。此外，據司法研修院說明，2009 年入院之第 40 期有 969 人任命(女性 379 人，占 39%)。

表 17 司法研修生現況

期數	入所人員	平均年齡	女性	非法學專攻
34 期	972 名	29.95 歲	230 名(23.7%)	276 名(28.4%)
35 期	887 名	30.17 歲	187 名(21.08%)	270 名(30.44%)
36 期	987 名	29.88 歲	243 名(24.62%)	246 名(24.92%)
37 期	977 名	29.24 歲	309 名(31.63%)	263 名(26.92%)
38 期	971 名	28.88 歲	365 名(37.59%)	238 名(24.51%)
39 期	1,001 名	29.07 歲	348 名(34.77%)	235 名(23.48%)

司法研修院的教育課程，是以作爲法曹人應具備之基本的實務知識與法曹倫理教育爲主。1995 年，最高法院與全球化推進委員會(세계화추진위원회)於「法律 Service 及法曹人養成制度之全球化方案」(「법률서비스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세계화 방안」)中，著手準備司法研修院的改編方案，向研究所制度轉換，包括：於大陸式法曹人養成制度中，銜接美國式 Law School 教育方式；實施學期制與學分制；擴大辯護士實務教育；強化專門領域教育；強化職業倫理教育，以養成齊備國際的競爭力，以及奉仕精神、民主主義素養的法曹人。

自 1997 年入所的第 28 期研修生，施行改編的研修制度。2002 年司法研修院地點移轉至「一山」後，開啓了司法研修生 1,000 人的時代。

雖然在 1997 年導入了研究所(大學院)形態之 2 年—4 學期制、學分制、專攻制，並強化專攻領域及法曹倫理教育，企圖於大陸式法曹人養成制度中，銜接美國式 Law School 教育方式，但二者在性質上仍有許多差異(參見表 18)。或許基於這種差異，最終仍促使韓國在 2007 年導入美國 Law School 制度，以取代司法研修院的功能。

表 18 司法研修院與美國 Law School 比較

區分	司法研修院	美國 Law School
基本 System	國家獨占體制	民間自律競爭體制
教育目標	判事、檢事、辯護士養成	辯護士養成
教育內容	法律實務教育為主	法律理論教育為主
教育方向	標準型/劃一性	開放型/多樣性
教科目構成	以共通必修科目為多數	以選擇科目為多數
教授要員	以現職判事、檢事為中心	以專門教授為中心

司法研修生之教育課程，包括：(1)第一學期：基礎課程，主要藉由基本必修科目，就實務之基礎知識進行教育。(2)第二學期：發展課程，對於基本必修科目與專攻科目作深化內容的教育。(3)第三學期：臨床課程，於法院、檢察廳、辯護士事務所及專門領域實務修習機關中，直接處理業務的同時，取得實務能力。(4)第四學期：完成課程，進行教育成果的整理與評價。

實務修習，是以在法院、檢察廳、辯護士事務所各配置 2 個月的方式進行。修習內容是藉由參加裁判的審理及搜查，直接作成判決文、公訴狀、不起訴狀、訴狀、準備書面等，將理論與實務銜接。在辯護士實務修習期間之中，也准許在專門機關中的代替修習，如聯合國(UN)等國際機構、外國的法律機構等。

表 19 司法研修院學期別・修習領域別履修學分

修習領域			1 學期	2 學期	3 學期	4 學期	合計	
法學理論	一般法		3	2			5	
	專門及特別法		2	2			4	
	外國法及法學鄰接領域		1	2			3	
法律實務	院內 教育	辯護士實務	民事	3			3	10
			刑事	2		2		
		民事裁判實務		5			4	9
		刑事裁判實務		4			4	8
		檢察實務		4			4	8
	實務 修習	辯護士實務修習			3	6		9
		法院實務修習						
		檢察實務修習						
		專門領域實務修習				3		3
	法曹倫理	法曹論、法曹倫理論、法曹責任論		1	1		1	3
社會奉仕研修		3				3		
教授指導			1	1	1	1	4	
計			11	11	10	19	69	
			統合課程: 18					

專門領域教育課程，包括 8 種專攻領域：民事法、企業法、刑事法、憲法及行政法、知的財產權法、租稅法、國際貿易法、社會經濟法等領域。專門領域的實務修習 1 個月，是在公平交易委員會(공정거래위원회)、韓國證券交易所(한국증권거래소)、監查院(감사원)、情報通信部(정보통신부)、外交通商部(외교통상부)、勞動部(노동부)、George Washington 大學(조지워싱턴대)、Columbia 大學(콜롬비아대)等 113 個機關進行。

法曹倫理教育的強化，分別於第一、二、四學期之院內修習期間中，開設法曹論(법조론)、法曹倫理論(법조윤리론)、法曹責任論(법조책임론을)，併採合班講義與小規模 Seminar 授業方式，進行教育；另外透過 Internet Site「開運園地」(www.plaza.or.kr)，實施免費之法律諮詢(相談)；義務的社會奉仕活動，包括勤勞奉仕 12 小時，法律相談奉仕 60 小時。

教授陣容，包括：(1)專任教授：由具有 12 年以上實務經驗之判事、檢事組成。在司法研修院完成 2 年至 3 年的勤務後，再回到法院、檢察廳從事實務工作。(2)外部講師：由具備各該領域專門知識之判事、檢事、辯護士、大學教授隨時擔綱講授，包括民事辯護士實務、刑事辯護士實務及特許、租稅等專門領域。

表 20 司法研修院人員構成

院長	高等法院長	1 名
副院長	檢事長	1 名
首席教授	高等法院 部長判事	1 名
教授 57 名	法官 41 名	民事教授室 14 名
		刑事教授室 14 名
		辯護士教授室 4 名
	檢事 16 名	企劃教授室 9 名
		檢察教授室 14 名 企劃教授室 2 名
一般職 88 名	事務局長 1 名	
	總務課 65 名	
	研修課 22 名	

評價是針對各課程，通過試驗進行評價。其基本的學分制度(相對評價)為：
 (1) A+(4.3 : 7%)、A0(4.0 : 8%)、A-(3.7 : 10%)。(2)B+(3.3 : 15%)、B0(3.0 : 20%)、B-(2.7 : 15%)。(3)C+(2.3 : 9%)、C0(2.0 : 7%)、C-(1.7 : 5%)。(4)D(1.3 : 4%)。平均評分 2.35(第一學期)或 2.05(第二學期)以下之情況，於下一學期時，就全體課程再重新修習。如果 2 回留級時，予以免職(면직)處理。

司法研修院結業後，除判事、檢事外，大多數成爲辯護士，尙未服役者必須先履行兵役義務，無兵役義務者，主要在 Law Firms 中就業，其次爲開業或受其他辯護士雇用，在公共機關、企業及社會團體中任職者，較屬少數(參見表 19)。

表 21 司法研修院修畢者最近 5 年間就業現況

區分	修畢人員	判事	檢事	Law Firms	開業雇用	公共機關	企業	社會團體	軍服務	其他	未定
33 期	966	112	77	177	346	36	46	16	147	9	
34 期	957	96	85	178	311	58	55	18	146	10	
35 期	895	91	90	172	209	63	43	11	170	46	
36 期	975	89	88	273	204	74	46	4	180	16	1
37 期	973	95	76	347	125	46	62	3	195	21	3

註：不包含軍服務後就業之狀況

法學專門大學院開始運作後，司法研修院的發展將產生變化。2009 年，韓國全國 25 個法學專門大學院開校，在過渡期中，作為法曹人養成 System 的司法研修院，將與法學專門大學院暫時併存。2011 年起，司法研修生將分階段減縮，預定在 2019 年以後，研修生修習機能喪失。

法學專門大學院開始運作後，司法研修院的未來角色，包括：法官研修之擴大・強化、新進辯護士教育與經歷辯護士繼續教育、對於法學專門大學院之實務教育支援、對於行政府之法務擔當官・軍法務官等之委託教育、預防法學及教養法學 Program 新設、作為國際司法交流協力事業一環而開設外國法官教育課程、司法行政與裁判制度相關之長期的・學術的研究。

最後，有關判事、檢事、辯護士之在職及補修教育，分別於所管機關之最高法院轄下之司法研修院、法務部轄下之法務研修院(법무연수원)、大韓辯護士協會之辯護士研修院(변호사연수원)隨時實施。其中，在辯護士部分，自 2007 年《辯護士法》修正後，規定 1 年中應接受 8 小時(包含倫理教育 1 小時)之義務研修。未履行時，辯護士法規定地方檢察廳檢查長得課以 500 萬元以下的過怠金。

三、引進美國式 Law School 之背景

韓國為養成充份具備高度專門知識與國際感受之優秀法曹人力，2007 年 7 月制定「法學專門大學院設置·運營有關法律」，依該法律，2009 年 3 月韓國全國開設了 25 個 Law School。Law School 制度是以「非法學學部教育，大學院課程之 Law School 教育(包含實務教育)」的構造為其重點，將韓國法曹人養成制度，由「透過試驗選拔」(‘시험을 통한 선발’)變化成為「透過教育養成」(‘교육을 통한 양성’)。Law School 的最少授業履修學期為 6 學期，修畢以後，如於辯護士試驗中合格的話，即取得辯護士資格。

根據韓國法務部的說明，導入美國式 Law School 制度的目的，是為了克服以司法試驗為中心之現行法學教育問題，及養成完整齊備高度的專門知識與國際觀之優秀法曹人力。大韓辯護士協會受訪時，對於韓國引進美國式 Law School 的背景，也表示：2004 年韓國最高法院諮問機構「司法改革委員會」(“사법개혁위원회”)提出導入 Law School 之建議後，在 2005 年啟動之司法制度改革推進委員會(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中，開始 Law School 之法令準備。如果依當時之法令，「現行作為法曹人養成制度之法學教育，與司法制度之間連繫不足，以致在大學中很難期望會有充實的法學教育；法曹人養成，欠缺對於複雜多歧之法的紛爭，予以專業且有效率的預防並解決之能力，面對這種指責，必須藉由導入法學專門大學院制度，在具備多樣的學問背景的人之中，實施與專門的法律理論及實務相關的教育，以期提供能夠符應國民多樣的期待與要求之法律 Service。」爰明確決定採取美國式的 Law School 制度。

Law School 的授業主要包括法曹人應涵養之基本知識、專門知識及法曹倫理觀等科目。依據《法學專門大學院設置·運營有關法律施行令》第 13 條，法學專門大學院必須開設包括法曹倫理(법조윤리)；國內外法令及判例資訊等法律資訊之調查；判決文、訴狀、辯論文等法律文書之作成；模擬裁判；實習課程等內容的教科目。除此之外，各個大學的法學專門大學院為追求專門性，將具有特色之 curriculum 納入各自教學課程，則很難一概說明。

表 22 韓國設有法學專門大學院之 25 所大學

所屬行政區域	大學名	2008 年司法 試驗最終合 格人數
首爾特別市 서울특별시	首爾大學 (서울대학교)	275
	高麗大學 (고려대학교)	182
	延世大學 (연세대학교)	104
	成均館大學 (성균관대학교)	77
	梨花女子大學 (이화여자대학교)	63
	漢陽大學 (한양대학교)	53
	韓國中央大學 (중앙대학교)	26
	西江大學 (서강대학교)	21
	慶熙大學 (경희대학교)	15
	建國大學 (건국대학교)	12
	韓國外國語大學 (한국외국어대학교)	12
	首爾市立大學 (서울시립대학교)	5
	釜山廣域市 부산광역시	國立釜山大學 (국립부산대학교)
東亞大學 (동아대학교)		6
大邱廣域市 대구광역시	慶北大學校 (경북대학교)	13
仁川廣域市 인천광역시	仁荷大學 (인하대학교)	5
光州廣域市 광주광역시	全南大學 (전남대학교)	19
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	忠南大學 (충남대학교)	7
京畿道 경기도	亞洲大學 (아주대학교)	11
江原道 강원도	江原大學 (강원대학교)	1
忠清北道 충청북도	忠北大學 (충북대학교)	1
全羅北道 전라북도	全北大學 (전북대학교)	7
	圓光大學 (원광대학교)	4
慶尙北道 경상북도	韓國嶺南大學 (영남대학교)	2
濟州特別自治道 제주특별자치도	濟州大學 (제주대학교)	0

由於 Law School 的法學專門大學院是將既存的法科大學中之法學教育，與司法研修院中之實務教育予以統合後，以具有特色之課程(curriculum)，2~3 年之間接受集中的訓練始予畢業，Law School 成爲實施職業教育的機關，因而，將可能取代既存之司法研修院的機能。至於有無必要再設其他的實務實習，目前仍是韓國國會討論的議題。

韓國採行美國式 Law School 制度，與 2007 年韓美簽署自由貿易協定有密切關係。韓美 FTA 交涉結果，法律市場將分階段開放，其預定開放時期及內容：首先，協定一旦生效，美國 Law Firms 得於韓國國內設立支社；同時，准許美國辯護士就美國法與國際公法，以外國法諮詢社形態，進行法律諮詢之營業。其次，於協定生效後 2 年以內，准許在美國 Law Firms 之國內支社，與國內 Law Firms 之間，建立可以共同事務處理及收益分配之「業務提携」。再者，第三階段於協定生效後 5 年內施行，准許在美國 Law Firms 與國內 Law Firms 之間，設立 Joint Venture，即合作事業體；目前暫定，此合作事業體得於一定要件下，僱用國內辯護士。

以下爲韓美締結 FTA 後，法律 Service 分階段開放的原則：

1. 第一階段(與協定生效同時立即施行)

- 准許美國辯護就美國法、美國爲當事國時之國際條約與國際公法，進行法律諮詢(Foreign legal Consultancy)。
- 給予既存杜哈回合談判(DDA)關稅讓與的開放水準，准許美國 Law Firm 開設國內分事務所(外國法諮詢事務所)
 - ◇ 預定於韓美 FTA 協定生效以前，擬藉外國法諮詢社法之制定、施行，導入外國法諮詢社制度(現在立法預告準備中)
 - 關於外國法諮詢社法案，美方也對內容無異議，歡迎導入。

2. 第二階段(協定生效後 2 年內施行)

- 准許美國 Law Firms 之國內分事務所「外國法諮詢事務所」與國內 Law Firms 間之業務提携合作

- 預定准許對於國內法事務與外國法諮問事務混同之事件，共同受任、事務處理及收益分配

3. 第三階段(協定生效後 5 年內施行)

- 准許設立美國 Law Firms 與國內 Law Firms 間之 Joint Venture 同業事業體
- 於一定要件下，准許前項同業事業體雇用國內辯護士

但是，因應西歐先進國家之事例及國際動向，未來會將救濟的法定要件·外國籍經營持分之限制權限，保留於韓國管理監督當局，並導入確保法曹倫理等公共性及預防市場秩序破壞的企業構併 M&A (Mergers & Acquisitions)等補強機制。

韓國政府認為，美國 Law Firms 進入國內市場後，預料將有助於法律 Service 的先進化，以及國內 Law Firms 的競爭力提昇。

不過，韓美 FTA 締結後，大型美國 Law Firms 一旦進國內法律市場中，國內本地 Law Firms 抱持甚為嚴重之被害憂慮。對此意見，大韓辯護士協會之見解認為：一旦實現全面開放，美國籍大型恐龍系之 Law Firms 進入國內，原先掌握國內法律市場之小規模國內本地 Law Firms，確實提出危機、甚至結局將可能枯死的悲觀看法；2006 年 5 月，渠等提出「對政府建議 10 大 Law Firms 不可全面開放」。不過，此次交涉結果，已在階段式開放中將相當期間定為適應期間；今後，為維繫市場秩序，保留了合作事業體中，對外國籍持分亦得限制之權限，因此，也有人認為在交涉初期提起之嚴重被害憂慮，已大幅解消。今後，於已確保之適應期間中，國內業界應就競爭力能有劃時代的強化而作努力；法務部也計劃對此積極協助。

中·長期而言，外國大型 Law Firms 一旦積極進入韓國國內，國內業界發生業務量減少等若干損害，將不可避免。的確，若干人指出，席捲世界法律市場的英美籍大型 Law Firms，如擴大進入的話，韓國市場內的本地 Law Firms 有勢將沒落的被害憂慮。另外有些人特別舉例說明：德國事例是，既存 10 大 Law Firms 中，本地 Law Firms 除 1、2 個外，事實上全部滅亡。但如果將生效以前批准階

段之時間一併考慮的話，此次交涉結果，透過分階段開放，已確保了約 6 年以上的適應期間，爰國內業界應將此作為競爭力強化之最後機會，積極努力。特別是大型化・專門化組織變更時，關係部處應對今後業界所提之清算課稅猶豫等惠澤建議全面考量，籌劃多角的支援方案。

對於法律市場開放採取三階段，也有人主張開發程度不宜超過局部的・限制的水準。不過，關於法律市場擴大開放，雖然有人因被害憂慮而大聲疾呼，另一方面，以韓國企業界為中心，也有法律市場不得不全面儘速開放的強烈意見。而且，開放進行到第三階段的水準時，因准許外國 Law Firms 與國內 Law Firms 之間的 Joint Venture 等同業・合作，也准許在該合作事業體中雇用國內辯護士，大韓辯護士協會認為，此第三階段接近大多數西歐先進國家水準之高度開放水準，一旦予以實現時，韓國即可擠身世界級法律市場開放國家之行列。

四、未來的辯護士試驗新制

韓國國會於 2007 年通過《法學專門大學院設置·運營有關法律》；鑒於法學專門大學院已於 2009 年 3 月開院，自 2012 年起，法學專門大學院修畢者將陸續出現，爰代替現行司法試驗之制度應即建置。

依此，配合 Law School 制度的導入，法務部為籌備以 Law School 修畢者為對象之新式辯護士試驗制度，設置了「辯護士試驗法制定特別分科委員會」(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檢討外國之立法例等，研擬辯護士試驗法案，該法案於 2009 年 4 月 22 日經國會通過。新《辯護士試驗法》的主要內容，是以 Law School 碩士學位取得者為限，授與辯護士試驗之應試資格；Law School 畢業後 5 年內以應試 5 回為限。由於導入了辯護士試驗，既存的司法試驗僅繼續辦理至 2017 年止；為期 Law School 的教育正常化，禁止 Law School 在校生及畢業生於司法試驗中應試。

新制辯護士試驗之試驗科目為公法(공법)、民事法(민사법)、刑事法(형사법)等必須科目(필수과목)，與國際法(국제법)、經濟法(경제법)等 7 個選擇科目(선택과목)，以及法曹倫理試驗(법조윤리 시험)等，並無與司法試驗相同之第一次、第二次、第三次試驗等分階段的區分。另外值得注意的是，韓國並未導入與日本相同的預備試驗制度(예비시험제도)。

新的辯護士試驗將自 2012 年起實施，管掌·實施機關定為法務部長官，特徵如下：

1. 資格：法學專門大學院碩士學位取得者；但，本試驗中之法曹倫理試驗，於碩士學位取得前，亦可能應試。
2. 應試期間及回數限制：自碩士學位取得之月之末日起，限制 5 年內 5 回。
3. 辯護士試驗管理委員會：為管理辯護士試驗，於法務部管轄下，成立辯護士試驗管理委員會。
4. 與司法試驗併行實施：司法試驗法在 2017 前以前繼續存在，但 2017 年僅以 2016 年第一次試驗合格者為對象，實施第二次、第三次試驗。

亦即 Law School 制度和辯護士試驗導入以後，現在的司法試驗於 2017 年以前仍舊維持，自最初的辯護士試驗施行之 2012 年起，至 2017 年止，法曹人之養成同時透過司法試驗與辯護士試驗進行。

目前因導入了 Law School 制度，司法試驗預定於 2017 年廢止，如何使取代之辯護士試驗制度成功建置，實屬韓國最為急切之課題。辯護士試驗將擺脫既存司法試驗之架構，針對作為辯護士所需之實務能力進行檢證，未來出題將採多樣類型的問題。基於此，法務部當前的重要任務是組成「科目別問題類型研究委員會」(과목별 문제유형 연구위원회)並積極運作。

肆、心得與建議

自 2009 年 9 月起，韓國由政府主導，醫師國家考試除傳統筆試外，開始採行客觀結構式臨床考試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成為醫師執照考試的一個正式關卡。韓國是亞洲國家中，第一個於醫師國家考試中採用 OSCE 的國家。

韓國為了採行臨床技能考試，由專家團兩度造訪加拿大 Medical Council of Canada (MCC) 的 OSCE 考試中心，2006 年起先對外國醫學系畢業生參加韓國醫師國家執照考試者採用 OSCE，並以這 3 年經驗作為 2009 年施行全國醫學院畢業生參加 OSCE 之基礎。2008 年 5 月 19 日公布實技考試試題之各題標題，10 月 14 日公布實技考試之模型與設施，並完成醫病互動評分指南(PPI rating guide)，目前題庫中計有 120 題，預期在 3 年內可以增加至 300 題。此外，多次舉辦試辦考試(Pilot Test)，評估由標準病人擔任評分員之妥適性。韓國於 2009 年 7 月正式公告實技考試計畫，醫學院畢業生報名時間為 2009 年 8 月 4 日至 8 日，測驗時間自 2009 年 9 月 23 日至 12 月 1 日(原定 12 月 5 日止)，為期 51 天，每一應試者考完全部實技考試需時 157 分鐘，每天可安排 3 梯次。全國 41 所大學醫學院校之報考者共 3546 位。

合格標準設定採取之 modified Angoff 方法是在考後才進行，第二階段之總站數及格標準之決定，則根據委員對不通過率的想法作調整，企圖維持一個合理的淘汰率，以免激發社會大眾的質疑，終於順利在韓國引進 OSCE 考試技術。首次採行實技考試的醫師執照考試，於 2010 年 1 月 18 日放榜，實技考試計有 3,456 人應試，合格者 3,289 人，合格率為 95.2%；連同筆記考試，總計應試者 3,469 人，合格者 3,224 人，合格率為 92.9%。

醫師執照代表醫師具備獨立執業的一般能力，通過醫師執照考試，代表有能力執行這項執照所賦予的工作，因此可說是為全民健康把關的最重要關卡。目前國內大多數醫學院的五六年級仍然都在「見習」，缺少臨床病人照護的實務指導，七年級時又因雜務太多，病人照護數不足，以致一般臨床能力不足，需要畢業後

一般醫學再訓練一年(PGY)。

與韓國對照，國內有些醫學院和醫院在 OSCE 考試的實務操作上比較嫻熟，考官和標準病人在 OSCE 扮演的角色明確。但是國內各醫學院尚無眾多應考人分批應試的經驗，硬體設備需要再加強，OSCE 教案需要建置更多數量和更多元性，標準病人需要更多人數且必須監測訓練品質，國內醫學院的課程也必須因應 OSCE 考試作適當調整，加入臨床技能教學與實作課程。

雖然醫師人力素質可以透過國家考試進行鑑定，但更重要的，毋寧是學校長時間的專業教育。未來我國應在醫師考試中加入 OSCE 作為條件，短期定為應考資格，長期甚至可以考量列為考試之應試科目，主要目的是引導學校注重臨床能力的實作教育。

台灣醫學教育學會為提昇我國醫學教育品質，積極規劃 OSCE 與臨床醫學教育之教學評量之整合，決議應全面推廣 OSCE，並成立 OSCE 小組，自民國 96 年 4 月 18 日舉行第一次 OSCE 小組會議起，陸續召開 7 次會議，推動將 OSCE 納入未來國家考試之中。98 年 4 月 1 日台灣醫學教育學會第七次 OSCE 會議決議，將 OSCE 合格證書納入醫師應考資格，並提考選部醫師考試改進推動小組討論，預定 101 年實施。

如何提升標準病人和實地考試委員的素質和一致性，將是未來推動臨床技能考試的重要關鍵之一。考選部為此已於民國 98 年 9 月 29 日召開醫師考試改進推動小組會議第 5 次會議，研議將 OSCE 納入醫師分試考試第二試之應考資格，實施時間以民國 101 年為目標，惟實際實施時間將俟 OSCE 標準化建置時程而定。會中並決定邀集考選部、教育部、行政院衛生署成立跨部會研究規劃小組，進行委託研究，就 OSCE 評分項目、內容、時間、辦理方式等訂定標準化作業程序。

參訪及考察韓國行程結束後，第八次 OSCE 小組會議於 98 年 12 月 8 日舉行，特別邀請考選部派員與會說明未來政策方向。另外，臺北醫學大學教師發展中心與市立萬芳醫院教研部於 99 年 1 月 7 日及 8 日合辦「建構 High-stake OSCE 工作坊」，參加人員對於考選部未來如何協助國內 OSCE 制度的建立，多所期待。

因此，如何擬定未來國內 OSCE 作法，整合各醫學院校及醫學中心的努力成

果，當屬迫切之議題。目前考選部已初步決定再次邀集國內醫界代表召開專案會議，儘速釐清各階段重要工作，以期順利導入 OSCE 至醫師考試制度之中，進而鼓勵各醫學院校重視臨床技能之授課，提昇醫學生之執業能力。

其次，在韓國司法試驗部分，現行韓國法曹人之養成制度，主要以法學教育、選拔試驗以及研修制度等三階段所構成。法學教育是以法學大學為主要培育機構，法曹人選拔是透過法務部主管之司法試驗予以實施，對於獲得選拔者之實務研修則由司法研修院負責。司法試驗以選擇型試驗之第一次試驗、論述型試驗之第二次試驗、口述面談試驗之第三次試驗所組成，通過各階段後，即可參加下一階段之試驗。最終合格者應參加司法研修院的 2 年課程，司法研修院修畢後之人，依本人之志願加上額外之選拔，可分別從事判事、檢事或辯護士等領域之活動。

在進入司法研修院以前之法學教育，主要是在非研究所(大學院)階段的學系(學部)階段中，為期 4 年以理論為中心的法學教育。即使法科大學(법과대학)未畢業(卒業)，亦可能於司法試驗中應試。自 2009 年起導入法學專門大學院(법학전문대학원, Law School)，包括 25 所大學，2,000 名的定員。法學專門大學院預定將在 2017 年以前與司法試驗併存。

由於導入了 Law School 制度，法務部為籌備以 Law School 畢業生為對象之新式辯護士試驗制度，乃研擬辯護士試驗法，該法案經國會於 2009 年 4 月通過施行。該法的主要內容，是以 Law School 碩士學位取得者為限，賦與辯護士試驗之應試資格；Law School 畢業後，5 年內以得應試 5 回為限。韓國法務部基於辯護士試驗將針對作為辯護士所需之實務能力進行檢證，未來出題將採多樣類型的問題，目前致力於改進命題品質中。

在韓國拜會司法試驗各相關機關、團體過程中，大韓辯護士協會對於引進美國式 Law School，表示其主因是韓國大學教授具有很大的政策影響力，但既然相關法律已陸續制定施行，大韓辯護士協會將負責任地扮演協助的角色，使新制順利推行。韓國法務部表示，韓國推行法曹人養成新制度，或許可提供臺灣推動相關改革的參考經驗，同時也期許臺灣目前推動的司法官律師考試改進方案能順

利成功。韓國司法研修院對於法曹人養成制度的改革，由於機關職能極大部分將被取代，似乎難掩落寞，但也提出未來業務轉換重點。首爾大學法學大學院則顯然十分支持新制，但目前最關切的，是期望未來法學專門大學院畢業生參加辯護士試驗，合格率能夠達到 80% 以上，唯有如此，學生才能安心求學，專心學習法曹人所應具備的專業知能。

日本於 1999 年在內閣之中設置「司法制度改革審議會」，經 2 年研議後，於 2001 年提出正式意見書，其中在法曹養成制度的改革部分，引進類似美國 law school 的法科大學院制度，於 2004 年 4 月開設，並於 2006 年起配合開始實施新司法試驗，限修畢法科大學院課程者始能報考。不過，由於法科大學院設置過多，新司法試驗合格率約僅 30%，導致法科大學院學生爲了考試，無暇認真學習，無法達到改革的目的，多數意見認爲日本法科大學院爲失敗之經驗。

韓國雖然也引進了美國式 Law School 制度，但似乎汲取了日本失敗的經驗，嚴格限制法學專門大學院設置數量及招生人數，加上未來免經司法研修院之修習，可直接取得辯護士資格，不再受到司法研修院每年 1,000 名研修員額之限制，就目前而言，韓國的改革成功機會很高，其關鍵點誠如首爾大學法學大學院所關切的：2012 年開始舉辦的首屆辯護士試驗，究竟會有多少合格率？

從韓國法曹人養成制度改革的經驗可以發現，改革不必等待，一旦引進了 Law School 制度，陸續即可配合建構新的辯護士試驗制度，在法學專門大學院首屆畢業生仍在 3 年課程求學期間，相關命題作業都已積極展開。

爲改進司法官及律師考試制度，考選部於民國 95 年成立司法官律師考試改進推動小組，經召開 10 次會議，就二項考試之應考資格、應試科目、成績計算及錄取(及格)標準詳加討論，於 97 年 12 月 19 日擬具司法官及律師考試制度改進專案報告，報請考試院審議通過。該部嗣據考試院審議結果，研修(訂)司法官及律師二項考試規則，於 98 年 6 月 15 日報請考試院審議，經召開 2 次全院審查會完成審查。考試院於 8 月 20 日召開第 11 屆第 48 次會議，通過公務人員特種考試司法官考試規則草案、專門職業及技術人員高等考試律師考試規則修正草案，新制考試將自民國 100 年開始實施。

未來司法官與律師考試之筆試均採二試，二項考試之第一試及第二試應試科目均相同。另司法官考試第三試為口試。新制考試制第一試均為測驗式試題，及格者得應第二試，均為申論式試題。第一試應試科目將改為：綜合法學（一）（憲法、行政法、刑法、刑事訴訟法、國際公法、國際私法、法律倫理）。綜合法學（二）（民法、民事訴訟法、公司法、保險法、票據法、海商法、證券交易法、法學英文）。第二試則為：憲法與行政法、民法與民事訴訟法、刑法與刑事訴訟法、商事法（公司法、保險法、票據法、證券交易法）、國文（司法官：作文、公文與測驗；律師：作文與測驗）。

司法官考試第一試及第二試錄取資格均不予保留，第一試筆試成績不計入考試總成績，第二試筆試與第三試口試成績合併計算為考試總成績。第一試筆試成績合計 600 分，第二試筆試成績合計 1000 分，第三試口試為 100 分。第一試筆試擇優錄取全程到考人數 33%；第二試筆試錄取標準依需用名額加成 10% 進入第三試口試，並依應考人考試總成績及需用名額擇優錄取。

律師考試第一試錄取資格不予保留。第一試筆試成績合計 600 分，第二試筆試成績合計 1000 分。第一試及第二試筆試均擇優錄取全程到考人數 33%。

為利新制實施，考選部已同步推動命題及閱卷之改進措施，除將預先模擬命題、進行試考、實際評閱，以建立試題範例，對外公布，供應考人作為未來準備司法官及律師考試參考外，並將建立應試科目命題大綱、測驗式試題採常設題庫小組方式命題、申論式試題採命題小組方式命題、落實閱卷標準會議、各科目採行閱卷小組方式評閱試卷等措施。目前模擬命題已經完成，並於 99 年 1 月 30 日~2 月 1 日舉行新制司法官、律師考試預試，為期 3 天。

我國司法官考試與律師考試制度，與日本、韓國多年採行之審檢辯三合一考試制度不同，面臨的問題也不太相同。日韓過去之司法試驗應考資格寬鬆，引進 Law School 制度之後，如果考試及格率不低的話，確實有助於法曹養成朝向更專業化之方向發展。我國司法官與律師考試相對於日韓過去的司法試驗，應考資格比較嚴格，以大學法律系畢業生為最主要對象，因而改革重點或許不在於學校教育，而在於考試方式是否具備信效度，未來如何配合新的應試科目架構，設計新

的試題及閱卷計分方式，應為本次司法官與律師考試新制成功之關鍵。

附錄 1 參訪及考察照片



參訪人員抵達後與韓國台北代表部陳大使永綽合影(2009.11.9)



楊部長會晤韓國保健醫療人國家試驗院金鍵相院長等人(2009.11.9)



楊部長觀看韓國臨床技能評量監視系統(2009.11.10)



參訪團與韓國保健醫療人國家試驗院金鍵相院長等人合影 (2009.11.10)



楊部長與大韓辯護士協會金平祐協會長等人合影 (2009.11.10)



楊部長與韓國法務部 Sung, Yung-Hoon 次長等人合影 (2009.11.11)



楊部長與韓國司法研修院朴國洙院長等人合影 (2009.11.11)



楊部長與首爾大學法學大學院金建植院長等人合影 (2009.11.11)

附錄 2 韓國保健醫療人國家試驗院簡報資料

Clinical Skills Assessment in Korean Medical Licensure Examination

Schedule

Host : Insuk Choi,
(Bureau of General Affairs Director)

Monday, November 9, 2010

3:00 pm	Arrival at NHPLEB
3:10~3:20 pm	Welcome - President of NHPLEB, Kun-sang Kim - Minister of Examination Chaur-shin Yung
3:20~3:30 pm	NHPLEB introduction(video)
3:30~4:00 pm	Clinical Skills Assessment in Korean Medical Licensure Examination : Hoonki Park, M.D., PH.D
4:00~4:20 pm	Watching the orientation video for examinee
4:20~4:40 pm	Break
4:40~5:40 pm	Q&A
5:40~5:50 pm	Closing

Tuesday, November 10, 2010

09:30 am	Arrival at NHPLEB
09:40~09:50 am	Explaining the way of observation - Dividing I/II team(8 persons per team)
09:50~10:20 am	I team - Observation (4 persons per center)
10:20~10:50 am	II team - Observation (4 persons per center)
10:50~11:00 am	Break
11:00~11:50 pm	Q&A
11:50~12:00 pm	Closing
12:00 pm~	Lunch

Clinical Skills Assessment
In Korean medical licensure examination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contents

Clinical Skills Assessment in korean medical licensure examination (Hoonki Park, M.D., PH.D. /Steering Committee of CSA)	----- 1p
Pictures about CSA in korean medical licensure examination	----- 34p

Clinical Skills Assessment in Korean Medical Licensure Examination

Steering Committee of Clinical Skills Assessment
Hoonki Park, M.D., Ph.D.

1

Overview

- Introduction of CSA in Korea
- Administration of CSA
- Preparation of CSA
- Change in Medical Schools in Korea

2

Why CSA

- Balance in the domain of medical doctor license exam
- Improvement in quality of medical doctors
- Momentum for transformation in Undergraduate clinical practice education
- Coping strategy for globalization

3

OSCE vs CPX

	OSCE	CPX
Unit of exam	focused, segment	Comprehensive
Duration	Short(5–10 min)	Long(\geq 10min)
Rater	Professor	SP
Domain	Physical or procedural skills	Data gathering Physician patient interaction

4

Administration

- Twelve Stations
 - SP based clinical encounter: 6 stations
 - Procedural skills: 6 stations
- Time allocation for each station
 - Instruction: 1 min per station
 - CPX: 10 min (encounter) + 5 min (inter-station)
 - Procedure station: 5 min
- 157 min for each examin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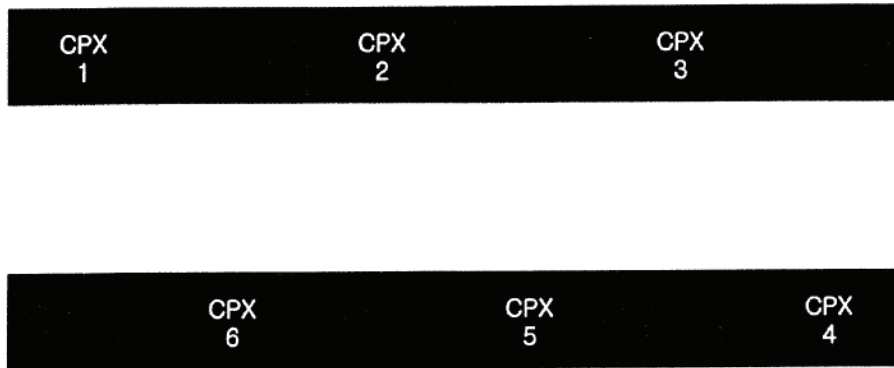
5

A typical cycle of CSA



continued 6

A typical cycle of CSA



7

Raters and Monitor

- Raters
 - OSCE: one professor, in the examination room
 - CPX: SP, through one-way mirror (PPI, SP in the room)
- Recoding the whole process of exam
 - Monitor quality of exam
 - Referring during standard setting

Continued ₈

Accuracy of scoring in the case of abdominal pain in a pilot test_{unit: %}

rater	domain	Item agreement	Agreement by examinee			
			90% ↑	85% ↑	80% ↑	70% ↑
doctor	history	95.1	63.4	94.8	94.8	97.4
	physical	87.2	60.8	60.8	79.1	92.8
	PPI	93.6	72.5	72.5	91.5	91.5
	all	91.4	29.4	43.8	68.6	82.4
SP 1	history	96.9	72.5	90.8	90.8	99.3
	physical	92.3	79.7	79.7	93.5	98.0
	PPI	96.7	85.0	85.0	95.4	95.4
	all	94.4	52.3	64.1	81.7	92.8
SP 2	PPI	96.8	86.9	86.9	96.1	96.1

Three cycles per day

Cycle	Call time for an examinee	Duration of examination
First	08:15 – 08:25	09:00 – 11:37
Second	11:50 – 12:00	12:35 – 15:12
Third	14:50 – 15:00	15:35 – 18:12

*Continued*₁₀

Days of operation

- Single examination center
 - Two sets duplicated comparatively
- Responsibility of exam: NHPLE*
- Number of candidate examinees: 3,539 persons – 51 days as a whole
- Stating dates: from late September through early December

11

Assignment of examination date

- Two stage allocation, semi-random assignment
 - 10–20 days per medical school
- On-line application by examinee
- Date adjustment: within a medical school

12

Recruitment of physician raters

- Professors from medical schools not related with examinees
- Volume of raters recruited
 - One professors per 4–5 candidate examinees for each medical school
 - For example, 100 examinees: 20–25 professors from the school

13

Standard setting

- Separate decision from written exam
- Modified Angoff method
- Equation: examination date, rater, item combination

14

Modified Angoff methods

station	score	A	B	C	D	E	F	G	H	Mean	SE	score
CPX 1	100	36	40	38	36	37	35	33	37	36.5	0.73	35.8
CPX 2	100	37	34	32	34	31	33	35	35	33.9	0.67	33.2
CPX 3	100	45	43	43	42	41	46	44	45	43.6	0.60	43.0
CPX 4	100	51	48	53	48	47	50	52	49	49.8	0.60	49.0
CPX 5	100	28	29	30	27	29	31	27	30	28.9	0.59	28.7
CPX 6	100	55	60	61	56	59	58	57	55	57.6	0.59	57.7
OSCE1	50	27	26	28	29	31	30	27	28	28.3	0.59	27.7
OSCE2	50	26	28	26	27	27	25	29	25	26.6	0.50	26.1
OSCE3	50	32	31	30	30	33	32	31	32	31.4	0.38	31.0
OSCE4	50	33	34	33	35	32	32	33	36	33.5	0.50	33.0
OSCE5	50	20	19	18	21	20	22	17	20	19.6	0.56	19.1
OSCE6	50	26	27	27	27	23	22	25	26	25.4	0.68	24.7
Total	900											407 15

No of pass among 12stations

Committee of standard setting

- members: 12–15 representatives
- At least three rounds per each station
- Video data of examinee performance, actual score distribution
- Inter–station scoring
- Review of data for equation

Announcement of blue print matrix

- Title of item: 08. 5. 19
 - procedure: core procedural skills: 40 skills(53)
 - Clinical problems: 48 problems(63)
- Models or equipments for exam: 08. 10. 14
- PPI rating guide
- Item bank: currently 120 items, more than 300 items in three years

17

Comparative sets of test items

- Day by day, different combination of items
- Organ–system based balanced sampling
- Consideration of equation of score

18

Blueprint matrix

	Acute	Chronic	HP & DP	Terminal, Behavior
Psychiatry/Neurology				o
Cardiology/Pulmonary		o		
Gastrointestinal	o			
Musculoskeletal/skin and other sensory	o			
ObGy & Ped./Urogenital			o	
Endocrine/Constitutional		o		

19

Procedural skills

- Sampling/injection
- Test procedure
- Basic physical examination
- Neurological and mental exam
- Emergent procedures
- Basic surgical skills

20

Test item development

- Draft: external professors
- Review & modification: twice
- Final tuning: rehearsal and fine correction

21

Standardized patients

- Independent recruitment by NHPLEB
 - Prohibition of returning to medical school within a year since quitting the contract
- Each case are duplicated by 2–4 SPs
- Case back-up

22

SP training

- General education
- Basic training sessions: 4–6 times, 3–4 hours per session
 - Performance + scoring training
- PPI scoring training: once for common ground

23

Checklists for a procedural skill

- Task elements: comprehensive process
- Aseptic technique
- Dexterity
- ± recording of results

24

checklists of SP-based station

- History
- Physical examination, clinical courtesy (common)
- Information sharing
- Physician patient interaction: common

25

Inter-station

1. Assessment: Probable diagnosis according to priority
2. Immediate Plan
 - ± diagnostic work up
 - ± therapeutic plan
 - ± patient education

26

Scoring: Total 900

- Procedure station: 50 X 6 station = 300
- SP station: 100 X 6 station = 600
 - Data gathering : 55–75%
 - PPI: 20–40%
 - Inter-station: 5%
- Weight checklist item by item

27

Patient–physician interaction

1. Efficient questioning skills
2. Active listening
3. Understanding patient perspective
4. Effective information sharing
5. Rapport and professionalism

28

Clinical courtesy

- Personal hygiene
- Exposure
- Preparatory verbal action

29

Pilot exam

- Third pilot exam
 - 09. 4. 27(Mon)–30(Thur)
 - Senior medical students: 288 persons
 - One students per 10–15 candidate examinees
 - Professor raters: 56 persons from 41 medical schools, 1–2 persons each school

30

The second pilot test results

	Total	Professor eval.	SP eval.	Examinee guessing
CPX	100	46.5	45.7	57.7
History	49.8(100)	22.6(45.4)	21.8(43.8)	
Physical	29.3(100)	11.4(38.9)	11.2(38.2)	
Patient Ed.	7.5(100)	3.4(45.3)	3.3(44.0)	
PPI	18.6(100)	11.3(60.8)	11.5(61.8)*	
			11.5(61.8)**	
OSCE	50(100)	28.5(57)		53.1

() converted into 100 as a total

* SP rater (through monitor), ** SP rating by performer

31

Change in medical schools

- Skills lab
- More clinical real patient-based or SP-base education and exam (OSCE, CPX)
- Curricular change: interviewing, physical skills, intensive skills training, ambulatory clinical encounter

32

Q & A

33

Pictures about CSA in korean medical Licensure examination



▲ orientation for the raters (before the exam starts)



▲ arrivals of examinee to the CSA center



▲ check out the exact site at the CSA center



▲ verification of an ID card and confirmation notice are shown



▲ orientation for the examinees



▲ check the door signs of the exam room & carrying out the exam

by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NHPLEB)

附錄 3 韓國司法試驗相關法令：中文翻譯

司法試驗法

[一部改定 2006.3.24 法律第 7893 號]

第 1 條（目的）本法以針對欲成爲判事·檢事·辯護士或軍法務官者，就其有無必要之學識與能力進行檢定而施行之司法試驗相關事項予以規定，爲其目的。

第 2 條（司法試驗實施機關）司法試驗(以下稱「試驗」)由法務部長官掌管·實施之。

第 3 條（試驗之施行及公告）法務部長官每年應實施試驗一回以上，其實施計畫應予公告。
依第 1 項規定所爲之公告，其有關必要事項，由大統領令定之。

第 4 條（選拔預定人員）選拔預定人員於每次試驗施行時，由法務部長官聽取第 14 條所規定之司法試驗管理委員會之審議意見，以及最高法院與辯護士法第 78 條所規定之大韓辯護士協會之意見後，決定之。

第 5 條（應試資格）欲於試驗中應試者，應符合下列各款之一：

1. 於高等教育法第 2 條各款所規定之學校、平生教育法第 21 條或第 22 條所規定之社內大學或遠隔大學形態之平生教育施設(以下稱「學校」)中，履修一定學分以上之法學科目者。
2. 依學分認定等有關法律之規定，其履修一定學分以上法律科目之情事，獲得學分認定者。
第 1 項所規定之法學科目之種類、學分之數量、學分認定之基準及應試資格之疏明方法，由大統領令定之。
第 1 項所規定之學校首長及學分認定機關首長，關於欲在試驗中應試者之應試資格有無，遇法務部長官或欲在試驗中應試者要求確認時，應予回應。

第 6 條（應試缺格事由）以各該試驗之最終試驗預定日爲基準，符合以下各款之一者，不得於試驗中應試。

1. 禁治產者或限定治產者。
2. 受禁錮以上之實刑，其執行終了(含視同執行終了之情況)，或不予執行確定後，未滿 5 年者。
3. 受禁錮以上之刑，自其執行猶豫之期間完了之日起算，未滿 2 年者。
4. 如屬於受禁錮以上之刑之宣告猶豫情況，其仍在宣告猶豫期間中者。
5. 依據法院之判決或其他法律，資格喪失或停止者。
6. 依據懲戒，自受罷免之處分之日起算，未滿 5 年者。
7. 依據懲戒，自受解任之處分之日起算，未滿 3 年者。

第 7 條（試驗之區分）試驗按第 1 次試驗·第 2 次試驗·第 3 次試驗區分實施。

第 2 次試驗以經第 1 次試驗合格者或受第 1 次試驗免除者，得准應試；第 3 次試驗以經第 2 次試驗合格者或受第 2 次試驗免除者，得准應試。

第 8 條（試驗方法）第 1 次試驗以選擇型方式實施爲原則，並得混用記入型方式。

②第 2 次試驗以論述型方式實施。

③第 3 次試驗採面接試驗，並評定以下各款事項：

1. 身爲法曹人的國家觀·使命感等倫理意識
2. 專門知識與應用能力
3. 意思發表之正確性與論理性
4. 禮儀·品行及誠實性

5. 創意力·意志力及其他發展可能性

第 9 條（試驗科目）①第 1 次試驗之科目為憲法、民法、刑法及大統領令所定之科目；第 2 次試驗之科目為憲法、民法、刑法、商法、行政法、民事訴訟法及刑事訴訟法。於此情況，對於部分科目，得依大統領令所定方式，決定出題範圍，據以實施試驗。

②第 1 次試驗之科目中大統領令所定科目，於各該試驗公告日起逆算 2 年之日所屬年份 1 月 1 日以後實施之其他試驗機關之試驗(以下稱「其他試驗」)中所取得之成績，得代替該科目之試驗。於此情況，其他試驗之種類、該當科目之合格所必要分數及其疏明方法，以大統領令定之。

③遇試驗科目如有新設，或第 1 項後段所規定之試驗科目之出題範圍如有擴大之情況，自該當科目之試驗施行預定日開始逆算，應置 2 年以上之猶豫期間。

第 10 條（試驗之一部免除）①對於第 1 次試驗合格者，以次一回之試驗為限，其第 1 次試驗予以免除。

②對於非屬各該試驗之第 2 次試驗免除者，其第 3 次試驗不合格，或未應試者，依其本人之申請，以次一回試驗為限，其第 1 次試驗及第 2 次試驗予以免除。但，法務部長官對於第 3 次試驗中因天災·地變等不可抗力之事由未能應試者，於其事由終了後，連同最初公告之該回試驗應試願書，將其事由對應之疏明書類提出者，得免除其第 1 次及第 2 次試驗。

第 11 條（試驗之合格決定）①第 1 次試驗及第 2 次試驗之合格決定，以各科目別所取得之分數合算後之總得分為依據。但，試驗科目中，遇有依第 9 條第 2 項規定，以其他試驗取得之成績代替試驗科目之情況，該科目成績不算入第 1 次試驗之總得分，僅以其他科目之合格與否決定之。

②各試驗之區分別、科目別之合格最低分數、科目別配分基準、成績之細部算出方法及其他試驗合格決定方法，由大統領令定之。

第 12 條（合格者公告及合格證書交付）法務部長官於第 3 次試驗合格者決定時，應無所遲滯予以公告，並對合格者交付合格證書。

第 13 條（試驗委員）①試驗委員以第 1 次·第 2 次及第 3 次試驗之試驗委員為區分，每次試驗由法務部長官予以任命或委囑之，其人數以大統領令定之。

②試驗委員應留意試驗之出題與計分，除了避免因特殊的學說造成偏見，並且主要以對於一般的法學知識的理解與其應用能力進行試驗。

第 14 條（司法試驗管理委員之設置及構成）①為實施試驗，於法務部內設置司法試驗管理委員會(以下稱「委員會」)。

②委員會以包括委員長以副委員長 2 人，共 13 人為委員構成之；委員長由法務部長官為之，副委員長於以下各該委員中，由法務部長官自各款別內指名各 1 人。

1. 法務部次官，判事，檢事，辯護士

2. 法學教授(指具有在大學教授法律學之副教授以上職位者。以下同)，非營利民間團體支援法第 2 條所規定之非營利民間團體(以下稱「非營利民間團體」)推薦者，非屬辯護士或法學教授、具有司法試驗相關經驗與德望者

③委員長除外，委員由法務部長官任命或委囑之，並以法務部次官，判事 2 人，檢事 1 人，辯護士 2 人，法學教授 3 人，非營利民間團體推薦者 1 人，及非屬辯護士或法學教授、具有司法試驗相關經驗與德望者 2 人之委員構成之。

④委員長除外，委員之任期為 2 年。但，如係以具有法務部次官，判事，檢事，法學教授之職務者而任命或委囑為委員者，遇其職務辭任之情況，視同解任或解職。

⑤委員長統轄委員會之業務，並代表委員會。

⑥遇有委員長因不得已之事由，不能遂行職務之情況，由委員長指定之副委員長代行委員長之職務。

第 15 條（委員會之機能）委員會審議以下各款事項。

1. 試驗問題之出題方向及基準有關事項
2. 計分基準等之決定有關事項
3. 試驗合格者之決定有關事項
4. 試驗科目及試驗施行方法等之改善有關事項
5. 對於選拔預定人員之審議意見有關事項
6. 決定出題範圍而後實施之試驗科目及其出題範圍之變更有關事項
7. 針對第 1 次試驗中以其他試驗代替之科目，其他試驗之種類與合格必要分數之變更有關事項
8. 試驗免除者之決定有關事項
9. 其他與試驗有關、法務部長官付議事項

第 16 條（委員會之召集與定足數）①委員會之會議由委員長於認定必要時予以召集之。

②委員會之會議於在籍委員過半數出席時開議，以出席委員過半數之贊成議決之。

第 17 條（對於不正行為者之處置）①法務部長官對於符合下列各款之一者，應停止其各該試驗，及取消其合格決定；自該處分生效日起 5 年間，本法所定之試驗及其他以國家公務員與地方公務員任用為目的之試驗，停止其應試資格。

1. 於試驗中，為不正行為者
 2. 於第 5 條第 2 項所規定之應試資格有關疏明書類中，為虛偽記載者
 3. 於第 9 條第 2 項所規定之其他試驗之試驗分數有關疏明書類中，為虛偽記載者
- ②於國家公務員或地方公務員任用試驗中，為不正行為，應試資格遭停止中者，在該期間中，不得應本法所定之試驗。
- ③法務部長官於作成第 1 項所規定之處分之時，對受其處分者，應無所遲滯予以通知，並將其名單於官報中掲載。

第 18 條（試驗情報之公開）①於試驗中應試者，自各該試驗之合格者發表日開始 6 個月內，得向法務部長官，請求本人之成績公開。於此情況，法務部長官對於請求者應公開其成績。

②法務部長官對於計分表、答案紙，以及其他有對試驗業務之公正遂行，招來顯著支障之事由之有關情報，得不予以公開。

第 19 條（對於其他機關等之協助邀請）①法務部長官為使試驗管理業務圓滑遂行，於必要之情況，得對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關係機關或國、公立學校之首長等，要求試驗場所之提供、試驗管理人力之派遣、問題出題或試驗實施場所之警備，以及其他必要之協助。

②受到第 1 項所規定之協助邀請之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關係機關或國、公立學校之首長等，以無特別之事情為限，對法務部長官之要求，必須回應。

第 20 條（罰則適用時之公務員擬制）委員會之委員或試驗委員中，如為非屬公務員之委員，於適用刑法第 127 條及第 129 條至 132 條時，視同公務員。

第 21 條（軍法務官任用試驗）軍法務官任用法第 5 條第 1 項所規定之軍法務官任用試驗，由法務部長官準用本法所定之試驗實施之，但選拔人員及試驗之施行有關事項應與國防部長官協議定之。

附則 <第 6436 號，2001.3.28>

第 1 條（施行日）本法自公布之日起施行。但，第 2 條至第 4 條，第 9 條第 1 項及第 3 項，第 10 條，第 11 條第 1 項本文、第 2 項，第 12 條至第 16 條，第 17 條第 1 項第 1 款、第 2 項及第 3 項，第 18 條至第 21 條之規定，

自 2002 年 1 月 1 日起；第 9 條第 2 項，第 11 條第 1 項但書及第 17 條第 1 項第 3 款之規定，自 2004 年 1 月 1 日起；第 5 條及第 17 條第 1 項第 2 款之規定，自 2006 年 1 月 1 日起分別施行。

第 2 條（對於制裁等之經過措置）因本法施行前之行爲，司法試驗、軍法務官任用試驗、國家公務員或地方公務員任用試驗之應試資格遭停止中者，在該期間中，不得應本法所定之試驗。

第 3 條（有關司法試驗管理委員會之經過措置）司法試驗管理委員會基於 2002 年中實施之試驗管理，於第 1 項但書規定之施行日以前，得先構成・運營。

第 4 條（其他法律之改定）①警察公務員法中，按以下方式改定之。

第 8 條第 3 項第 4 款中「司法試驗令」改爲「司法試驗法」。

②軍法務官任用法中，按以下方式改定之。

第 5 條第 1 項中「司法試驗令」改爲「司法試驗法」。

③消防公務員法中，按以下方式改定之。

第 6 條第 2 項第 4 款中「司法試驗令」改爲「司法試驗法」。

附則 <第 7893 號，2006.3.24>

本法自公布之日起施行。

司法試驗法施行令

[一部改定 2007.3.27 大統領令第 19958 號]

第 1 條（目的）本令就「司法試驗法」中委任之事項及其施行有關之必要事項予以規定，為其目的。

第 2 條（試驗之公告）①法務部長官於「司法試驗法」（以下稱「法」）第 2 條所規定之司法試驗（以下稱「試驗」）擬實施之時，應將其試驗日時·試驗場所·試驗方法·試驗科目·應試資格·選拔預定人員及出願節次（報名程序）等，於每年 1 月 31 日以前，在官報與 Internet Homepage 或日刊紙（日報）等公告之。

②法務部長官於第 1 項規定之公告後，在法第 7 條第 1 項規定之第 1 次試驗·第 2 次試驗及第 3 次試驗擬實施之時，其日時·場所及擬於試驗中應試者之準備事項等，於試驗期日 10 日前，應於官報與 Internet Homepage 或日刊紙等公告之。但，遇有不可避之事由，致公告內容變更之情況，在試驗期日 5 日前，應將其變更事項於官報與 Internet Homepage 或日刊紙等公告之。

第 3 條（應試資格）①法第 5 條第 2 項規定之法學科目之種類與學分認定之基準，於學校有開設法學學位課程之情況，依其學校之學則；於其他情況，依「學分認定等有關法律」。但，法務部長官經過司法試驗管理委員會之審議，雖遇有科目非屬規定之法學學位課程專攻科目之情況，惟其內容係法學相關時，得認定為法學科目之學分；遇有科目屬於規定之法學學位課程專攻科目之情況，如其內容明白地與法學無關時，得不認定為法學科目之學分。

②法第 5 條第 2 項規定之學分數，為 35 學分。

③法第 5 條第 2 項規定之應試資格疏明方法，於法學士之情況，依學位證書寫本或學位證明書；於其他情況，依法務部令所定方法，由履修學位之學校首長或學分認定機關首長發給之法學科目學分取得證明書。但，因不得已之事由，依法學科目學分取得證明書不能疏明應試資格時，法務部長官得經司法試驗管理委員會之審議，以成績證明文件代替之。

④擬於試驗中應試者，應於第 1 次試驗日之前一日以前，提出第 3 項規定之疏明書類。

第 4 條（試驗科目）①法第 9 條第 1 項前段規定之第 1 次試驗之科目中大統領令另定之科目，如別表 1。

②法第 9 條第 1 項後段規定之出題範圍決定後再實施之試驗科目，其出題範圍如別表 2。

③法第 9 條第 2 項前段中所稱「第 1 次試驗之科目中大統領令另定之科目」，指英語科目。

④法第 9 條第 2 項後段規定之其他試驗之種類，如別表 3，合格必要分數如別表 4。

⑤法第 9 條第 2 項後段規定之合格必要分數之疏明方法，依其他試驗機關發給之成績表；擬於試驗中應試者，應於第 1 次試驗日之前一日以前提出之。

第 5 條（試驗之合格決定）①於第 1 次試驗之合格決定時，第 4 條第 3 項中規定之科目除外，就其餘科目，每科目滿分之 4 成以上，全科目總得分之 6 成以上得分者中，考慮第 2 次試驗應試者人數後，依全科目總得分，按高得分者之順序決定之。於此情況，選擇科目之滿分，為必須科目滿分之 5 成。

②於第 2 次試驗之合格決定時，於每科目 4 成以上得分者中，考慮第 3 次試驗應試者人數等因素後，於最終選拔預定人員之 13 成之範圍中，依全科目總得分，按高得分者順序，決定合格者。於此情況，民法科目之滿分，為其他科目滿分之 15 成。

③第 1 項及第 2 項規定之得分之計算，以至小數點以下第二位（以下捨去）為止，計算之。

④於第 3 次試驗之合格決定時，法第 8 條第 3 項各款規定之面接試驗每一評定要素分別以「上」（3 分）、「中」（2 分）、「下」（1 分）區分之，以總 15 分滿分之方式計分之；各試驗委員計分後之評分之平均，以「中」（10 分）以上者為合格者。但，於試驗委員之過半數就任一評定要素為「下」之評定之情況，為不合格。

⑤成績之細部算出方法及其他合格決定之必要事項，以法務部令定之。

第 6 條（合格證明書之發給）①法務部長官依據本人之申請，發給合格證明書。

②欲接受合格證明書之發給者，應以相當於法務部令所定金額之手續費收入印紙，附貼於申請書上。但，如係

欲接受以電子文書發給合格證明書之情況，則為免費。

第 7 條（試驗委員）法第 13 條第 1 項規定之試驗委員之人數，如係第 1 次試驗及第 2 次試驗之情況，每科目(法第 9 條第 2 項規定之其他機關之試驗代替之科目除外)3 人，如係第 3 次試驗之情況，為 3 人以上。

第 8 條（應試手續費）①欲於試驗中應試者，應納付法務部令所定金額之應試手續費。但，法務部長官得取代應試手續費納付，改以相當金額之收入印紙附貼於應試願書上。

②第 1 項規定之手續費，於未在試驗中應試之情況，亦不予還給。

第 9 條（對於委員會之委員等酬勞支給）對於委員會之委員，試驗委員及試驗管理官等，於預算之範圍中，支給酬勞。

附則 <第 17181 號, 2001.3.31>

第 1 條（施行日）本令自公布日起施行。但，第 2 條，第 2 條第 1 項，第 2 項，第 5 條至第 9 條，別表 1 及別表 2 之規定，自 2002 年 1 月 1 日起；第 4 條第 3 項至第 5 項，別表 3 及別表 4 之規定，自 2004 年 1 月 1 日起，第 3 條之規定自 2006 年 1 月 1 日起分別施行。

第 2 條（其他法令之廢止）司法試驗令同時廢止。但，司法試驗令第 2 條，第 3 條，第 7 條至第 22 條及別表之規定，至 2001 年 12 月 31 日止具有效力。

第 3 條（有關語學科目之經過措置）2002 年及 2003 年實施之試驗，其第 1 次試驗科目中之語學科目，不拘於第 4 條第 1 項及別表 1 之規定，採英語，德語，法語，西班牙語，日語，中國語及俄羅斯語中之 1 科目。

第 4 條（有關出題範圍之經過措置）2002 年及 2003 年實施之試驗，其第 1 次試驗科目中之知的財產權法之試驗實施範圍，不拘於第 4 條第 2 項及別表 2 之規定，採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商標法及著作權法。

第 5 條（有關合格者決定之經過措置）2002 年及 2003 年實施之試驗，其合格者決定，不拘於第 5 條第 1 項之規定，以包含語學科目在內，每科目 4 成以上及全科目總得分之 6 成以上得分者之中，依全科目總得分，按高分者順序，決定合格者。於此情況，語學科目之滿分，為必須科目滿分之 5 成。

第 6 條（有關軍法務官任用試驗之經過措置）對於 2001 年 12 月 31 日以前實施之司法試驗，其第 1 次試驗合格者中，依司法試驗令第 22 條第 2 項規定，合於軍法務官任用試驗第 1 次試驗免除要件者，不拘於上述規定之廢止，仍依上述規定所定方式，免除軍法務官任用試驗第 1 次試驗。

附則 <第 18160 號, 2003.12.18>

本令自公布之日起施行。但別表 2 之改定規定中，第 1 次試驗科目經濟法之出題範圍，其包含電子商交易等消費者保護有關法律之部分，自 2006 年 1 月 1 日以後實施之司法試驗開始適用。

附則(Design 保護法施行令) <第 18903 號, 2005.6.30>

第 1 條（施行日）本令自 2005 年 7 月 1 日起施行。

第 2 條（其他法令之改定）①至⑩省略。

⑪司法試驗法施行令一部，按以下方式改定之。

別表 2 之知的財產權法欄之出題範圍欄中「意匠法」改為「設計保護法」。

⑫至 省略。

附則 <第 19125 號, 2005.11.11>

本令自公布之日起施行。但，第 5 條第 2 項之改定規定，自 2007 年 1 月 1 日以後最初實施之第 2 次試驗開始適用之。

附則 <第 19711 號, 2006.10.26>

本令自公布之日起施行。

附則 <第 19820 號, 2007.1.5>

①(施行日) 本令自公布之日起施行。

②(有關 TOEFL IBT 施行之經過措置) 遇有本令施行前，別表 3 之 TOEFL IBT 試驗，取得別表 4 之合格必要分數之情況，視同依第 4 條第 3 項之英語科目試驗合格。

附則(消費者基本法施行令) <第 19958 號, 2007.3.27>

第 1 條（施行日）本令自 2007 年 3 月 28 日起施行。<但書省略>

第 2 條至第 6 條省略

第 7 條（其他法律之改定）①至④省略

⑤司法試驗法施行令一部，按以下方式改定之。

別表 2 經濟法欄之出題範圍中「消費者保護法」改為「消費者基本法」。

⑥至 省略

第 8 條省略

[別表]

第 1 次試驗科目(第 4 條第 1 項關連)

選擇科目	國際法，勞動法，國際貿易法，租稅法，知的財產權法，經濟法，刑事政策，法哲學中 1 科目
語學科目	英語

[別表 2]

已定實施出題範圍之試驗科目及其出題範圍(第 4 條第 2 項關連)

科目	出題範圍	
第 1 次 試驗科目	國際法	包含國濟經濟法。
	勞動法	包含社會保障法。
	國際貿易法	國際私法及國際物品買賣契約有關 UN 協約。
	租稅法	國稅基本法，所得稅法，法人稅法，及附加價值稅法。
	知的財產權法	特許法，實用新案法，「設計保護法」，商標法，著作權法，及電腦程式保護法。
	經濟法	「消費者基本法」，電子商交易中消費者保護之有關法律，獨占規制及公正交易有關法律，約款之規制有關法律，割賦交易有關法律，及訪問販賣等之有關法律。

[別表 3]

其他試驗機關之試驗之種類(第 4 條第 4 項關連)

區分	內容
TOEFL	亞美利堅合眾國 E.T.S.(E.T.S. :Education Testing Service)所施行之試驗(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依其實施方式分區為 PBT(Paper Based Test), CBT(Computer Based Test)與 IBT(Internet Based Test)。
TOEIC	指亞美利堅合眾國 E.T.S. (E.T.S. :Education Testing Service)所施行之試驗(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TEPS	指首爾大學校英語能力檢定試驗(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

[別表 4]

其他試驗機關之試驗合格必要分數(第 4 條第 4 項關連)

TOEFL			TOEIC	TEPS
PBT	CBT	IBT		
530 分以上	197 分以上	71 分以上	700 分以上	625 分以上

司法試驗法施行規則

[一部改定 2007.12.27 法務部令 第 622 號]

第 1 條（目的）本規則以「司法試驗法」及同法施行令所委任之事項與其施行之必要事項加以規定，為目的。

第 2 條（應試願書之提出）①欲在司法試驗(以下稱「試驗」)中應試者(以下稱「應試者」)應於應試願書中添附以下各款書類，並向法務部長官提出。

1. 應試願書提出日前 6 個月以內攝影之脫帽上半身寫真(橫 3.5 centimeter，縱 4.5 centimeter)2 枚
2. 削除
3. 削除
4. 因天災·地變等不可抗力之事由，第 3 次試驗未能應試，予以疏明之書類 1 部(以擬依「司法試驗法」第 10 條第 2 項但書規定，獲得第 1 次試驗及第 2 次試驗免除之情況為限)

②依第 1 項規定而提出之書類，不予返還。

第 3 條（應試願書之接受）①法務部長官於接受應試願書時，應對於應試者交付應試表。但，對於第 2 條第 1 項各款之添付書類未添付之應試願書，得拒絕接受。

②擔當應試願書之接受之公務員，為達公正之試驗管理之目的，必要時，針對擬於其他人代理下，同時提出 2 封以上之應試願書者，得要求應試願書分散提出之；同時，受此要求者，應聽從之。

第 4 條（法學科目學分取得證明書之發給等）①「司法試驗法施行令」(以下稱「令」)第 3 條第 3 項所定之法學科目學分取得證明文件發給之機關，如以下各款。

1. 「司法試驗法」第 5 條第 1 項第 1 款所規定之學校中，於有開設法學學位課程之學校取得學分之情況，為其學校首長

2. 於其他情況，為韓國教育開發院長

②依第 1 項之規定，法學科目學分取得證明書，依別紙書式；法學科目學分取得證明書中，應記載取得機關、各教科目之名稱，學分之數量及法學科目學分之合計。

第 5 條（應試願書之記載事項之變更）應試願書獲接受後，選擇科目或試驗之免除申請內容等應試願書之記載事項，不得變更之。

第 6 條（應試者遵守事項）①應試者應持應試表及住民登錄證·旅券·運轉免許證，其他經公共機關發行得確認本人之身分證，於指定時間以前，進入指定之試驗室。

②應試者應遵從試驗管理官有關試驗施行之指示；未取得試驗管理官之承認，試驗時間中，不得離開試驗室。

③應試者於試驗時間中，不得持有攜帶用電話機等無線通信機器，及電子計算機等電算機器。

④應試者應使用指定之筆記具，於各該問題番號之答案紙中作成答案；答案紙中，不得記載答案內容以外之事項。

⑤應試者應遵守其他之法務部長官所定應試者遵守事項。

第 7 條（違反應試者遵守事項者之處理等）①符合以下各款之一者，不得於該科目及剩餘科目之試驗中應試。

1. 於試驗時，為不正之行爲者

2. 於指定之時間前，未進入指定之試驗室者

3. 未得試驗管理官之承認，於試驗時間中，離開其試驗室者

②遇有符合以下各款之一之情況，不得於剩餘科目之試驗中應試。

1. 未提出答案紙者

2. 答案紙毀損後提出者

③遇有符合以下各款之一之情況，該科目以零分處理之。

1. 符合第 1 項各款之 1 者

2. 符合第 2 項各款之 1 者

3. 不拘於試驗時間終了與否，不回應試驗管理官之答案紙提出指示，繼續作成答案者

4. 未使用指定之筆記具者

5. 未記載・表記，或錯誤地記載・表記應試番號、姓名及住民登錄番號等，致不可能確認為何人者

6. 在人跡事項記載欄之外的部分，為顯現出特定人之答案，而作出表示者

7. 於第 2 次試驗時，未於各該問題番號之答案紙中作成答案者(答案紙提出前，獲得試驗管理官訂正答案紙問題番號之情況除外)

8. 其他符合法務部長官所定之零分處理基準者

④法務部長官對於各該科目為零分處理者，及有未應試之科目者，得對其剩餘科目不予計分，並為不及格決定。

第 7 條之 2 (第 2 次試驗成績之細部算出方法) ①於第 2 次試驗時，對於各試驗委員計分後之分數，將各該試驗委員計分後之全答案紙(以下稱「試驗委員別答案紙」)分數之標準偏差與平均分算出後，按以下之算式，以調整後之分數為各應試者之得分。

$$\frac{\text{試驗委員計分後之分數} - \text{試驗委員別答案紙分數之平均分}}{\text{試驗委員別答案紙分數之標準偏差}} \times 5 + \text{全科目之全答案紙得分之平均分}$$

於此情況，試驗委員別答案紙分數之標準偏差，按以下之算式算出之。

$$\sqrt{\frac{(\text{試驗委員別答案紙分數} - \text{試驗委員別答案紙分數之平均分})^2 \text{之總合計}}{\text{試驗委員別答案紙數} - 1}}$$

②令第 5 條第 2 項所稱「每科目 4 成以上得分者」，指依試驗委員計分後之分數算出之科目分數，與依第 1 項之方法算出之科目分數，二者中任一為 4 成以上者；所稱「全科目總得分」，指依第 1 項之方法算出之總得分。

第 7 條之 3 (第 1 次試驗選擇科目成績之細部算出方法) ①於第 1 次試驗選擇科目中，對於應試者之分數，將應試者選擇之科目之標準偏差與平均算出後，依第 1 款之算式，以調整之分數之 5 成為各應試者之得分。於此情況，應試者選擇之科目，其分數之標準偏差依第 2 款之算式算出之。

1. 應試者之分數 - 應試者選擇科目之平均分

$$\frac{\text{應試者之分數} - \text{應試者選擇科目之平均分}}{\text{應試者選擇科目分數之標準偏差}} \times 10 + 50$$

2.

$$\sqrt{\frac{(\text{應試者選擇科目之分數} - \text{應試者選擇科目之平均分})^2 \text{之總合計}}{\text{應試者選擇科目之人員數} - 1}}$$

應試者選擇科目之人員數 - 1

②令第 5 條第 1 項本文中所謂「每科目 4 成以上」，指調整前之應試者選擇科目分數，與依第 1 項之方法調整算出後選擇科目分數，二者中任一為 4 成以上之情事；所稱「全科目總得分」，指必須科目分數，與依第 1 項之方法調整算出後之選擇科目分數，合併後之總得分。

第 8 條 (合格證明書發給及應試手續費) ①令第 6 條第 2 項所稱「法務部令所定之金額」，指 1 份 200 圓。

②令第 8 條第 1 項所稱「法務部令所定金額」，於司法試驗之情況，指 3 萬圓；於軍法務官任用試驗之情況，指 1 萬圓。

第 9 條（成績公開）①擬依「司法試驗法」第 18 條第 1 項規定請求成績公開者，應疏明為應試者本人；於其他人代理本人請求之情況，應提出本人之委任狀及印鑑證明書。

②第 1 項所規定之成績公開，得利用電話或情報通信網等為之。

附則 <第 510 號, 2001.12.4>

本規則自 2002 年 1 月 1 日起施行。但，第 2 條第 1 項第 2 款及第 4 條之規定，自 2006 年 1 月 1 日起；第 2 條第 1 項第 3 款之規定，自 2004 年 1 月 1 日起，分別施行。

附則 <第 567 號, 2005.4.29>

本規則自公布之日起施行。

附則 <第 599 號, 2006.10.26>

本規則自公布之日起施行。

附則 <第 622 號, 2007.12.27>

本規則自公布之日起施行。

附則 <第 680 號, 2009.11.20>

本規則自公布之日起施行。

[別紙 書式]

第 號					
法學科目學分取得證明書					
姓名				學番	
住民登錄番號				專攻	
取得機關	法學科目名	學分	取得機關	法學科目名	學分
		取得學分 計			
依司法試驗法第 5 條第 3 項規定證明如上。					
年 月 日					
○○學校長(韓國教育開發院長) [印]					
【取得機關欄 記載要項】					
1. 於學校取得學分之科目：學校名					
2. 於獨學試驗中合格之科目：獨學試驗名					
3. 於平性教育施設中履修之學習課程：平生教育施設名					

210mm×297mm(保存用紙(2 種) 70g/m²)

法學專門大學院設置·運營有關法律

[(他)一部改定 2008.2.29 法律第 8852 號]

第 1 章 總則

第 1 條 (目的) 本法以藉由決定法學專門大學院之設置·運營及教育等有關事項，養成優秀之法曹，為其目的。

第 2 條 (教育理念) 法學專門大學院之教育理念，係符應國民之多樣期待與要求，為了提供良質之法律 service，養成具備以豐富之教養、對人間及社會有深入之理解、以及將自由·平等·正義作為志向之價值觀為基礎的健全之職業倫理觀，與能夠將複雜多歧之法的紛爭予以專門的·效率地解決的知識及能力的法曹人。

第 3 條 (國家等之責務) ①國家、「高等教育法」第 2 條第 1 款所定之大學(包含合同法第 30 條所定之大學院大學。以下稱「大學」、其他與法曹人之養成有關連之機關或團體，為養成符合第 2 條所定教育理念趣旨之法曹人，應相互協力。

②國家為養成法曹人，應辦理包括籌備財政的支援方案等之必要措置。

第 4 條 (設置主體) 大學之設立·經營者(於國立大學之情況，指國家；於公立大學之情況，指地方自治團體；於私立大學之情況，指教育法人。以下同)得設置·運營以法曹人之養成所必要之專門的法律理論及實務有關教育及研究為主要目的之法學專門大學院。

第 5 條 (設置認可等) ①擬置法學專門大學院之大學，其設立·經營者應依第 16 條起至 20 條止所規定之教員·施設及教育課程等法學專門大學院設置基準，予以齊備。

②於公立或私立大學之設立·經營者擬置法學專門大學院之情況，應獲得教育科學技術部長官之認可。獲認可之法學專門大學院被廢止，或獲認可之各事項中屬大統領令所定重要事項有變更時，亦同。

③教育科學技術部長官於擬依第 2 項為設置認可及廢止·變更認可之情況，應先經第 10 條所定法學教育委員會(以下稱「法學教育委員會」)之審議。

④於國家擬置法學專門大學院之情況，應經法學教育委員會之審議。法學專門大學院被廢止，或大統領令所定重要事項被變更之時，亦同。

⑤第 2 項所定設置認可及廢止·變更認可之程序等有關之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第 6 條 (設置認可之基準) ①教育科學技術部長官於遇有依第 5 條第 2 項對於法學專門大學院之設置認可提出申請之情況，得就為達成第 2 條所定教育理念之教育目標及教育課程之妥當性，與設置基準之充足與否等予以考慮後，認可之。

②第 1 項之設置認可有關之必要細部基準，由教育科學技術部長官定之。

第 7 條 (法學專門大學院之入學定員) ①教育科學技術部長官，於圓滑地提供國民法律 service，及法曹人之需供狀況等諸般事情考慮之後，就法學專門大學院總入學定員決定之。於此情況，教育科學技術部長官應將總入學定員向國會所管常任委員會報告。

②教育科學技術部長官於依第 1 項決定法學專門大學院總入學定員時，應與法院行政處長、法務部長官協議之。於此情況，「辯護士法」第 78 條所定之大韓辯護士協會之首長(以下稱「大韓辯護士協會長」)、依「民法」第 32 條及「公益法人之設立·運營有關法律」第 4 條獲得法務部長官核可而設立之社團法人韓國法學教授會之首長(以下稱「韓國法學教授會長」)等，得向教育科學技術部長官提出意見。

③法學專門大學院之個別入學定員，應就各法學專門大學院包含教員·施設及財政在內之各種教育條件，與第 1 項所定總入學定員等，作綜合的考慮後，由教育科學技術部長官於大統領所定範圍中，決定之。

- 第 8 條（學士學位課程之廢止）①置有法學專門大學院之大學，不得置法學相關之學士學位課程。
- ②置有法學專門大學院之大學，於該法學專門大學院之開院以前，已設置法學相關之學士學位課程之情況，自該法學專門大學院學生最初入學之學年度開始，不得許可法學相關學士學位課程之學生入學。
- ③不拘於第 1 項，置有法學專門大學院之大學，爲了法學專門大學院開院以前，已在該大學之法學相關學士學位課程中入學學生之教育，於必要之範圍中，應維持法學學位課程。

- 第 9 條（與其他法律之關係）①對於法學專門大學院，遇有本法中所定之各種情況時，本法優先於其他法律適用之。
- ②對於法學專門大學院，關於本法未特別規定之事項，適用「高等教育法」等與大學關連之教育關係法。

第 2 章 法學教育委員會

第 10 條（法學教育委員會之設置及機能）爲審議有關法學專門大學院之以下各款事項，以教育科學技術部長官所屬之形態，置法學教育委員會。

1. 法學專門大學院之設置認可有關事項(包含在國立大學中置法學專門大學院之設置有關事項)
2. 法學專門大學院之廢止及變更認可有關事項(包含在國立大學中置法學專門大學院之廢止及變更有關事項)
3. 個別法學專門大學院之定員有關事項
4. 法學專門大學院設置認可之細部基準有關事項
5. 其他與法曹人之養成及法學專門大學院之法學教育有關，經教育科學技術部長官付議之事項。

第 11 條（法學教育委員會之構成）①法學教育委員會以包含委員長 1 人，共 13 人之委員構成之。

- ②委員長於第 3 項所定委員中，由教育科學技術部長官任命之。
- ③委員於符合下列各款者之中，由教育科學技術部長官委囑之。
 1. 法學教授或副教授 4 人
 2. 具 10 年以上經歷之判事，獲法院行政處長推薦者 1 人
 3. 具 10 年以上經歷之檢事，獲法務部長官推薦者 1 人
 4. 具 10 年以上經之辯護士，獲大韓辯護士協會長推薦者 2 人
 5. 從事教育行政 10 年以之公務員 1 人
 6. 有學識與德望者(擔任教授法學之專任講師以上之職位者，及具有辯護士資格者，除外)4 人

第 12 條（法學教育委員會委員之任期）①委員長及委員之任期爲 2 年，得連任。

- ②委員之任期中，遇有第 11 條第 3 項第 1 款起至第 5 款止所規定之職務或資格喪失之情況，喪失委員之身分。

第 13 條（法學教育委員會委員之除斥事由）委員於符合以下各款之一之情況，不得干預該項審議。

1. 本人或其配偶者於審議對象之大學或設置，經營大學之教育法人中在職之情況
2. 本人或其配偶者與以下各目之一者之間，有「民法」第 777 條之親族關係之情況
 - 甲. 審議對象之大學之首長
 - 乙. 審議對象之大學其法學科，法學部或法學專門大學院之教員
 - 丙. 審議對象之大學其學校法人之役員

第 14 條（對於關係機關之協助要請）法學教育委員會爲審議第 10 條各款事項，於必要之情況，得邀請聽取大學關係者、關係公務員或專門家之意見，或要求大學或關係機關提出資料或意見。

第 15 條（事實調查等）①法學教育委員會之委員長，爲審議第 10 條各款事項，爲進行必要之事實調查，得任命調查委員。

- ②法學教育委員會爲辦理第 1 項之審議，於必要之情況，得於委員或調查委員中，組成現地調查團，實施現地

調查。

③法學教育委員會之運營、調查委員之任命及現地調查團之構成等相關之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第 3 章 法學專門大學院之設置基準及運營

第 16 條（教員等）①法學專門大學院應於編制完成年度之學生定員，每教員 1 人學生數 15 人之範圍內，確保按大統領令所定學生人數予以區分數量之教員。

②於第 1 項所定法學專門大學院應確保之教員數量 5 分之 1 的範圍內，得將大統領令所定之兼任教員等，依大統領令所定方法換算後之教員人數予以算入。

③於第 1 項所定法學專門大學院應確保之教員(第 2 項所定之兼任教員除外)人數未滿 20 人之情況，應確保至 20 人。

④法學專門大學院依第 1 項及第 3 項應確保之教員數 5 分之 1 以上，應確保為具辯護士或外國辯護士之資格、並具 5 年以上關連領域之實務從事經歷之教員(以下於本項中稱「實務經歷教員」)。於此情況，符合教員 5 分之 1 人數之實務經歷教員，不得算入為第 2 項所定之兼任教員。

第 17 條（物的基準）①法學專門大學院為達充實之教育，應備齊大統領令所定之施設。

②置法學專門大學院之大學，應確保法學專門大學院運營所必要之財政；並準備獎學金制度等對學生經濟的支援方法。

第 18 條（學位課程及授業年限）①於法學專門大學院中如置有碩士學位課程，得依學則所定方式置博士學位課程。

②第 1 項所定碩士學位課程之修業年限為 3 年以上。

③對於履修第 1 項所定學位課程者，授與大統領令所定之各該學位。

④法學專門大學院中，得置不授與學位之研究課程。

⑤法學專門大學院中設置之博士學位課程，及第 4 項所定不授與學位之研究課程，其定員或入學者，不包含於第 7 條·第 10 條第 3 款·第 26 條及第 39 條第 1 款所定之定員或入學者中。

第 19 條（學分）①法學專門大學院碩士學位課程之履修必要學分，須為大統領令所定之學分以上，並以學則定之。

②在本法所定以外之其他法學專門大學院，或與法學專門大學院相應之外國大學之學位課程中所取得之學分，於大統領令所定範圍中，得依學則所定方式認定各該法學專門大學位之學分。

③對於取得與法學專門大學院法學有關之學士學位以上學位，該法學專門大學院中必要之法學知識已習得之情事被認定者，於大統領令所定範圍中，依學則所定方式，得就該法學專門大學院之學分已取得之情事予以認定。

第 20 條（教育課程）①法學專門大學院對於養成符應第 2 條教育理念趣旨之法曹人，其所必要之教科目，應予開設並以有體系的教育課程運營之。

②法學專門大學院應開設之教科目等有關之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第 21 條（對於設置基準之樹立·變更之意見收斂）教育科學技術部長官於教員·施設·教育課程等法學專門大學院之設置有關重要基準擬予樹立·變更之情況，應聽取法院行政處長·法務部長官·大韓辯護士協會長及韓國法學教授會長等之意見。

第 22 條（入學資格）得於法學專門大學院中入學者，為持學士學位或依照法律有與此同等之學歷，經認定者(以下稱「學士學位取得者」)。

第 23 條（學生選拔）①法學專門大學院於第 22 條所定具入學資格者之中，得依一般銓衡、或依特別銓衡，選拔學生。

②法學專門大學院對於志願者之學士學位課程內之成績、就能否成為法曹人之資質有關適性予以測定之試驗（以下稱「適性測驗」）之結果、以及外國語能力，應作為入學銓衡資料予以活用；其他對於社會活動及奉仕活動之經歷等，亦得作為入學銓衡資料予以活用。於此情況，如實施僅以評價法學有關知識為目的之試驗，其結果不予納入入學銓衡資料活用。

③法學專門大學院應樹立為公正地選拔入學者，包含大統領令所定內容之入學銓衡計畫，公布並施行之。

④第 1 項所定一般銓衡及特別銓衡等有關之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第 24 條（適性試驗之施行）①適性試驗，由教育科學技術部長官施行之。但，教育科學技術部長官對於適性試驗之施行所必要之組織及人力齊備之機關予以指定後，得施行適性測驗。

②教育科學技術部長官對於依第 1 項但書被指定之機關（以下於本條中稱「指定機關」），遇有符合以下各款之一情況時，其指定得予取消。但，於符合第 1 款之情況，其指定應予取消。

1. 以虛偽或其他不正方法，獲得指定之情況
2. 無正當事由，未施行適性試驗之試驗業務之情況
3. 未齊備適性試驗之施行所必要之組織與人力之情況

③教育科學技術部長官對於指定機關，得命其提出與適性試驗施行有關連之報告或資料。

④擬於適性試驗中應試者，應納付教育科學技術部長官所定之應試手續費。

⑤指定機關之指定基準及程序、適性試驗應試手續費之納付方法、其他與適性試驗之施行有關之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第 25 條（編入學）①法學專門大學院之學生，得依學則所定方式，於其他法學專門大學院中編入學。

②依第 1 項編入學之學生，於從前之法學專門大學院中取得之學分，得依學則所定方式，就編入學之法學專門大學院之學分予以認定。

第 26 條（學生構成之多樣性）①法學專門大學院應以促使具多樣知識與經驗者入學為目標而努力。

②法學專門大學院之入學者中，於法學以外的領域內取得學士學位者，所占比率應為入學者 3 分之 1 以上。

③法學專門大學院之入學者中，於設置該法學專門大學院之大學以外的大學內取得學士學位者，所占比率應為入學者 3 分之 1 以上。

第 4 章 對於法學專門大學院之評價

第 27 條（法學專門大學院評價委員會之評價）置有法學專門大學院之大學，應依大統領令所定方式，接受第 28 條所定法學專門大學院評價委員會（以下稱「評價委員會」）之評價。

第 28 條（評價委員會之設置與機能）為遂行與法學專門大學院之教育評價有關之以下各款業務，以「辯護士法」第 78 條所定大韓辯護士協會所屬形態，置法學專門大學院評價委員會。

1. 對於法學專門大學院之教育·組織·運營及施設等（以下稱「教育等」）之評價
2. 為求適正地評價而進行之評價技法之開發與評價基準之樹立

第 29 條（評價委員會之構成）①評價委員會以包含委員長 1 人，共 11 人之委員構成之。

②委員長於第 3 項所定委員之中，由大韓辯護士協會長任命之。

③委員於符合以下各款者之中，由大韓辯護士協會長委囑之。

1. 法學教授或副教授，經教育人的資源部長官推薦者 4 人
2. 具 10 年以上經歷之判事，經法院行政處長推薦者 1 人
3. 具 10 年以上經歷之檢事，經法務部長官推薦者 1 人

4. 具 10 年以上經歷之辯護士 1 人
5. 從事 10 年以上教育行政之公務員 1 人
6. 有學識與德望者(擔任教授法學之專任講師以上之職務者，與具辯護士之資格者，除外)3 人

第 30 條 (評價委員會委員之任期) ①委員長及委員之任期為 2 年，得連任。

②委員於其任期中，遇有第 29 條第 3 項第 1 款起至第 5 款止所規定之職務或資格喪失之情況，其委員身分亦喪失之。

第 31 條 (評價委員會委員之除斥事由) 委員於遇有符合以下各款之一情況，不得參與該項評價。

1. 本人或其配偶者有於作為評價對象之設置法學專門大學院之大學，或設置・經營大學之教育法人中任職之情況
2. 本人或其配偶者與符合以下各目任一者之間，有「民法」第 777 條之親族關係之情況
 - 甲. 評價對象之設置法學專門大學院之大學首長
 - 乙. 評價對象之法學專門大學院之教員
 - 丙. 評價對象之設置法學專門大學院之大學所屬教育法人之役員

第 32 條 (自體評價) 置法學專門大學院之大學，對該法學專門大學院之教育等，應依大統領令所定方式，實施自體評價，將其結果向評價委員會提出，並公表之。

第 33 條 (評價基準) ①評價委員會於為教育等之評價時，應就設置基準之遵守與否、入學者選拔之公正性、教育課程之適正性與卒業生之社會進入現況等，進行綜合的評價。

②評價委員會應在獲得教育人的資源部長官承認下，決定教育等評價所必要之基準。

第 34 條 (事實調查等) ①評價委員會之委員長為進行教育等之評價所必要之事實調查，得任命調查委員。

②評價委員會為進行教育等評價，於必要之情況，得於委員或調查委員中，組成現地調查團，實施現地調查。

③現地調查團之構成等有關之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第 35 條 (評價結果之通知等) ①法學專門大學院於為教育等之評價之情況，其結果應對該大學通知，並向教育人的資源部長官提出之。於此情況，評價委員會應公表評價結果。

②評價委員會於評價實施之過程中，對該大學，應賦與意見陳述之機會。

第 36 條 (評價委員會之運營等) ①為補助評價委員會之事務，於評價委員會中置必要之器具。

②評價委員會之委員長為期業務遂行，於認定為必要之情況下，得對國家機關或關連機關・團體要求派遣所屬公務員或任職員。

③評價委員會為遂行其機能，於必要之情況，得邀請聽取法學專門大學院之關係者或關係公務員・專門家之意見，或要求法學專門大學院及關連機關提出資料或意見。

④評價委員會為運營而必要之經費，得由國庫支援。

⑤其他與評價委員之運營等有關之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第 37 條 (對於評價委員會之資料提出之要求等) ①教育人的資源部長官於收到第 35 條所定評價委員會提出之評價結果後，為對於評價結果進行檢討，於認定為必要之情況下，得對評價委員會要求提出與評價有關連之各種資料。

②教育人的資源部長官於遇有以下各款之一事由之情況，對於評價委員會之評價結果，得要求再評價。

1. 評會委員會之委員或調查委員，犯有與法學專門大學院之評價有關連之「刑法」第 127 條、第 129 條起至第 132 條止之罪時

2. 有第 31 條所定除斥事由之委員參與評價時

③評價委員會，於教育人的資源部長官要求再評價之情況，如無特別事由，應在 3 個月以內為再評價。

④評價委員會於教育人的資源部長官之再評價要求以後，無正當之理由，而有 3 個月以上之遲延時，教育人的

資源部長官得指使法學教育委員會，就該法學專門大學院實施再評價。

第 5 章 補則

第 38 條（是正命令）教育科學技術部長官，於設置有法學專門大學院之大學或該法學專門大學院，違反第 5 條第 2 項及第 4 項、第 7 條第 3 項、第 8 條、第 16 條、第 17 條、第 18 條第 1 項起至第 3 項止、第 19 條、第 20 條、第 22 條、第 23 條、第 25 條、第 27 條及第 32 條之情況，得定一定期間，命令設置法學專門大學院之大學之設立・經營者或大學之首長改正。

第 39 條（減縮措置等）教育科學技術部長官，於受第 38 條所定是正命令者，無正當事由，在指定期間內，對此未予履行，致正常的學事運營困難之情況，得為以下各款之處分。

1. 該法學專門大學院之學生定員減縮
2. 該法學專門大學院之學生募集停止

第 40 條（認可取消）教育科學技術部長官，於法學專門大學院符合以下各款之一，正常的學事運營為不可能之情況，對該法學專門大學院，得取消認可。

1. 因大學之首長或設立・經營者之故意或重大過失，致符合第 38 條所定是正命令之事由發生之情況
2. 大學之首長或設立・經營者違反本法或與大學有關連之教育關係法令所定教育科學技術部長官之命令 3 回以上之情況
3. 休暇期間除外，繼續地 3 個月以上未授業之之情況

第 41 條（閉銷命令）①教育科學技術部長官對於未依第 5 條獲得法學專門大學院之設置認可，使用法學專門大學院之名稱，施設以事實上法學專門大學院之形態運營者，得命閉銷其施設。

②教育科學技術部長官對於依第 40 條取消認可後，仍繼續以法學專門大學院之形態運營者，得命閉銷其施設。

第 42 條（認可取消後學生保護）①依照第 40 條取消認可後之法學專門大學院之在學生，得向其他法學專門大學院編入學。於此情況，被認可編入學之法學專門大學院，對在認可被取消之法學專門大學院中取得之學分之部分或一部，得認定為該法學專門大學院之學分。

②依第 1 項編入學之學生人數，不包含於第 7 條、第 10 條第 3 款、第 26 條及第 39 條第 1 款所定之定員或入學者中。

③依第 40 條被取消認可者，於認可被取消之日起 3 個月以內，應將對於在學生及法學專門大學院中所提供之施設・財源之處理狀況，向教育科學技術部長官報告。

第 43 條（聽聞）教育科學技術部長官，於擬依第 40 條及第 41 條命法學專門大學院或施設等之認可取消及閉銷之情況，應辦理公聽會。

第 44 條（於罰則適用時之公務員擬制）法學教育委員會與評價委員會之委員、調查委員、評價委員會之職員中，非屬公務員者，於適用刑法第 127 條、第 129 條起至 132 條止所規定之罰則時，視為公務員。

第 6 章 罰則

第 45 條（罰則）符合以下各款之一者，處以 3 年以下懲役或 2 千萬圓以下罰金。

1. 未依第 5 條第 2 項前段獲得設置認可，使用法學專門大學院之名稱，募集學生者
2. 違反第 5 條後段，未獲廢止認可或變更認可，廢止法學專門大學院，或變更大統領令所定重要事項者

3. 以虛偽或其他不正之方法，獲得第 5 條第 2 項所定之設置認可・廢止認可或變更認可者
4. 違反第 41 條所定閉銷命令者

第 46 條（罰則）符合以下各款之一者，處以 1 年以下懲役或 500 萬圓以下罰金。

1. 違反第 18 條第 3 項，授與學位者
2. 對於不符合第 22 條者，許可入學者
3. 虛偽地作成第 32 條所定自體評價結果後予以公表者
4. 違反第 38 條所定之是正命令者

附則 <第 8544 號, 2007.7.27>

- ①（施行日）本法自公布後經過 2 個月之日起施行。但第 27 條起至第 37 條止之規定，自 2009 年 1 月 1 日起施行。
- ②（有關學生最初入學時間之適用例）依本法設置之法學專門大學院，自 2009 年 3 月 1 日起，得許可學生入學。

附則(政府組織法) <第 8852 號, 2008.2.29>

第 1 條（施行日）本法自公布之日起施行。但第 31 條第 1 項之改定規定中「食品產業振興」有關之部分，自 2008 年 6 月 28 日起施行；附則第 6 條所定之改定法律中，對於在本法施行前，已公布之施行日未到來之法律，改正之部分，於各該法律之施行日起施行之。

第 2 條起至第 5 條止，省略

第 6 條（其他法律之改正）①至<79>止，省略

<80>法學專門大學院設置・運營有關法律一部改正如下

第 5 條第 2 項前段・第 3 項、第 6 條第 1 項・第 2 項、第 7 條第 1 項前段及後段、第 7 條第 2 項前段及後段、第 7 條第 3 項、第 10 條各款以外之部分、第 10 條第 5 款、第 11 條第 2 項・第 3 項各款以外之部分、第 21 條、第 24 條第 1 項本文及但書、第 24 條第 2 項各款以外之部分本文、第 24 條第 3 項・第 4 項、第 38 條、第 39 條各款以外之部分、第 40 條各款以外之部分、第 40 條第 2 款、第 41 條第 1 項・第 2 項、第 42 條第 3 項及第 43 條中，「教育人的資源部長官」，分別改爲「教育科學技術部長官」。

<81>起至<760>止，省略

第 7 條 省略

法學專門大學院設置・運營有關法律施行令

一部改正 2008.02.29(大統領令 20740 號)

第 1 條（目的）本令以「法學專門大學院設置・運營有關法律」中委任事項及其施行所必要之事項予以規定，爲其目的。

第 2 條（設置認可程序）①「法學專門大學院設置・運營有關法律」（以下稱「法」）第 5 條第 2 項前段所定公立或私立大學之設立・運營者，於擬置法學專門大學院時，應備齊載有以下各款事項之書類，向教育科學技術部長官，申請法學專門大學院之設置認可。

1. 目的
2. 名稱
3. 位置
4. 學則
5. 教員(包含第 9 條第 2 項所定兼任教員及招聘教員等)現況及確保計畫
6. 第 10 條所定教育施設之現況及確保計畫
7. 教育課程及教授方法
8. 學生定員及選拔計畫
9. 開院預定日
10. 設置法學專門大學院之大學過去 3 年間之財務諸表。但，如自設立起未滿 3 年時，則爲設立以後之財務諸表
11. 包括授業料及入學金等財源、獎學金制度之今後 3 年間之法學專門大學院之財政運用計畫
12. 對於被廢止之法學相關學士學位課程學生之對策
13. 於設置法學專門大學院之大學中開設之法學相關碩・博士學位課程運營計畫
14. 法學專門大學院發展計畫
15. 其他與研究課程設置、現場實習計畫等法學專門大學院之設置・運營相關，教育科學技術部長官試認定爲特別必要之事項

②教育科學技術部長官於接受第 1 項所定之設置認可申請時，應委請法第 10 條所定之法學教育委員會(以下稱「法學教育委員會」)對該申請進行審議。於接受第 3 條所定廢止認可或第 4 條第 2 項所定變更認可申請時，亦同。

第 3 條（廢止認可程序）法第 5 條第 2 項所定之公立或私立大學之設立・運營者如擬廢止法學專門大學院，應備齊載明以下各款之書類，向教育科學技術部長官申請法學專門大學院之廢止認可。

1. 廢止事由
2. 廢止年月日
3. 學生及學籍簿之處理方法

第 4 條（變更認可程序等）①法第 5 條第 2 項後段及第 4 項後段所稱「大統領令所定重要事項」，指以下各款事項。

1. 目的
2. 名稱
3. 位置
4. 學生定員

②依照法第 5 條第 2 項後段，擬接受對於第 1 項各款事項之變更認可之公立或私立大學之設立・經營者，應備齊載明以下各款之書類，向教育科學技術部長官申請變更認可。

1. 變更內容
2. 變更事由
3. 變更年月日

第 5 條（對設置認可應有之考慮事項）教育科學技術部長官於依法第 5 條及第 6 條為法學專門大學院之設置認可等之時，應考慮為養成地方大學之發展與地域發展所必要之優秀人力，其所需之地域間均衡。

第 6 條（法學專門大學院之入學定員）法第 7 條第 3 項所稱「大統領令所定範圍」，指 150 名。

第 7 條（法學教育委員會之運營）①法學教育委員會之委員長，代表委員會；總括委員會之業務。

②於委員長因不得已之事由，無法遂行職務之情況，由委員長事先指名之委員，代行委員長之職務。

③委員長召集法學教育委員會，並為其議長。

④法學教育委員會之會議，於在籍委員過半數出席，開議之；出席委員過半數之贊成，議決之。

⑤對於法學教育委員會之委員及第 8 條第 1 項所定之調查委員，得支給酬勞及旅費。

⑥為處理法學教育委員會之事務，於法學教育委員會中置幹事及書記各 1 名，幹事與書記由教育科學教育部長官自教育科學技術部所屬公務員中任命之。

第 8 條（調查委員之任命等）①法學教育委員會之委員長於在大學教授法學之教員、判事・檢事或辯護士、公認會計士、從事 3 年以上教育行政之公務員、及有學識與德望者之中，任命法第 15 條第 1 項所定之調查委員；調查委員之任期，由委員長定之。

②調查委員於履行事實調查之後，應將結果報告書向法學教育委員會提出之。

③法第 15 條第 2 項所定之現地調查團，於法學教育委員會委員與調查委員中，下列各款之人構成之。

1. 在大學教授法學之教員 2 名
2. 判事・檢事或辯護士中 2 名
3. 公認會計士 1 名
4. 從事 3 年以上教育行政之公務員 1 名
5. 有學識與德望者 1 名

④於實施現地調查之情況，現地調查團對於申請設置法學專門大學院之大學，依照法第 5 條第 1 項所定之設置基準與法第 6 條第 2 項所定之細部基準，就認可審查之必要事項進行審查後，應將其結果報告書向法學教育委員會提出之。

⑤法學教育委員會應將第 4 項所定結果報告書，向申請法學專門大學院設置認可者送付之；接受結果報告書送付之申請者，對於結果報告書得提出意見。

⑥法學教育委員會，將設置認可申請時提出之書類、第 2 項及第 4 項所定之結果報告書，及收到之第 5 項所定提出意見等，予以綜合後，對於設置認可與否予以審議；其結果，應向教育科學技術部長官提出之。

⑦本令規定事項以外，與法學教育委員會之運營、調查委員之任命、審議程序等有關之必要事項，由法學教育委員會定之。

第 9 條（教員）法第 16 條第 1 項所稱「大統領令所定學生人數」，指 12 名。

②法第 16 條第 2 項所稱「大統領令所定之兼任教員等」，指「高等教育法施行令」第 7 條第 1 款所定之兼任教員，與同法施行令第 7 條第 4 款所定之招聘教員等。

③法第 16 條第 2 項所定教員人數予以算入之兼任教員等之人數，係將第 2 項所定之兼任教員與招聘教員等所擔當之每週教授時間予以合算後之時數，除以 9 時算定之；小數點以下捨去。於此情況，每 1 人被認定之教授時間，每週不得超過 9 時。

④法學專門大學院教員之教授時間，每學年度以 30 週為基準、每週以 6 時為原則。但，於認定必要之情況，得以有別於學則之方式定之。

第 10 條（教育施設）法第 17 條第 1 項所稱「大統領令所定之施設」，指講義室、教員研究室、法學專門圖書室、模擬法庭、Seminar 室、行政室、情報通信施設等。

第 11 條（學位）法第 18 條第 1 項所定之碩士學位及博士學位，為專門學位。但，於博士學位之情況，得依學則所定方式授與學術學位。

第 12 條（學分）①法第 19 條第 1 項所稱「大統領令所定之學分」，指 90 學分。

②法第 19 條第 2 項及第 3 項所稱「大統領令所定範圍」，指 15 學分。

第 13 條規（教育課程）①法學專門大學院為指導學生有關法曹人所應具備之價值、法律知識與專門技術等，應開設包括以下各款內容之教科目。

1. 法曹倫理
2. 國內外法令及判例情報等法律情報之調查
3. 判決文、訴狀、辯論文等法文書之作成
4. 模擬裁判
5. 實習課程

②法學專門大學院，應經由第 1 項第 5 款所定之實習課程，提供學生能在社會中奉仕之機會。

第 14 條（入學銓衡之區分）①法第 23 條第 1 項所定之一般銓衡，指以法第 22 條所定之學士學位取得者為對象，依據普遍性教育的基準，選拔學生的銓衡。

②法第 23 條第 1 項所定之特別銓衡，指於法第 22 條所定之學士學位取得者中，以法學專門大學院定為障礙人等，其身體的或經濟的條件為惡劣之階層為其對象，進行選拔學生之銓衡。

第 15 條（入學銓衡計畫之樹立·公表）法學專門大學院如擬依據法第 23 條選拔學生，應每年樹立包含以下各款內容之入學銓衡計畫，於入學生選拔前公表之。

1. 學生選拔之公正性確保方案
2. 入學銓衡資料之種類及活用方法
3. 於實施特別銓衡之情況，其選拔對象及基準

第 16 條（適性試驗之施行）①教育科學技術部長官於指定法第 24 條第 1 項但書所定之適性試驗施行之機關時，於以下各款之機關中，指定之。

1. 法學專門大學院或法學專門大學院所屬之大學為其構成員、依據「民法」第 32 條及「公益法人之設立・運營有關法律」第 4 條設立之法人

2. 「高等教育法」第 2 條所定之大學

3. 依據「政府出捐研究機關等之設立・運營及育成有關法律」第 8 條設立之政府出捐研究機關

4. 以適性試驗之施行為目的、依據「民法」第 32 條及「公益法人之設立・運營有關法律」第 4 條設立之法人

②教育科學技術部長官於依照法第 24 條第 1 項但書，指定適性試驗之施行機關時，對於擬指定之機關，得令提出其組織及人力現況、適性試驗施行計畫書等。

③被指定為法第 24 條第 1 項但書所定之適性試驗施行機關之機關(以下稱「指定機關」)，每年應實施 1 回以上之適性試驗；其實施計畫應公告之。

④於指定機關施行適性試驗之情況，應試手續費依據指定機關所定方法納付之。

第 17 條（適性試驗結果之通報）①法學專門大學院於實施入學銓衡時，應要求指定機關，將該法學專門大學院志願者之適性試驗結果給予通報。

②指定機關遇有第 1 項所定之法學專門大學院之要求時，應對法學專門大學院通報該志願者應試之全部適性試驗結果。

第 18 條（法學專門大學院之評價時機等）①置有法學專門大學院之大學，於學生最初入學之年起算 4 年之年，應接受法第 28 條所定之法學專門大學院評價委員會(以下稱「評價委員會」)之評價；自接受最初之評價開始，每 5 年應接受評價委員會之評價。

②評價委員會遇有符合以下各款之一情況，不拘於第 1 項，於第 1 項之評價時機以外之時機，亦得實施評價。

1. 大學申請評價之情況

2. 大學虛偽地作成第 19 條所定之自體評價報告書，向評價委員會提出之情況

3. 其他因法學專門大學院之運營，招來重大或明白之障害，被認定有必要為緊急評價之情況

③置有法學專門大學院之大學，為接受第 1 項之評價，應備齊記載以下各款事項之書類，向評價委員會提出之。

1. 學則

2. 教員現況

3. 第 10 條所定教育施設之現況

4. 教育課程

5. 學生之講義評價

6. 對學生之評價基準及結果

7. 入學銓衡方法及結果

8. 卒業現況及辯護士試驗結果

9. 每年度卒業生之社會進入現況(以卒業後 1 年經過之時為基準)

10. 該法學專門大學院之財務諸表(包含授業料及入學金等財源、獎學金支給現況等)

11. 法學專門大學院之認可申請時之發展計畫與其履行結果，及今後發展計畫

第 19 條（自體評價）法第 32 條所定之自體評價，應於第 18 條第 1 項所定評價實施之年起算 2 年之前起，每年

實施之；並依評價委員會所定方式，作成自體評價報告書，向評價委員會提出之。

第 20 條（評價委員會調查委員之任命等）①有關法第 34 條第 1 項所定之調查委員之任命與任期，準用第 8 條第 1 項。於此情況，「法學教育委員會之委員長」視為「評價委員會之委員長」。

②有關法第 34 條第 2 項所定之現地調查團之構成，準用第 8 條第 3 項。於此情況，「法學教育委員會」視為「評價委員會」。

③於實施現地調查之情況，現地調查團於透過教職員及學生訪談、授業參觀、資料檢討、施設現況之實查等活動，就設置基準之充足與否等評價所必要之有關事項進行調查後，應將其結果報告書向評價委員會提出之。

第 21 條（評價委員會之運營）①有關評價委員會之運營，準用第 7 條第 1 項起至第 4 項止之規定。於此情況，「法學教育委員會」視為「評價委員會」。

②本令規定事項以外，有關評價委員會之運營、法學專門大學院之細部評價基準及程序等之必要事項，由評價委員會定之。

附則 <第 20302 號, 2007.9.28>

本令自公布之日起施行。但，第 18 條起至第 21 條止之規定自 2009 年 1 月 1 日起施行。

附則（教育科學技術部與其所屬機關職制）<第 20740 號, 2008.2.29>

第 1 條（施行日）本令自公布之日起施行。

第 2 條起至第 6 條止，省略

第 7 條（其他法令之改正）①起至<28>止，省略

<29>法學專門大學院設置・運營有關法律施行令一部，改正如下。

第 2 條第 1 項各款以外之本文・第 15 款・第 2 項但書・第 3 條各款以外之本文・第 4 條第 2 項各款以外之本文・第 5 條、第 8 條第 6 項、第 16 條第 1 項各款以外之本文・第 2 項中，「教育人的資源部長官」分別改為「教育科學技術部長官」。

第 7 條第 6 項中，「教育人的資源部」改為「教育科學技術部」；「教育人的資源部長官」改為「教育科學技術部長官」。

<30>起至<102>止，省略

辯護士試驗法

[制定 2009.5. 28 法律第 9747 號]

第 1 條（目的）本法以針對爲了檢定辯護士必要之職業倫理，與遂行法律知識等法律事務之能力而舉行之辯護士試驗加以規定，爲其目的。

第 2 條（辯護士試驗之基本原則）辯護士試驗(以下稱「試驗」)應與「法學專門大學院設置・運營有關法律」所規定之法學專門大學院(以下稱「法學專門大學院」)之教育課程，有機的連繫後施行。

第 3 條（試驗實施機關）試驗由法務部長官管掌・實施之

第 4 條（試驗之實施及公告）①法務部長官每年實施 1 回以上之試驗，其實施計畫應預先公告。

②第 1 項規定之公告，其必要之事項，以大統領令定之。

第 5 條（應試資格）①擬於試驗中應試者，應取得「法學專門大學院設置・運營有關法律」第 18 條第 1 項規定之法學專門大學院之碩士學位。但，第 8 條第 1 項之法曹倫理試驗，依大統領令所定方式，雖於法學專門大學院之碩士學位取得以前，亦得應試。

②第 1 項所定應試資格，其疏明方法，以大統領令定之。

③法學專門大學院之首長，關於試驗應試者之資格，如法務部長官或該應試者要求確認時，應予確認其資格。

第 6 條（應試缺格事由）於依第 4 條規定公告之試驗期間中，符合以下各款之一者，不得於該試驗中應試。

1. 禁治產者或限制治產者
2. 受禁錮以上實刑之宣告，其執行終了(包含視同執行終了之情況)，或其免予執行確定後，未滿 5 年者
3. 受禁錮以上之刑之執行猶豫宣告，其猶豫期間經過後，未滿 2 年者
4. 受禁錮以上之到之宣告猶豫，在猶豫期間中者
5. 受彈劾或懲戒處分致遭罷免後，未滿 5 年者
6. 依「辯護士法」遭除名後，未滿 5 年者
7. 因懲戒處分而遭解任，未滿 3 年者
8. 因「辯護士法」遭永久除名者

第 7 條（應試期間及應試回數之限制）①試驗(第 8 條之法曹倫理試驗除外)依「法學專門大學院設置・運營有關法律」第 18 條第 1 項所定，法學專門大學院之碩士學位取得當月之末日開始，5 年內僅得應試 5 回。

②依「法學專門大學院設置・運營有關法律」第 18 條第 1 項所定，法學專門大學院之碩士學位取得之後，於依「兵役法」或「軍人司法」履行兵役義務之情況，其履行期間不予包含在第 1 項之期間。

第 8 條（試驗之方法）①試驗以選擇型(包含記入型。以下同)及論述型(包含實務能力評價。以下同)筆記試驗，與別途之法曹倫理試驗，實施之。

②選擇型筆記試驗，與論述型筆記試驗，混合後出題。

③不拘於第 1 項及第 2 項，對於第 9 條第 1 項第 4 款之專門的法律領域有關科目，以論述型筆記試驗實施之。

④法務部長官，得就法曹倫理試驗施行所必要之組織及人力已備齊之外部機關予以指定，施行法曹倫理試驗。

⑤第 4 項所定外部機關之指定基準，指定手續及指定取消，對外部機關之監督，及其他法曹倫理試驗有關必要事項，以大統領令定之。

第 9 條（試驗科目）①試驗科目如以下各款。

1. 公法(指憲法及行政法領域之科目)
2. 民事法(指「民法」、「商法」及「民事訴訟法」領域之科目)

3. 刑事法(指「刑法」及「刑事訴訟法」領域之科目)

4. 專門的法律領域有關科目中，應試者選擇之 1 個科目

②第 1 項第 4 款所定專門的法律領域有關科目之種類，以大統領令定之。

③對於試驗之各科目，得依大統領令所定方式，定其出題範圍後，實施試驗。

④如遇第 2 項所定試驗科目新設、廢止，或第 3 項所定試驗科目之出題範圍變更之情況，應置自該當科目之試驗預定日開始，逆算 2 年以上之猶豫期間。

第 10 條（試驗之合格決定）①試驗之合格，應就法學專門大學院之導入趣旨予以充分考慮後，決定之。

②試驗之合格，就選擇型筆記試驗與論述型筆記試驗之分數，以一定之比率換算後之合算總得分決定之。但，各科目中，有任一科目未取得合格最低分數以上之情況，為不合格。

③法曹倫理試驗僅決定合格與否，其成績不算入第 2 項之總得分。

④選擇型筆記試驗與論述型筆記試驗二者間之換算比率，選擇型及論述型筆記試驗內之各科目別配分比率，各科目別筆記試驗之合格最低分數，法曹倫理試驗之合格必要分數，成績之細部算出方法，及其他之試驗合格決定方法，以大統領令定之。

第 11 條（合格者公告及合格證書發給）法務部長官於合格者決定後，即時公告之；並就合格者發給合格證書。

第 12 條（試驗之一部免除）法曹倫理試驗合格者，於第 7 條之期間中，其試驗予以免除。

第 13 條（試驗委員）①為擔當試驗之出題及計分，置試驗委員。

②試驗委員，於具試驗有關之豐富經驗及知識者中，每次試驗時，由法務部長官委囑之；其人數，以大統領令定之。但，第 14 條所定辯護士試驗管理委員會之委員不得為試驗委員。

③試驗委員於遂行其業務時，應留意以法學專門大學院之教育課程已完全充實之人為基準，就學識及其應用能力為綜合判斷之。

第 14 條（辯護士試驗管理委員會之設置及構成）①為實施試驗，於法務部置辯護士試驗管理委員會(以下稱「委員會」)。

②委員會以包含委員長 1 名及副委員長 1 名在內，共 15 名之委員構成之；委員長與副委員長由法務部長官自委員中指名之人為之。

③委員由以下各款之人為之。

1. 法務部次官

2. 符合以下各目之 1 者中，經法務部長官委囑之人

甲. 法學教授(指具有副教授以上職位之人。以下同)5 名

乙. 法院行政處長推薦，具 10 年以上經歷之判事 2 名

丙. 具 10 年以上經歷之檢事 2 名

丁. 大韓辯護士協會長推薦，具 10 年以上經歷之辯護士 3 名

戊. 其他之具有知識及德望之人等，依大統領令所定之人 2 名(具教授法學之專任講師以上職位之人及具辯護士資格之人除外)

④委員之任期為 2 年。但，以具有法學教授、判事、檢事之職位者為資格要件獲委囑之委員，於其職位辭任之情況，雖於任期滿了之前，視同被解職。

⑤委員長代表委員會；總括委員會之業務。

⑥於委員長因不得已之事由，無法遂行職務時，副委員長代行委員長之職務。

第 15 條（委員會之所管事務）委員會審議以下各款事項。

1. 試驗問題之出題方向及基準有關事項

2. 計分基準有關事項

3. 試驗合格者之決定有關事項

4. 試驗方法及試驗施行方法等之改善有關事項
5. 其他與試驗有關，經法務部長官交付會議之事項

第 16 條（委員會之會議）①委員會之會議，於法務部長官要求時，或委員長認定為必要時，由委員長召集之。

②委員會之會議，以在籍委員過半數之出席開議之；出席委員過半數之贊成議決之。

第 17 條（對於不正行為者之處置）①法務部長官對符合以下各款之一者，該當考試予以停止，並取消合格決定；依其情況，得決定自處分作成之日起，5 年以內之期間，停止本法所定試驗之應試資格。

1. 於試驗中，為大統領令所定不正行為之人
 2. 於第 5 條第 2 項所定應試資格有關疏明書類中，虛偽記錄之人
- ②於務部長官依第 1 項處分後之情況，對受該處分之人，應無所遲滯通知之。

第 18 條（試驗情報之公開）①於試驗中應試之人，於試驗之合格者發表日開始 6 個月內，得向法務部長官請求本人之成績公開。

②法務部長官對於計分表、答案紙，及其他一旦公開將對試驗業務之公正遂行造成顯著支障情事之情報，得不予公開。

第 19 條（對於其他機關等之協助要請）①法務部長官為圓滑遂行試驗管理業務，必要時，得對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關係機關或國公立學校之首長等，要求試驗場所之提供、試驗管理人力之派遣、問題出題或試驗場所之秩序維持，及其他必要之協助。

②受到第 1 項規定之協助要求，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關係機關或國公立學校之首長等，如無特別之事項，應遵從法務部長官之要求。

第 20 條（應試手續費）①擬於試驗中應試者，應繳納大統領所定應試手續費。

②試驗應試願書提出之後，雖有實際於試驗中未應試之情況，不予返還應試手續費。

第 21 條（罰則適用時之公務員擬制）委員會之委員或試驗委員中非屬公務員之委員，依第 8 條第 4 項被指定為法曹倫理試驗實施機關之外部機關之任職員中非屬公務員者，其因業務相關而適用「刑法」第 127 條及第 129 條至 132 條止之規定時，視同公務員。

附則 <第 9747 號, 2009.5.28>

第 1 條（施行日）本法自公布後經過 3 個月之日起施行。但，附則第 4 條及附則第 6 條自公布之日起施行；附則第 2 條自 2017 年 12 月 31 日起施行。

第 2 條（其他法律之廢止）司法試驗法廢止之。

第 3 條（辯護士試驗之實施有關特例）依據本法之最初之辯護士試驗，不拘於第 4 條及附則第 1 條，於 2012 年實施。

第 4 條（與司法試驗之並行實施）①本法所定之試驗與別途之「司法試驗法」所定之司法試驗，均於 2017 年以前實施之。但，於 2017 年，係以 2016 年實施之第 1 次試驗合格者中，2016 年第 3 次試驗結束時未合格者為對象，實施第 2 次試驗及第 3 次試驗。

②不拘於「司法試驗法」第 5 條，在法學專門大學院之碩士學位課程中在學或休學中之人，及在法學專門大學院中取得碩士學位之人，不得於司法試驗中應試。

③不拘於第 2 項，在法學專門大學院之碩士學位課程中在學或休學中之人，以於本法施行日所屬年度中實施之

司法試驗第 1 次試驗合格，或於施行以前年度實施之司法試驗第 1 次試驗或第 2 次試驗合格之情況為限，在「司法試驗法」第 7 條第 2 項及第 10 條所定之一部試驗免除之回次以前，得於司法試驗(以在其免除次數之次一段階試驗中應試之情況為限)中應試。於此情況，於適用第 7 條第 1 項時，其入學以後所應試之司法試驗，包含於本法所定視同已於試驗中應試之應試回數。

第 5 條（對於不正應試者之措置）依第 17 條第 1 項應試資格予以停止之人，於其停止期間中，不得於「司法試驗法」所定之司法試驗中應試；依「司法試驗法」第 17 條第 1 項應試資格予以停止之人，於其停止期間中，不得於本法所定之試驗中應試。

第 6 條（司法試驗管理委員之有關經過措置）「司法試驗法」第 14 條所定之司法試驗管理委員會，為準備本法所定之試驗，得進行事前之措置。於此情況，司法試驗管理委員會所為事前措置，視同本法所定之辯護士試驗管理委員會之構成，並同時視同辯護士試驗管理委員會所作為之事。

辯護士試驗法施行令

[制定 2009.8.28 大統領令第 21706 號]

第 1 條 (目的) 本令以「辯護士試驗法」中所委任事項及其施行之必要事項加以規定，為其目的。

第 2 條 (試驗之公告) ①法務部長官遇有擬實施「辯護士試驗法」(以下稱「法」)所定之辯護士試驗(以下稱「試驗」)之情況，應將其試驗日期、試驗場所、試驗方法、試驗科目、應試資格、出願手續、合格者發表之日期及方法等，於每年試驗實施直前年度之 12 月 31 日以前，在官報與 Internet Homepage 或日刊紙等，公告之。

②法務部長官於依第 1 項公告後，遇有擬實施法第 8 條第 1 項所定試驗之情況，應將其其日時、場所及試驗應試者必要之準備事項等，至遲於試驗日 10 日前，在官報與 Internet Homepage 或日刊紙等，公告之。但，遇因不可避之事由，而有公告內容變更之情況時，至遲應於試驗日 5 日前，將其變更事項在官報與 Internet Homepage 或日刊紙，公告之。

③於法務部長官依照法第 8 條第 4 項指定施行法曹倫理試驗之外部機關之情況，該機關應於每年試驗實施直前年度之 12 月 31 日以前，以與第 1 項相同之方法，將法曹倫理試驗實施計畫公告之。

第 3 條 (應試資格) ①依照法第 5 條第 1 項但書，於取得「法學專門大學院設置·運營有關法律」所定法學專門大學院(以下稱「法學專門大學院」)之碩士學位以前，擬於法第 8 條第 1 項之法曹倫理試驗中應試之人，應先履修「法學專門大學院設置·運營有關法律施行令」第 13 條第 1 項第 1 款之法曹倫理科目。

②法第 5 條第 2 項所定之應試資格疏明方法，依法學專門大學院之首長所發給之證明學位取得事實之書面。但，法曹倫理試驗應試資格之疏明方法，得以法學專門大學院之首長所發給之法曹倫理科目學分取得證明書取代之。

③擬於試驗中應試之人，應於出願期間內，將第 2 項之應試資格疏明書類 1 份，向法務部長官提出之。但，於法務部長官依照法第 8 條第 4 項指定施行法曹倫理試驗之外部機關之情況，法曹倫理試驗之應試資格疏明書類，應依該機關所定方法提出之。

第 4 條 (法曹倫理試驗施行機關之指定) ①於法務部長官依照法第 8 條第 4 項指定施行法曹倫理試驗之外部機關之情況，在符合以下各款之一之機關中，指定法曹倫理試驗施行所必要之組織與人力已齊備之機關。

1. 依照「辯護士法」第 78 條第 1 項設立之大韓辯護士協會
2. 依照「政府出捐研究機關等設置·運營及育成有關法律」第 8 條設立之政府出捐研究機關
3. 以法學專門大學院或法學專門大學院所屬大學之首長為構成員，依「民法」第 32 條及「公益法人之設立·運營有關法律」第 4 條設立之法人
4. 基於法曹倫理試驗施行之目的，依「民法」第 32 條及「公益法人之設立·運營有關法律」第 4 條設立之法人

②於法務部長官依照法第 8 條第 4 項指定施行法曹倫理試驗之外部機關之情況，得指使指定對象之機關提出組織及人力現況、法曹倫理試驗實施計畫等。

③於法務部長官依照法第 8 條第 4 項指定施行法曹倫理試驗之外部機關之情況，應公告該項事實。

第 5 條 (法曹倫理試驗之施行) ①依照法第 8 條第 4 項作為法曹倫理試驗施行之外部機關而被指定之機關(以下稱「指定機關」)，每年應施行法曹倫理試驗 1 回以上。

②擬於法曹倫理試驗中應試之人，應將法務部長官所定應試手續費，依照指定機關所定方法納付之。

第 6 條 (法曹倫理試驗施行機關之指定取消) ①法務部長官於指定機關符合以下各款之一之情況，得取消其指定。但，於符合第 1 項之情況，應取消其指定。

1. 以虛偽或其他不正之方法而獲得指定之情況
2. 無正當之事由，未遂行法曹倫理試驗之施行業務之情況
3. 未備齊法曹倫理試驗之施行所必要之組織及人力之情況

②法務部長官為確認第 1 項所定之指定取消事由存在與否，於必要之情況，得對於指定機關命令就其業務有關事項進行報告，或提出資料，或為其他必要之命令；並得指使所屬公務員，就指定機關之出入帳簿、書類等，進行調查或檢查。

③法務部長官於依第 1 項將指定機關之指定取消時，應無所遲滯將該事實公告之。

④依第 1 項被取消指定之指定機關，自指定被取消之日起 1 個月內，應將其所保管中之與法曹倫理試驗相關之全部資料，向法務部長官提出之，或向法務部長官指定之機關引繼之。

第 7 條（論述型筆記試驗選擇科目）①法第 9 條第 2 項所定專門的法律領域有關科目之種類，如別表 1。

②法第 9 條第 3 項所定之出題範圍決定後實施之試驗科目及其出題範圍，如別表 2。

第 8 條（試驗之合格決定）①試驗之合格，限以與筆記試驗之試驗期間同時或在此以前實施之法曹倫理試驗合格之人為對象，決定之。

②法第 10 條第 4 項所定之選擇型筆記試驗與論述型筆記試驗二者間之換算比率，如別表 3。

③於法第 10 條第 4 項所定之選擇型及論述型筆記試驗內，各科目別配分比率、各科目別筆記試驗之合格最低分數、法曹倫理試驗之合格必要之分數，如別表 4。

④論述型筆記試驗與專門的法學領域有關之分數調整方法，及依分數調整之合格最低分數之決定方法等成績細部算出方法，或其他之合格決定所必要事項，以法務部令定之。

第 9 條（合格證明書之發給）①法務部長官依照在試驗中合格者之申請，發給合格證明書。

②擬接受合格證明書發給之人，應將手續費以相當於法務部所定金額之收入印紙，添附於申請書上。但，如係擬以電子文書形式接受合格證明書之情況，免予添附。

第 10 條（試驗委員）法第 13 條第 2 項所定試驗委員之人數，為每科目 3 人以上。但，如係法第 8 條第 4 項所定之由指定機關施行法曹倫理試驗之情況，為擔當試驗之出題及計分而辦理之試驗委員委囑及其人數，得由指定機關定之。

第 11 條（辯護士試驗管理委員會之構成）法第 14 條第 3 項第 2 款第戊目所定之辯護士試驗管理委員會委員，就符合以下各款之人員，由法務部長官各委囑 1 人。

1. 3 級以上公務人員，從事法學專門大學院關連業務之人員
2. 其他具有國家公認資格試驗，或辯護士試驗相關經驗與德望之人員

第 12 條（不正行爲）法第 17 條第 1 項第 1 款中所稱「大統領令所定之不正行爲」，如以下各款。

1. 以代理試驗為依賴，或以代理方式於試驗中應試之行爲
2. 窺看其他受驗生之答案紙，或本人之答案紙被看之行爲
3. 利用通信機器或其他信號等，關於該試驗內容，與其他人員之間為意思疏通之行爲
4. 持有或利用不正資料之行爲
5. 其他以不正手段，對本人或其他人員之試驗結果造成影響之行爲
6. 其他對試驗之公正管理造成影響之行爲中，違反法務部令所定之應試者遵守事項之行爲

第 13 條（應試手續費）①擬於試驗中應試之人員，應依法務部所定金額納付應試手續費。

②應試手續費得採在應試願書中貼附收入印紙，或利用情報電信網等以電子貨幣、電子銷帳等方法納付之。

第 14 條（對於辯護士試驗管理委員會之委員等之酬勞支給）對於辯護士試驗管理委員會之委員、試驗委員及試驗管理官等，於預算之範圍內，支給酬勞。

第 15 條（應試有關之特別措置）法務部長官對於障礙人(指「障礙人差別禁止及權利救濟等有關法律」所定之障礙人)與因事故等原因，依通常之試驗時間、試驗方法，應試有顯著困難之人員，得就試驗時間、試驗方法等，為特別之措置。

附則 <第 21706 號, 2009.8.28>

本令自 2009 年 8 月 29 日起施行。

[別表 1]

專門的法律領域有關科目之種類(第 7 條第 1 項關連)

選擇科目	國際法、國際貿易法、勞動法、租稅法、知的財產權法、經濟法、環境法
------	----------------------------------

[別表 2]

出題範圍決定後實施之試驗科目及其出題範圍(第 7 條第 2 項關連)

科目	出題範圍
國際法	包含國際經濟法等。
國際貿易法	指「國際私法」與「國際物品買賣契約有關 U.N.協約」。
勞動法	包含社會保障法中之「產業災害補償保險法」。
租稅法	指「國稅基本法」、「所得稅法」、「法人稅法」及「附加價值稅法」。
知的財產權法	指「特許法」、「實用新案法」、「Design 保護法」、「商標法」及「著作權法」。
經濟法	指「消費者基本法」、「電子商貿易等之消費者保護有關法律」、「獨占規制及公正交易有關法律」、「約款規制有關法律」、「分期付款交易有關法律」及「訪問販賣等有關法律」。
環境法	指「環境政策基本法」、「環境影響評價法」、「大氣環境保全法」、「水質及水生生態系保全有關法律」、「廢棄物管理法」、「土壤環境保全法」、「自然環境保全法」、「騒音・震動規制法」及「環境紛爭調停法」。

[別表 3]

選擇型筆記試驗與論述型筆記試驗二者間換算比率(第 8 條第 2 項關連)

論述型筆記試驗每分按選擇型筆記試驗每分之 300 percent 換算之；選擇型筆試驗之分數，與論述型筆記試驗之分數換算後之分數，為試驗之總得分。

[別表 4]

試驗之合格決定有關基準(第 8 條第 3 項關連)

1. 各科目別配分比率

民事法科目之滿分為公法、刑事法科目滿分之 175 percent；選擇科目之滿分為公法、刑事法科目滿分之 40 percent。

2. 各科目別筆記試驗之合格最低分數

各科目別筆記試驗之合格最低分數為各科目滿分之 40 percent。

3. 法曹倫理試驗合格之必要分數

法曹倫理試驗合格之必要分數，為滿分之 70 percent。

辯護士試驗法施行規則(草案)

第 1 條 (目的) 本規則以「辯護士試驗法」及同法施行令所委任事項，暨其施行必要事項予以規定，為其目的。

第 2 條 (應試願書之提出) ①擬於辯護士試驗(以下稱「試驗」)中應試者(以下稱「應試者」)應將法務部長官所定之應試願書，向法務部長官提出之。

②依第 1 項規定提出之書類，不予返還。

第 3 條 (應試願書之接受) 法務部長官於接受應試願書之時，對應試者應交付應試表。但，對於未依法務部長官所定方法提出之應試願書，得拒絕接受。

第 4 條 (應試願書記載事項之變更) 應試願書獲接受後，辯護士試驗法(以下稱「法」)第 9 條第 1 項第 4 款規定之「專門的法律領域有關科目」等應試願書之記載事項，不得予以變更。

第 5 條 (論述型筆記試驗成績之細部算出方法) 於有論述型筆記試驗時，對於各試驗委員計分後之分數，以該當試驗委員計分後之全答案紙(以下稱「試驗委員別答案紙」)分數之標準偏差與平均分算出後，按以下之算式調整後之分數，為各應試者之得分。

試驗委員計分後之分數

— 試驗委員別答案紙分數之平均分

----- x 5 + 全科目之全答案紙分數之平均分

試驗委員別答案紙分數之標準偏差

於此情況，試驗委員別答案紙分數之標準偏差，按照以下算式算出之。

 $\sqrt{\text{試驗委員別答案紙分數} - \text{試驗委員別答案紙分數之平均分}}^2$ 之總合計

試驗委員別答案紙數量 - 1

第 6 條 (專門的法律領域有關科目成績之細部算出方法) 於有專門職法律領域有關科目時，對於依第 5 條之方法算出之應試者分數，將應試者所選擇科目之標準偏差與平均算出後，按照第 1 款之算式調整後之分數之 40 percent，為各應試者之最終得分。於此情況，應試者選擇分數之標準偏差，按照第 2 款之算式算出之。

1.

應試者之分數 — 應試者選擇科目之平均分

----- x 10 + 50

應試者選擇科目分數之標準偏差

2.

$\sqrt{\frac{\text{應試者選擇科目之分數} - \text{應試者選擇科目之平均分}}{\text{應試者選擇科目之人員數} - 1}}$ 之總合計

應試者選擇科目之人員數 - 1

第 7 條（分數調整後合格最低分數之決定方法）①辯護士試驗法施行令(以下稱「令」)別表 4 之 2.「各科目別筆記試驗之合格最低分數」中，公法、民事法、刑事法科目筆記試驗之合格最低分數，為「滿分之 40 percent」，係指各科目選擇型筆記試驗之科目分數，以試驗委員計分後之分數算出後，加上論述型筆記試驗之科目分數後之分數，以及選擇型筆記試驗之科目分數，加上按照第 5 條方法算出之論述型筆記試驗之科目分數後之分數，二者中任一達到各科目滿分之 40 percent 以上之情形。

②令別表 4 之 2 所稱「各科目別筆記試驗之合格最低分數」中，專門的法律領域有關科目筆記試驗之合格最低分數為「滿分之 40 percent」，係指依試驗委員計分後之分數所算出之論述型筆記試驗之科目分數，以及依照第 6 條方法算出之論述型筆記試驗之科目分數，二者中任一達到滿分 40 percent 以上之情形。

第 8 條（合格證明書發給及應試手續費）①令第 9 條第 2 項中所稱「法務部令所定金額」，係指合格證明書 1 份 200 圓。

②令第 5 條第 2 項中所稱「法務部長官所定應試手續費」，係指 5 萬圓。

③令第 13 條第 1 項中所稱「法務部令所定金額」，係指 20 萬圓。

第 9 條（成績公開）①擬依法第 18 條第 1 項之規定請求成績公開者，應疏明應試者本人身分；於其他人員代理本人請求之情況，應提出本人之委任狀與身分證等足以疏明代理權之書類。

②第 1 項規定之成績公開，得利用電話或情報通信網為之。

附則

本規則自公布之日起施行。

附錄 4 大韓辯護士協會書面答覆資料

대만 고선부 변협 예방
답변서

일 시 : 2009. 11. 10.(화) 15:00~16:00

장 소 : 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

참석자 : 김평우 협 회 장

임치용 기획이사

유지연 사무차장



대한변호사협회 국제과

Q1.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 취득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각 과정의 주관기관이 있습니까?

A1. 로스쿨 도입 전 구 제도에 따르면, 사법시험 합격자는 대법원 산하의 법조인 양성기관인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를 받게 됩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판사, 검사, 변호사를 본인이 지원하게 되는데, 판사, 검사로 합격한 대상자를 판사, 검사에 임용됩니다.

구 제도 하의 사법시험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다 2002년부터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사법연수원은 대법원이 주관합니다.

참고로,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및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변호사 자격 취득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29조에 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검사 자격 취득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42조 2항에 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판사 자격 취득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2. 사법시험은 합격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만약 정원이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정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2, 사법시험법 제4조는 선발 예정인원에 대하여,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변호사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Q3.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채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9년 3월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한 로스쿨의 현재 교학 과정 및 수업 현황은 어떠합니까? 이후 로스쿨이 현재의 사법연수원의 기능을 대체할 예정입니까?

A3. 2004년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건의 된 후, 2005년 발족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로스쿨제도의 법령이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현행 법조인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윤리(법조윤리),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판결문, 소장(소장),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반드시 개설해야 하고, 이에 덧붙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하는 전문성에 따라 특성별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학과정을 일률적으로 언급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성별 커리큘럼을 2~3년간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졸업함으로써, 기존 사법연수원 기능을 대체합니다.

Q4. 새로운 사법시험 제도의 추진 과정은? 또 그 주요내용과 특징은 무엇입니까?

A4.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9.3. 법학전문대학교가 개원되어 201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가 배출됨에 따라 현행 사법시험을 대체할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국의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변호사시험법안을 입안하였고, 2009.4.22. 의결하였습니다.

새로운 변호사시험은 2012년부터 실시하고, 관장·실시 기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정하고 있고,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자 격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다만 법조윤리 시험에 한하여 석사학위 취득 전이라도 응시가 가능함.
- ▲ 응시 기간 및 횟수 제한 :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로 제한
-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 변호사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구성함.
- ▲ 사법시험과 병행실시 : 사법시험법은 2017년까지 존치시키되, 2016년 1차시험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2017년에는 2,3차 시험을 시행함.

Q5. 2007년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하여는 어떻게 규정하였습니까? 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A5. (첨부 1 참조)

Q6. 사법시험은 1년에 몇 번 시행합니까? 응시자의 자격요건, 시험 과목, 시험 일수, 시험 일정, 시험 장소, 시험 방식, 시험 유형, 채점 방식은? 응시료의 유무는?

A6. 사법시험법에 따르면,

- ▲ 사법시험은 1년에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제3조 1항),
- ▲ 응시자의 자격 요건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 과목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제5조 1항)이고,
- ▲ 과목은 제1차시험의 경우 헌법, 민법, 형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으로 하며, 이 경우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제9조 1항),
- ▲ 시험 일수, 일정, 장소, 방식, 유형 등은 사법시험법 시행령으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되어있으며(제3조 2항), 공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사법시험법시행령 제2조),
- ▲ 응시수수료는 법무부령이 정한 금액을 납부하되, 응시수수료 납부 대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이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고(사법시험법시행령 제8조, 2009년까지 3만원에서 운용하다 법령개정으로 2010년 5만원으로 인상함) 있음.

Q7. 사법시험은 시험 실시 공고가 발표되고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며 그 과정은 어떠합니까?

A7. 2009년의 경우 2. 2. 시험 실시 공고 후 11. 27. 최종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시험은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고, 제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하며,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실시합니다(사법시험법 제8조).

Q8. 사법시험의 응시자와 합격자는 각각 몇 명입니까? 최근 그 수의 증감추세는?

A8. 2008년의 경우 17,829명이 지원하여 1,005명이 합격하였고, 합격자는 최근 10년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2. 최근 10년간 사법시험합격자(법무부, 2008)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Q9. 사법시험 합격자는 어떻게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누어집니까?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원 혹은 법무부처가 선발합니까?

A9. 사법시험 합격자는 대법원 산하의 법조인 양성기관인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를 받게 됩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판사, 검사, 변호사를 본인이 지원하게 되는데, 수료생의 성적 및 인성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법무부가 판사, 검사를 임용합니다.

Q10. 매년 사법시험을 통한 판사, 검사, 변호사 수는 어떻게 됩니까?

A10. 2008년 수료생의 경우 예비판사, 검사, 변호사로 각각 92명, 88명, 612명이 임용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3.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판·검사 임용 및 변호사 진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Q11. 사법시험을 보지 않고, 곧바로 판사, 검사, 혹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까?

A11. 사법시험을 치루지 아니하고 곧바로 판·검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Q12. 외국인이 한국의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까? 한국인 중 외국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사법고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외국 학력은 어떻게 국내학력과 비교합니까?

A12. 외국인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한이 없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2년간 교육을 받은 후 수료하여야 판사, 검사 및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사법연수생의등록및임명상신에 관한내규' 조항을 보면 사법연수생 임명 제외 대상 가능자 중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대법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Q13. 판사, 검사, 변호사도 재직교육을 받으니까?

A13. 판사, 검사의 재직 및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대법원,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경우 2007년 변호사법의 개정으로 1년에 8시간(윤리교육 1시간 포함)의 의무연수를 받도록 정해졌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14. 사법시험 시험 과목 문제는 그 범위나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또 참고 서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발표합니까?

A14. 제1차시험의 선택과목에 한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실시 공고를 통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참고서적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15. 사법시험을 담당하는 고시위원회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구성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또 대우는 어떻습니까?

A15. 사법시험법 제14조부터 제16조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는데, 법무부차관, 판사 2인, 검사 1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3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변호사나 법

학교수가 아닌 자로서 사법시험에 관한 경험과 터망이 있는 자 2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제14조 3항). 구체적인 대우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인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16, 17 사법고시 문제 출제 및 보안유지 관련 질문

Q18. 사법시험은 시험이 끝난 후 문제와 답안을 발표합니까? 시험 응시자가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A18. 소관기관인 법무부는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험 응시자 본인이 작성한 답안을 공개하고 있으며, 정답에 대한 이의 역시 홈페이지(<http://www.moj.go.kr/barexam/>)를 통하여 접수받고 있습니다.

Q19. 신체장애인이 사법고시에 응시할 때 혜택이 있습니까? 신체장애인의 합격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A19. 청각장애 2·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학(영어) 시험의 듣기부분을 제외하고 일정 점수 기준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타 신체장애인이 장애의 종류 등을 법무부에 통보하여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응시자에 한하여 시험문제의 점자 인쇄 등 필요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장애인의 합격 비율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0. 미래발전 방향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 한미 FTA 협상 결과 법률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시기와 내용으로 개방될 예정인가

답)

- 우선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로펌이 국내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고, 미국 변호사가 미국법과 국제공법에 관해 외국법자문사로서 법률자문 영업을 하는 것이 허용됨
- 다음으로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미국로펌의 국내 지사와 국내 로펌 사이에 공동사무처리 및 수익분배가 가능한 「업무제휴」를 허용해 주기로 하였음
- 그리고 3단계는 협정 발효 후 5년 내 시행되는데, 미국로펌과 국내 로펌 사이에 조인트벤처, 즉 합작사업체 설립이 허용되고, 이 합작사업체가 일정한 요건 아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임

○ 법률서비스 단계적 개방 계획

1. 제1단계 (협정 발효와 동시에 바로 시행)

- 미국 변호사에게 미국법, 미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자문(Foreign Legal Consultancy) 허용
- 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외국법자문사무소) 개설 허용
 - 한미FTA 협정 발효 전에 외국법자문사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외국법자문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현재 입법예고 준비 중)
 - 외국법자문사법안에 관하여 미측도 내용에 이의 없이 도입을 환영

2. 제2단계 (협정 발효 후 2년 내 시행)

- 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인 '외국법자문사무소'와 국내 로펌간에 업무 제휴 허용
-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자문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한 공동 수입, 사무처리 및 수익분배를 허용할 예정

3. 제3단계 (협정 발효 후 5년 내 시행)

-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간 조인트벤처 동업사업체 허용
- 일정한 요건 아래 위 동업사업체의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다만, 서구 선진국 사례 및 국제동향을 반영, 구체적 법정요건·외국계 경영지분 제한 권한을 우리 관리감독 당국에 유보함으로써 법조윤리 등 공공성 확보 및 시장질서 파괴적 M&A 예방 등의 보완장치 도입

문. 한미FTA 타결로 국내 법률시장에 대형 미국 로펌들이 들어오면 국내 토종 로펌들의 심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답)

- 전면 개방이 실현되면 미국계 대형 공룡 로펌들이 국내에 들어와 국내 법률시장을 장악하게 되어 소규모 국내 토종로펌들의 위기를 불러와 결국 고사(枯死)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음

06. 5. 「10대 로펌들의 전면개방 불가 대정부 건의」 등

-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 상당한 기간을 적응기간으로 확보한 단계적 개방안을 관철시켰고, 향후 시장질서에 따라서는 합작사업체 내 외국계지분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였으므로 협상 초기에 제기되던 극심한 피해 우려들은 대폭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음
- 앞으로 확보된 적응기간 동안 국내 업계는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법무부도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문. 중·장기적으로 외국 대형 로펌들이 국내에 적극 진출해 오면 국내 업계의 매출 감소 등 일부 피해 발생이 불가피한데, 그 대책은

답)

- 세계 법률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영미계 대형 로펌들이 진출을 확대하면 우리 시장에서도 토종 로펌들이 몰락하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기존 10대 로펌 중 토종 로펌 1-2개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멸하다시피 한 독일 사례가 그 예로 거론됨
- 발효 이전 비준 단계의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번 협상 결과 단계적 개방을 통하여 약 6년 이상의 적응기간을 확보한 것이므로 국내 업계로서는 이를 경쟁력 강화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 각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 특히 대형화·전문화 조직 변경시에는 청산과세 유예 등 혜택을 관계부처에 건의 중이고, 향후 업계 건의를 두루 감안하여 다각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 법률시장 개방이 제3단계에 이르더라도 개방 정도가 부분적·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 법률시장 확대 개방에 관하여는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반면에 더 넓고 빠르게 법률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재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대두됨
- 그런데, 제3단계 수준까지 개방이 진행되면 외국로펌이 국내로펌과 조인트 벤처 등 동업·합작이 허용되면서 위 합작사업체에 의한 국내 변호사 고용까지 허용됨
- 이는 대다수 서구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는 높은 개방 수준으로 3단계에 이르면 세계적인 법률시장 개방국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임

최근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2008년 11월 25일 기준)

연도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제3차시험	
	응시자	합격자	합격점	응시자	합격자	합격점	응시자	합격자
2008	17,829	2,511	252.02 (72.0057)	4,877	1,005	353.74 (47.1653)	1,015	1,005
2007	18,114	2,808	73.14	5,024	1,008	355.00 (47.3333)	1,022	1,011
2006	17,290	2,665	79.57	5,007	1,002	350.64 (50.0914)	1,002	994
2005	17,642	2,884	86.00	5,038	1,001	341.22 (48.7457)	1,001	1,001
2004	15,446	2,692	83.00	5,028	1,009	47.36	1,009	1,009
2003	24,491	2,598	82.00	5,012	905	42.64	906	906
2002	24,707	2,640	83.50	4,764	999	49.79	999	998
2001	22,365	2,406	87.96	4,578	991	50.57	991	991
2000	16,218	1,985	84.44	3,762	801	53.28	801	801
1999	17,301	2,127	81.75	3,554	709	48.50	709	709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판·검사 임용 및 변호사 진출 현황

배출연도	임명인원	수료인원	판 사 (예비판사)	검 사	변호사 등
1999	592	590	100	86	265
2000	694	678	109	89	327
2001	717	712	114	89	373
2002	800	798	109	82	437
2003	976	966	113	77	630
2004	972	957	96	85	629
2005	887	895	91	90	506
2006	998	975	89	88	618
2007	977	974	95	76	306
2008	971	980	92	88	612

※ 법무관 임용은 위 표에서 제외하였음.

※ 출처 :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http://jrti.scourt.go.kr/intro/situation.asp?flag=6>

附錄 5 韓國法務部書面答覆資料

대만 考選部 방문단 관련

質疑·答辯資料

2009. 11. 11.



법조인력과

목 차

- 문) 검사, 판사, 변호사 자격 취득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각 과정의 주관기관이
있습니까? 1
- 문) 사법시험은 합격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만약 정원이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정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 문)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채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9년 3월 처음
으로 신입생을 모집한 로스쿨의 현재 교학 과정 및 수업현황은 어떠합니까?
이후 로스쿨이 현재의 사법연수원의 기능을 대체할 예정입니까? 3
- 문) 새로운 사법시험 제도의 추진과정은? 또 그 주요내용과 특징은 무엇입니까? · 4
- 문) 2007년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였습니까? 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5
- 문) 사법시험은 1년에 몇 번 시행합니까? 응시자의 자격요건, 시험과목, 시험일수,
시험일정, 시험장소, 시험방식, 시험유형, 채점방식은? 응시료 유무는? 6
- 문) 사법시험은 시험실시공고가 발표되고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며 그 과정은 어떠합니까? 7
- 문) 사법시험의 응시자와 합격자는 각각 몇 명입니까? 최근 그 수의 증감추세는? ... 8
- 문) 사법시험 합격자는 어떻게 검사, 판사, 변호사로 나누어집니까? 자신의

- 선택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원 혹은 법무부처가 선발합니까? 9
- 문) 매년 사법시험을 통한 검사, 판사, 변호사 수는 어떻게 됩니까? 10
- 문) 사법시험을 보지 않고, 곧바로 검사, 판사 혹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까? 11
- 문) 외국인이 한국의 검사, 판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까? 한국인 중 외국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외국 학력은 어떻게 국내학력과 비교합니까? 12
- 문) 검사, 판사, 변호사도 재직교육을 받습니까? 13
- 문) 사법시험 과목문제는 그 범위나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또 참고서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발표합니까? 14
- 문) 사법시험을 담당하는 고시위원회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구성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또 대우는 어떻습니까? 15
- 문) 사법시험 문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시위원이 시험 전에 문제를 출제합니까? 시험문제 출제팀을 구성합니까? 16
- 문) 사법시험은 컴퓨터에 시험문제를 저장합니까? 어떻게 시험문제의 보안을 유지합니까? 17
- 문) 사법시험은 시험이 끝난 후 문제와 답안을 발표합니까? 시험응시자가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18
문) 신체장애인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때 혜택이 있습니까? 신체장애자의 합격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19
문) 미래발전 방향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20
문) 관련 법규와 통계자료를 요청합니다.	21

문) 검사, 판사, 변호사 자격 취득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각 과정의 주관기관이 있습니까?

답)

- 종래 한국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크게 법학교육, 선발 시험 그리고 연수제도의 세 단계로 구성됨
 - 법학교육은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법조인 선발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법시험제도를 통하여 실시되며, 선발된 자들에 대한 연수는 사법연수원에서 담당
 - 사법시험 합격자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법률실무 수습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개인의 지원에 따라 검사, 판사 별도 선발
- ※ 검사 선발은 법무부, 판사 선발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서 담당

문) 사법시험은 합격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만약 정원이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정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현재 사법시험은 당해 시험시행 이전 사전공고를 통하여 선발예정인원을 공지하고 그에 따라 합격자 결정을 하는 정원제를 채택하고 있음
 -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시행시마다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함
 - 절대점수제를 채택할 경우 매해 법조인 수급 변동에 따른 법조인 수급부족 또는 초과사태 우려, 기타 사법연수원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원제를 채택함
- ※ 사법시험 관리위원회는 2017년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사법시험 최종선발인원을 2009년 1,000명,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으로 단계적 감축 결정

문)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채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2009년 3월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한
로스쿨의 현재 교학 과정 및 수업 현황은 어떠
합니까? 이후 로스쿨이 현재의 사법연수원의
기능을 대체할 예정입니까?

답)

- 사법시험 중심의 현행 법학교육의 문제점 극복 및
고도의 전문지식과 국제적 감각을 두루 갖춘 우수
법조인력 양성을 위해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
- 로스쿨의 최소 수업이수학기는 6학기로서, 법조인으
로서의 기본지식, 전문지식 및 법조윤리관을 함양
하기 위한 과목을 위주로 수업 구성
- 로스쿨은 기존의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 및 사법
연수원에서의 실무교육을 통합한 법조인으로서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기존 사법연수원의
기능을 어느 정도 대체하고 있으나, 별도의 실무수습
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논의 중임

문) 새로운 사법고시 제도의 추진과정은? 또 그
주요내용과 특징은 무엇입니까?

답)

- 로스쿨제도 도입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로스쿨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변호사시험제도 마련을 위하여 변호사시험법안을 입안하였으며, 위 법안은 2009. 4. 국회를 통과함
- 위 법은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내용으로 함
- 변호사시험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존치되며,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의 사법시험 응시는 금지됨

문) 2007년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였습니까? 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답)

○ 한미FTA를 통해 타결된 단계적 개방 원칙

- 1단계 : 한미FTA 협정 발효와 동시에 기존 DDA 양허안 수준의 개방 혜택을 미국 변호사와 로펌에게 부여(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 허용)
- 2단계 :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와 국내 로펌 간 공동수임·작업 및 수익분배 가능한 업무제휴허용
- 3단계 :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미국 로펌에게 국내 로펌과 조인트 벤처, 즉 합작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국내변호사 고용 허용

○ 미국 로펌의 국내진출로 인하여 법률서비스의 선진화 및 국내 로펌의 경쟁력 향상 예상

문) 사법시험은 1년에 몇 번 시행합니까? 응시자의 자격요건, 시험과목, 시험일수, 시험일정, 시험장소, 시험방식, 시험유형, 채점방식은? 응시료 유무는?

답)

○ 사법시험은 현행 「사법시험법」상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통상 1년에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구분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제3차시험
응시 자격	법학과목 35학점이상 이수 및 공인영어시험 일정점수 이상 취득		제1차시험 합격자	제2차시험 합격자
시험 과목	필수 과목	헌법, 민법, 형법		집단면접 일반면접 심층면접
	선택 과목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 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중 1과목		
시험 일수	1일		4일	1일
시험 일정	2월 하순경		6월 하순경	11월 중순경
시험 장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국 6개 도시 중·고등학교		서울 지역내 대학교	사법연수원
시험 방식	선택형시험		논술형시험	구술시험
시험 유형	법률지식측정형, 사례형 등		사례형, 논문형	시험위원 재량
채점 방식	OMR 카드 판독방식		시험위원 수작업채점	상중하 3단계채점
응시료	3만원(현재 5만원으로 인상 추진중)			

문) 사법시험은 시험실시공고가 발표되고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며 그 과정은 어떠합니까?

답)

- 사법시험 실시공고는 통상 해당년도 1월초에 공고되며, 합격자발표는 12월 중에 발표됨
- 사법시험 연간시행일정
 - 1월 초순 : 해당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 1월 중순 : 사법시험 응시원서 접수
 - 2월 하순 :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
 - 4월 중순 :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 6월 하순 :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
 - 10월 중순 :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 11월 중순 : 사법시험 제3차시험 실시
 - 12월 초순 :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문) 사법시험의 응시자와 합격자는 각각 몇 명입니까?
 최근 그 수의 증감추세는?

답)

○ 최근 응시자 및 합격자 수 (2008년 11월 25일 기준)

연도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제3차시험	
	응시자	합격자	합격점	응시자	합격자	합격점	응시자	합격자
2008	17,829	2,511	252.02 (72.0057)	4,877	1,005	353.74 (47.1653)	1,015	1,005
2007	18,114	2,808	73.14	5,024	1,008	355.00 (47.3333)	1,022	1,011
2006	17,290	2,665	79.57	5,007	1,002	350.64 (50.0914)	1,002	994
2005	17,642	2,884	86.00	5,038	1,001	341.22 (48.7457)	1,001	1,001
2004	15,446	2,692	83.00	5,028	1,009	47.36	1,009	1,009
2003	24,491	2,598	82.00	5,012	905	42.64	906	906
2002	24,707	2,640	83.50	4,764	999	49.79	999	998
2001	22,365	2,406	87.96	4,578	991	50.57	991	991
2000	16,218	1,985	84.44	3,762	801	53.28	801	801
1999	17,301	2,127	81.75	3,554	709	48.50	709	709

문) 사법시험 합격자는 어떻게 검사, 판사, 변호사로 나누어집니까?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원 혹은 법무부처가 선발합니까?

답)

- 사법시험 합격자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법률실무수습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검사, 판사를 지원하여 별도 선발과정을 거치게 됨
- 참고로, 검사 선발은 법무부에서, 판사 선발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서 담당

문) 매년 사법시험을 통한 검사, 판사, 변호사 수는 어떻게 됩니까?

답)

- 법조인 수급증가에 따라 현재 사법시험을 통해 약 1,000명이 합격하며, 그 중 약 90여명이 각각 검사, 판사로 진출하며, 나머지 인원은 변호사로 진출함
-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병역미필자의 경우 법무관으로서 3년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이후 검사, 판사, 변호사 직역으로 진출함
- 최근 10년간 사법연수원 수료자 현황(1999~2007년)

	임명인원	수료인원	검사	판사	변호사등	법무관
2007	998	975	88	89	618	180
2006	887	895	90	91	506	170
2005	972	957	85	96	629	147
2004	976	957	77	113	630	146
2003	800	798	82	109	437	170
2002	717	712	89	114	373	136
2001	694	678	89	109	327	153
2000	592	590	86	100	265	139
1999	496	486	73	74	207	132

※ 관련 추가통계는 사법연수원 홈페이지(jrti.scourt.go.kr) 참조

문) 사법시험을 보지 않고, 곧바로 검사, 판사 혹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까?

답)

- 현행 「검찰청법」 및 「법원조직법」상 검사, 판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과정을 마친 자 중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검사, 판사임용이 불가능함
- 현행 「변호사법」상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과정을 마친 자”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자격 취득 역시 불가능함

문) 외국인이 한국의 검사, 판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까? 한국인 중 외국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외국 학력은 어떻게 국내학력과 비교합니까?

답)

- 외국인 역시 한국의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거칠 경우 변호사자격 취득가능함. 다만, 검사, 판사로는 임용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공무원임용령 제4조)
- 사법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다만, 위 법학과목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국내교육기관에서 개설된 과목에 대해서만 인정됨
- 따라서 국내학력자·외국학력자를 불문하고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면 사법시험에 응시가능하며, 외국학력자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음

문) 검사, 판사, 변호사도 재직교육을 받으니까?

답)

- 판사는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에서, 검사는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에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변호사연수원에서 재직 교육을 수시로 실시함

문) 사법시험 과목문제는 그 범위나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또 참고서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발표합니까?

답)

- 사법시험 과목 중 제1차시험 선택과목은 그 범위가 지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제1차 필수과목 및 제2차 과목은 별도 범위 또는 수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일반적으로 해당 과목의 저명 교과서, 기출문제 등을 통해 해당 과목의 공부범위 및 수준을 수험생 스스로 정하여 공부하고 있으며, 별도로 공적인 발표를 하지는 않음

문) 사법시험을 담당하는 고시위원회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구성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또 대우는 어떻습니까?

답)

○ 사법시험 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결정,
합격자 결정 등을 위하여 별도로 「사법시험 관리위
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 동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
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 현 사법시험관리위원회 구성 : 법무부장관(위원장), 법무부차관,
판사 2인, 검사 1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3인, 비영리민간단
체 추천 1인 및 변호사와 법학교수가 아닌 자로서 사법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2인 (총 13인)

문) 사법시험 문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시위원이 시험 전에 문제를 출제합니까? 시험문제 출제팀을 구성합니까?

답)

- 사법시험에서는 사전에 해당 과목 전공교수들에게 문제출제를 의뢰하여 문제은행을 구축함
- 이후 실제 시험문제 출제단계에서 출제위원을 선정하여 출제팀을 구성하며, 위 출제팀에서는 합숙출제를 통해 문제은행에 수록된 문제들 중 일부를 선정, 복합·변형하여 실제 시험문제를 출제함

문) 사법시험은 컴퓨터에 시험문제를 저장합니까?
어떻게 시험문제의 보안을 유지합니까?

답)

- 사법시험 문제는 특정 장소에서 출제위원 및 행정 지원팀이 수일간 합숙출제과정을 거쳐 출제됨
- 합숙출제는 엄중한 보안지침에 따라 내외부간 물건 반출입 및 인적왕래가 통제되고, 내외부간 통신 역시 원천적으로 단절된 상황에서 실시되는 등 시험문제의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

문) 사법시험은 시험이 끝난 후 문제와 답안을 발표합니까? 시험응시자가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

- 시험종료후 제1차, 제2차시험 모두 사법시험 홈페이지 (www.moj.go.kr/barexam)상에 시험문제를 공개함
- 한편 제1차시험의 경우, 시험종료후 가답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특정 기간을 두어 위 가답안에 대한 시험응시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함
- 이의신청 접수완료 이후, 출제위원들로 구성된 답안 확정회의에서 응시자들의 이의사항의 당부를 검토하고 최종 정답을 확정 발표함
- 한편 제2차시험의 경우, 합격자발표 이후 불합격자에 한하여 수험생 본인의 답안 열람의 기회를 제공

문) 신체장애인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때 혜택이 있습니까? 신체장애자의 합격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답)

○ 전맹인, 약시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 원서접수시 장애인등록을 하면 시험응시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편의제공내역

장애유형		편의제공내역
시각장애	전맹인 (교정시력 0.04 이하, 시야 10도 이내)	- 점자 문제지, 컴퓨터 제공 - 시험시간 연장 (1차시험 2배, 2차시험 1.5배)
	약시자 (교정시력 0.04 초과 0.3 미만)	- 문제지 확대 - 시험시간 연장 (1차시험 1.5배, 2차시험 1.33배)
지체장애	손사용에 크게 지장이 있는 자	- 매교시별 시험시간 20분 연장

○ 시험시행 이래 최초로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서 전맹인 응시자 1인이 최종합격함

문) 미래발전 방향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답)

- 현재 로스쿨제도 도입에 따라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될 예정이며, 이를 대체하는 변호사시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시급한 과제임
- 변호사시험은 기존 사법시험의 틀을 벗어나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것이며,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과목별 문제유형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문) 관련 법규와 통계자료를 요청합니다.

답)

○ 관련 법령 (별첨)

- 사법시험 관련 : 사법시험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관련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 사법시험 관련 통계자료 (별첨)

-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통계
- 제5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통계
-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통계

사법시험 · 변호사시험 관련 법령 및 통계자료



2009. 11.

법조인력 과

목 차

- I. 사법시험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II.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III. 변호사시험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 IV.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 · 제2차 · 최종합격자 통계

사법시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사법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법시험실시기관) 사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관장·실시한다.

제3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변호사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5조(응시자격)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결격사유)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06. 3. 24>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시험의 구분) ①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고, 제3차시험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제8조(시험방법) ①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②제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한다.

③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정한다.

1.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사명감 등 윤리의식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제9조(시험과목) ①제1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이 경우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제1차시험의 과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은 당해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다른 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그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시험과목을 신설하거나,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제10조(시험의 일부면제) ①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②당해 시험의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아닌 자로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청한 바에 따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제3차시험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자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최초로 공고되는 회의 시험에 응시원서와 함께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시험의 합격결정) ①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별 취득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에 의한다. 다만, 시험과목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하는 과목의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 제1차시험의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과목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한다.
- ②각 시험의 구분별·과목별 합격최저점수, 과목별 배점기준,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기타 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법무부장관은 제3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험위원) ①시험위원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구분하여 시험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시험위원은 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함에 있어 특수한 학설에 치우침이 없이 주로 일반적인 법학지식에 대한 이해와 그 응용능력을 시험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제14조(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각호별로 1인을 지명한다.
1. 법무부차관, 판사, 검사, 변호사
 2. 법학교수(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변호사나 법학 교수가 아닌 자로서 사법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 ③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무부차관, 판사 2인, 검사 1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3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 및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닌 자로서 사법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차관, 판사, 검사, 법학교수의 직에 있는 자로서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가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채점기준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과목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심의의견에 관한 사항
6.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제1차 시험중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는 과목에 있어서의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시험 면제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소집과 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한 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자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험의 시험점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자
- ②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시험에 응시한 자는 당해 시험의 합격자발표일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자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채점표·답안지 그 밖에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에 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인력의 파견, 문제출제 또는 시험실시장소의 경비(警備)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험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군법무관임용시험)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임용시험은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준하여 실시하되, 선발인원과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칙 <제6436호,2001.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본문·제2항,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7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5조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제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의하여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시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조(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2002년에 실시하는 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에 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중 "司法試驗令"을 "사법시험법"으로 한다.
②군법무관임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司法試驗令"을 "사법시험법"으로 한다.
③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중 "司法試驗令"을 "사법시험법"으로 한다.

부칙 <제7893호, 2006.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법시험법 시행령

-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법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 제2조 (시험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방법·시험과목·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 및 출원절차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06.10.26>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후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장소 및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준비사항 등을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5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6>
- 제3조 (응시자격)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의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 ②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수는 이를 35학점으로 한다.
- ③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사의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6>
- 제4조 (시험과목)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의 과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③ 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제1차시험의 과목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라 함은 영어과목을 말한다.
- ④ 법 제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고,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 ⑤ 법 제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소명방법은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에 의하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6>
- 제5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시험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할로 한다.
- ②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3차시험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 자를 정한다. 이 경우 민법과목의 만점은 다른 과목 만점의 15할로 한다. <개정 2005.11.11>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이하 버림)까지 계산한다.
- ④제3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법 제8조제3항 각호에 규정된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15점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⑤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밖에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 (합격증명서의 발급) ①법무부장관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 ②합격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6.10.26>
- 제7조 (시험위원)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 대체하는 과목을 제외한다)당 3인 이상으로, 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한다.
- 제8조 (응시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응시수수료 납부 대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여 도록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위원회의 위원·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7181호,2001.3.31>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내지 제9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조제3항 내지 제5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3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사법시험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사법시험령 제2조, 제3조, 제7조 내지 제22조 및 별표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 제3조 (어학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과 2003년에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중 어학과목은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어·독어·불어·서반아어·일어·중국어 및 러시아어중 1과목으로 한다.
- 제4조 (출제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과 2003년에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중 지적재산권법의 시험실시범위는 제4조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 제5조 (합격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및 2003년에 실시하는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학과목을 포함하여 매과목 4할 이상 및 전과목 총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어학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한다.
- 제6조 (군법무관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사법시험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제18160호,2003.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제1차시험과목 경제법의 출제범위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포함시키는 부분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사법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사법시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지적재산권법란의 출제범위란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내지 <20>생략

부칙 <제19125호,200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2차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11호,2006.10.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20호,2007.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플 IBT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3의 토플 IBT시험에서 별표 4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어과목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958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사법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경제법란의 출제범위란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⑥내지 <16>생략

제8조 생략

[별표 1]

제1차시험과목(제4조제1항관련)

선택과목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중 1과목
어학과목	영어

[별표 2] <개정 2007.3.27>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제4조제2항관련)

과목	출제범위
제1차 시험과목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 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로한다.

[별표 3] <개정 2007.1.5>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의 종류(제4조제4항관련)

구분	내용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 (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CBT(Computer Based Test)와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토픽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텡스 (TEPS)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별표 4] <개정 2007.1.5>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으로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4조제4항관련)

토플(TOEFL)			토픽(TOEIC)	텡스(TEPS)
PBT	CBT	IBT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법시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9>

제2조 (응시원서의 제출) ①사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9>

1. 응시원서 제출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매
2. 삭제 <2006.10.26>
3. 삭제 <2006.10.26>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류 1부(「사법시험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응시원서의 접수) ①법무부장관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응시원서에 대하여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응시원서의 접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2통 이상의 응시원서를 함께 제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응시원서를 분산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의 발급 등) ①「사법시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4.29, 2006.10.26>

1. 「사법시험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
2. 그밖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는 취득기관, 각 교과목의 명칭, 학점의 수 및 법학과목 학점의 합계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5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의 변경)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선택과목 또는 시험의 면제신청내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응시자준수사항) ①응시자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니고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②응시자는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응시자는 시험시간중에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응시자는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응시자는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의 처리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
3.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자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자
 4.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5. 응시번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자
 6. 인적사항 기재란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자
 7. 제2차시험에 있어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답안지 제출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의 문제번호를 정정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8.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④법무부장관은 해당 과목이 영점으로 처리된 자와 응시하지 아니한 과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나머지 과목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결정을 할 수 있다.
- 제7조의2 (제2차시험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 ①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당해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이하 "시험위원별 답안지"라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frac{\text{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times 5 + \text{전 과목의 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2 \text{의 총합계}}$$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

②영 제5조제2항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라 함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과목점수와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과목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고, "전 과목 총득점"이라 함은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총득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4.29]

제7조의3 (제1차시험 선택과목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① 제1차시험 선택과목에 있어서는 응시자의 점수에 대하여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의 5할을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 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frac{\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sqrt{(\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계}}$$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② 영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매과목 4할 이상"이란 조정 전의 응시자의 선택과목 점수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선택과목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과목 총득점"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2.27]

제8조 (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수수료) ①영 제6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통에 200원을 말한다.

②영 제8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시험의 경우에는 3만원, 군법무관임용시험의 경우에는 1만원을 말한다.

제9조 (성적공개) ① 「사법시험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적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적공개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부칙 <제510호,2001.12.4>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2005.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2006.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호,2007.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 호					
법학과목학점취득증명서					
성명		학번			
주민등록번호		전공			
취득기관	법학과목명	학점	취득기관	법학과목명	학점
			취득학점	계	
사법시험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한국교육개발원장) [인]					
【취득기관관 기재요령】					
1.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과목 : 학교명					
2. 독학시험에 합격한 과목 : 독학시험명					
3. 평생교육시설에서 이수한 학습과정 : 평생교육시설명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주체) 대학의 설립·경영자(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설치인가 등) ①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시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2.29>
④국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변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설치인가의 기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 제7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 한다),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의 장(이하 “한국법학교수회장”이라 한다)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제1항에 따른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개정 2008.2.29>
-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①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②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당해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등 대학과 관련한 교육 관계법을 적용한다.

제2장 법학교육위원회

제10조(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법학교육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2.29>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①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08.2.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2008.2.29>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5.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4인

제12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임기 중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13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가. 심의대상인 대학의 장
 - 나. 심의대상인 대학의 법학과·법학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다. 심의대상인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법학교육위원회는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대학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사실조사 등) ①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법학교육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조사위원의 임명 및 현지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

제16조(교원 등) ①법학전문대학원은 편제완성 연도의 학생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수 15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하여 교원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제외한다)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인으로 한다.

④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이하 이 항에서 "실무경력교원"이라 한다)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실무경력교원은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으로 확보할 수 없다.

제17조(물적 기준) ①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①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④법학전문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⑤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박사학위과정 및 제4항에 따른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의 정원 또는 입학자는 제7조·제10조제3호·제26조 및 제39조제1호에 따른 정원 또는 입학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9조(학점) ①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②이 법에 따른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교육과정) ①법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

- 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설치기준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시설·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2.29>
-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한다.
- 제23조(학생선발) ①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④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적성시험의 시행) ① 적성시험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적성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적성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④ 적성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⑤지정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적성시험 응시수수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적성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편입학) ①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편입학하는 학생이 종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26조(학생구성) ①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제27조(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 2009.1.1]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2. 적절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시행일 2009.1.1]

제2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위촉한다.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4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1인
5.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3인

[시행일 2009.1.1]

제30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은 그 임기 중 제2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시행일 2009.1.1]

제31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가.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장
 - 나.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 다.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시행일 2009.1.1]

제32조(자체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9.1.1]

제33조(평가기준) ①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입학자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등의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9.1.1]

제34조(사실조사 등) ①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현지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9.1.1]

제35조(평가결과의 통지 등) ①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대학에 통지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평가실시의 과정에서 당해 대학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9.1.1]

제3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평가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 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관련 기 관·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관계자 또는 관계 공 무원·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법학전문대학원 및 관련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9.1.1]

제37조(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5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평 가결과를 제출받은 후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대하여 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 위원 또는 조사위원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

2. 제31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평가에 참여한 때

③평가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재평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 월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2009.1.1]

제5장 보칙

제38조(시정명령)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 5조제2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및 제32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 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39조(감축조치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 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의 감축
2.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모집 정지

제40조(인가취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대학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대학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대학과 관련된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폐쇄명령)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42조(인가취소 후 학생보호) ① 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을 허가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학한 학생의 수는 제7조, 제10조제3호, 제26조 및 제39조제1호에 따른 정원 또는 입학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에 제공된 시설·재원에 대한 처리상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43조(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0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시설 등의 인가취소 및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학교육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위원, 조사위원, 평가위원회의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한 자
2. 제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4. 제41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2. 제2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3. 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8544호,2007.7.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생의 최초의 입학 시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 1일부터 학생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호, 제11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3항·제4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호,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 및 제4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㉛부터 ㉞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인가 절차)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교원(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을 포함한다) 현황 및 확보 계획
6.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및 확보계획
7.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8. 학생정원 및 선발계획
9. 개원예정일
10.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의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 다만, 설립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학은 설립 이후의 재무제표
11. 수업료 및 입학금 등 제원, 장학금 제도를 포함한 향후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운용계획
12. 폐지되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한 대책
13.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에 개설된 법학에 관한 석·박사학위과정의 운용계획
14.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계획
15. 그 밖에 연구과정 설치, 현장실습계획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에 그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지인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3조 (폐지인가 절차)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폐지 사유
2. 폐지 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 방법

제4조 (변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생정원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변경 내용
2. 변경 사유
3. 변경 연월일

제5조 (설치인가 등에 있어 고려사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 및 법 제6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명을 말한다.

제7조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법학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학교육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조사위원의 임명 등) 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을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3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 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② 조사위원은 사실조사를 이행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단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과 조사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 2명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중 2명
3. 공인회계사 1명
4. 3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중 1명
5.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④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신청한 대학을 방문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인가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학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신청자는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법학교육위원회는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설치인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조사위원의 임명,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 (교원)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수"란 12명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교원 등"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겸임교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등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원 수에 산입되는 겸임교원 등의 수는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1인당 인정되는 교수시간은 주당 9시간을 넘지 못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시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제11조 (학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전문학위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학점)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이란 90학점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학점을 말한다.

제13조 (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입학전형의 구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제15조 (입학전형계획의 수립·공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생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1.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2.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3.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제16조 (적성시험의 시행)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1.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적성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적성시험 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적성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정기관이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지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한다.

제17조 (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①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지정기관에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의 적성시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 해당 지원자가 응

시한 모든 적성시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에 법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초의 평가를 받은 때부터 5년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평가시기 외의 시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학이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2. 대학이 제19조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장애가 초래되어 시급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제1항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
2. 교원 현황
3.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4. 교육과정
5. 학생의 강의 평가
6.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결과
7.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8. 졸업 현황 및 변호사시험 결과
9. 매년도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졸업 후 1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0.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재무제표(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포함한다)
11.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신청시 발전계획과 그 이행결과 및 향후 발전계획

제19조 (자체평가) 법 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해부터 2년 전에 해당하는 해마다 실시하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평가위원회 조사위원의 임명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의 임명과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단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③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교직원 및 학생 면담, 수업 참관, 자료 검토, 시설현황의 실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② 평가위원회의 운영, 법학전문대학원의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제20302호, 2007.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5호·제2항 전단·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조, 제8조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0> 부터 <102> 까지 생략

변호사시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한다.

제4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제6조 (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

- 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0조 (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험의 일부면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7조의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

제13조 (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험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험위원은 그 임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차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2명

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2명

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

마.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의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 소관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문제 출제 또는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외부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9747호,2009.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제3조(변호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변호사시험은 제4조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한다.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

② 「사법시험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하는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행일 이전의 연도에 실시한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사법시험법」 제7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일부 시험이 면제되는 회까지 사법시험(그 면제되는 차수의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입학일 이후에 응시한 사법시험을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한다.

제5조(부정응시자에 대한 조치)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사법시험법」 제14조에 따른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한 사전 조치는 이 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자격, 출원 절차,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등을 매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 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시험일 10일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5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관은 매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응시자격)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소명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다. 다만, 법조윤리시험 응시자격을 소명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출원기간 내에 제2항의 응시자격 소명서류 1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자격 소명서류는 그 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한다.

1.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법조윤리시험의 시행)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지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기관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개월 내에 보관 중인 법조윤리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④ 논술형 필기시험과 전문직 법률분야에 관한 점수 조정방법 및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등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이나 그 밖에 합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험위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과목당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기관이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한 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수는 지정기관이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14조제3항제2호마목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각각 1명씩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제12조(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3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응시 수수료는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응시에 관한 특별조치)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과 사고 등으로 통상의 시험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응시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시간, 시험방법 등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1706호,2009.8.28>

이 영은 200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선택과목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	--

[별표 2]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제7조제2항 관련)

과목	출제범위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별표 3]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제8조제2항 관련)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득점으로 한다.

[별표 4]

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기준(제8조제3항 관련)

1. 각 과목별 배점비율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로 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2.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3.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로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원서의 제출) ①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응시원서의 접수) 법무부장관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되지 아니한 응시원서에 대하여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조(응시원서 기재사항의 변경)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 논술형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 답안지(이하 “시험위원별 답안지”라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frac{\text{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times 5 + \text{전 과목의 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2 \text{의 총합계}}{\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

제6조(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있어서는 제5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응시자의 점수에 대하여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의 40퍼센트를 각 응시자의 최종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frac{\text{응시자의 점수}-\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2.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제7조(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①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의 2.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라 함은, 각 과목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점수에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점수를 더한 점수와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점수에 제5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점수를 더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별표 4의 2.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라 함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점수와 제6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① 영 제9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합격증명서 1통에 200원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만원을 말한다.

제9조(성적공개)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적공개를 청구하려는 자는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등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적공개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현황

■ 성적분포

득 점	전체		남자			여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점유율(%)	인원	비율(%)	점유율(%)
총계	17,829	100	12,004	67.33	100	5,825	32.67	100
350 이상	0	0.00	0	0.00	0.00	0	0.00	0.00
300이상 350미만	33	0.19	22	0.12	0.18	11	0.06	0.19
340 점대	0	0.00	0	0.00	0.00	0	0.00	0.00
330 점대	0	0.00	0	0.00	0.00	0	0.00	0.00
320 점대	0	0.00	0	0.00	0.00	0	0.00	0.00
310 점대	7	0.04	4	0.02	0.03	3	0.02	0.05
300 점대	26	0.15	18	0.1	0.15	8	0.04	0.14
250이상 300미만	2,659	14.91	1,815	10.18	15.12	844	4.73	14.49
290 점대	100	0.56	57	0.32	0.47	43	0.24	0.74
280 점대	257	1.44	170	0.95	1.42	87	0.49	1.49
270 점대	504	2.83	326	1.83	2.72	178	1	3.06
260 점대	816	4.58	563	3.16	4.69	253	1.42	4.34
250 점대	982	5.51	699	3.92	5.82	283	1.59	4.86
200이상 250미만	5,086	28.53	3,583	20.1	29.85	1,503	8.43	25.8
240 점대	1,189	6.67	858	4.81	7.15	331	1.86	5.68
230 점대	1,139	6.39	771	4.32	6.42	368	2.06	6.32
220 점대	1,033	5.79	745	4.18	6.21	288	1.62	4.94
210 점대	902	5.06	637	3.57	5.31	265	1.49	4.55
200 점대	823	4.62	572	3.21	4.77	251	1.41	4.31
150이상 200미만	3,483	19.54	2,335	13.1	19.45	1,148	6.44	19.71
190 점대	727	4.08	500	2.8	4.17	227	1.27	3.9
180 점대	734	4.12	500	2.8	4.17	234	1.31	4.02
170 점대	673	3.77	442	2.48	3.68	231	1.3	3.97
160 점대	676	3.79	444	2.49	3.7	232	1.3	3.98
150 점대	673	3.77	449	2.52	3.74	224	1.26	3.85
100이상 150미만	4,019	22.54	2,634	14.77	21.94	1,385	7.77	23.78
140 점대	658	3.69	439	2.46	3.66	219	1.23	3.76
130 점대	797	4.47	537	3.01	4.47	260	1.46	4.46
120 점대	720	4.04	474	2.66	3.95	246	1.38	4.22
110 점대	928	5.21	604	3.39	5.03	324	1.82	5.56
100 점대	916	5.14	580	3.25	4.83	336	1.88	5.77
100 미만	2,549	14.3	1,615	9.06	13.45	934	5.24	16.03

■ 연령별/성별 제1차시험 합격자 현황

연령	전체		남자		여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계	2,511	100.00	1,709	68.06	802	31.94
18 미만	0	0.00	0	0.00	0	0.00
18이상 20미만	1	0.04	1	0.06	0	0.00
18	0	0.00	0	0.00	0	0.00
19	1	0.04	1	0.06	0	0.00
20이상 25미만	489	19.48	250	14.64	239	29.8
20	3	0.12	3	0.18	0	0.00
21	36	1.43	23	1.35	13	1.62
22	121	4.82	77	4.51	44	5.49
23	141	5.62	56	3.28	85	10.6
24	188	7.49	91	5.33	97	12.09
25이상 30미만	1,068	42.53	663	38.79	405	50.5
25	204	8.13	107	6.26	97	12.09
26	245	9.76	149	8.72	96	11.97
27	244	9.72	155	9.07	89	11.1
28	200	7.97	135	7.9	65	8.1
29	175	6.97	117	6.85	58	7.23
30이상 35미만	609	24.26	484	28.34	125	15.59
30	146	5.82	98	5.74	48	5.99
31	135	5.38	102	5.97	33	4.11
32	112	4.46	96	5.62	16	2.0
33	109	4.34	97	5.68	12	1.5
34	107	4.26	91	5.33	16	2
35이상 40미만	256	10.2	229	13.41	27	3.37
35	68	2.71	59	3.45	9	1.12
36	65	2.59	62	3.63	3	0.37
37	49	1.95	45	2.63	4	0.5
38	39	1.55	33	1.93	6	0.75
39	35	1.39	30	1.76	5	0.62
40이상 45미만	69	2.75	66	3.86	3	0.37
40	21	0.83	21	1.23	0	0.00
41	15	0.60	13	0.76	2	0.25
42	15	0.60	15	0.87	0	0.00
43	10	0.40	10	0.59	0	0.00
44	8	0.32	7	0.41	1	0.12
45이상 50미만	15	0.6	12	0.7	3	0.37
45	2	0.08	2	0.11	0	0.00
46	6	0.24	6	0.35	0	0.00
47	5	0.20	3	0.18	2	0.25
48	1	0.04	0	0.00	1	0.12
49	1	0.04	1	0.06	0	0.00
50이상	4	0.16	4	0.23	0	0.00
51	1	0.04	1	0.06	0	0.00
52	1	0.04	1	0.06	0	0.00
53	1	0.04	1	0.06	0	0.00
55	1	0.04	1	0.05	0	0.00

■ 학력별/성별 제1차시험 합격자 현황

구 분		출원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비율(%)		
					출원자 대 비	응시자 대 비	합격자 대 비
총계	계	21,082	17,829	2,511	100.00	100.00	100.00
	남자	14,527	12,004	1,709	68.91	67.33	68.06
	여자	6,555	5,825	802	31.09	32.67	31.94
대학원재학이상	계	2,133	1,745	249	10.12	9.79	9.92
	남자	1,669	1,347	200	7.92	7.56	7.96
	여자	464	398	49	2.2	2.23	1.95
대학졸업	계	9,036	7,439	1,332	42.86	41.72	53.05
	남자	6,473	5,203	915	30.7	29.18	36.44
	여자	2,563	2,236	417	12.16	12.54	16.61
대학재.중퇴	계	9,804	8,587	926	46.5	48.16	36.88
	남자	6,292	5,401	590	29.85	30.29	23.50
	여자	3,512	3,186	336	16.66	17.87	13.38
3년제이하 대학	계	34	19	3	0.16	0.11	0.12
	남자	27	18	3	0.13	0.10	0.12
	여자	7	1	0	0.03	0.01	0.00
고등학교졸업이하	계	75	39	1	0.36	0.22	0.04
	남자	66	35	1	0.31	0.20	0.04
	여자	9	4	0	0.04	0.02	0.00

■ 학력별/법학전공별 제1차시험 합격자 현황

학 력	합 격 자		전 공		비 전 공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 계	2,511	100.00	1,937	77.17	574	22.86
대학원 재학 이상	249	9.92	170	6.77	79	3.15
대학교 졸업	1,332	53.05	962	49.66	370	14.74
대졸이상 계	1,581	62.96	1,132	45.1	449	17.88
대학교 수료.재학.중퇴	926	36.88	805	32.07	121	4.82
3년제이하 대학 졸.중.재	3	0.12	0	0.00	3	0.12
고등학교 졸업.중퇴	1	0.04	0	0.00	1	0.04
학력미상	0	0.00	0	0.00	0	0.00
대졸미만 계	930	37.05	805	32.07	125	4.98

2008년 시행 제5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통계

□ 제2차시험 합격자 현황

○ 연령별·성별 현황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 계	1,005	100.00	621	61.79	384	38.21
18 미만	0	0.00	0	0.00	0	0.00
18이상 20미만	0	0.00	0	0.00	0	0.00
18	0	0.00	0	0.00	0	0.00
19	0	0.00	0	0.00	0	0.00
20이상 25미만	187	18.61	100	16.10	87	22.66
20	0	0.00	0	0.00	0	0.00
21	4	0.40	4	0.64	0	0.00
22	22	2.19	15	2.42	7	1.82
23	74	7.36	38	6.12	36	9.38
24	87	8.66	43	6.92	44	11.46
25이상 30미만	539	53.63	315	50.72	224	58.33
25	95	9.45	44	7.09	51	13.28
26	138	13.73	70	11.27	68	17.71
27	127	12.64	76	12.24	51	13.28
28	102	10.15	71	11.43	31	8.07
29	77	7.66	54	8.70	23	5.99
30이상 35미만	210	20.90	155	24.96	55	14.32
30	50	4.98	28	4.51	22	5.73
31	52	5.17	37	5.96	15	3.91
32	44	4.38	36	5.80	8	2.08
33	32	3.18	27	4.35	5	1.30
34	32	3.18	27	4.35	5	1.30
35이상 40미만	62	6.17	47	7.57	15	3.91
35	23	2.29	17	2.74	6	1.56
36	14	1.39	10	1.61	4	1.04
37	12	1.19	10	1.61	2	0.52
38	6	0.60	5	0.81	1	0.26
39	7	0.70	5	0.81	2	0.52
40이상 45미만	6	0.60	4	0.64	2	0.52
45이상 50미만	1	0.10	0	0.00	1	0.26
50이상	0	0.00	0	0.00	0	0.00

○ 학력별·성별 현황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점유율	인원	비율	점유율
총 계	1005	100.00	621	61.79	100.00	384	38.21	100.00
대학원 재학 이상	132	13.13	94	9.35	15.14	38	3.78	9.90
대학교 졸업	488	48.56	293	29.15	47.18	195	19.40	50.78
대졸이상 계	620	61.69	387	38.51	62.32	233	23.18	60.68
대학교 수료.재학.중퇴	383	38.11	232	23.08	37.36	151	15.02	39.32
3년제이하 대학 졸.중.재	0	0.00	0	0.00	0.00	0	0.00	0.00
고등학교 졸업.중퇴	2	0.20	2	0.20	0.32	0	0.00	0.00
대졸미만 계	385	38.31	234	23.28	37.68	151	15.02	39.32

○ 학력별·법학전공별 현황

구 분	전체		법학전공		법학비전공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 계	1005	100.00	817	81.29	188	18.71
대학원 재학 이상	132	13.13	105	10.45	27	2.69
대학교 졸업	488	48.56	376	46.02	112	11.14
대졸이상 계	620	61.69	481	47.86	139	13.83
대학교 수료.재학.중퇴	383	38.11	336	33.43	47	4.68
3년제이하 대학 졸.중.재	0	0.00	0	0.00	0	0.00
고등학교 졸업.중퇴	2	0.20	0	0.00	2	0.20
대졸미만 계	385	38.31	336	33.43	49	4.88

○ 1차시험 면제·비면제 현황

구 분	전체		1차시험 면제		1차시험 비면제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 계	1,005	100.00	767	76.32	238	23.68

○ 출신대학별 현황

출신대학명	합격인원	출신대학명	합격인원
서울대학교	274	인하대학교	4
고려대학교	183	숙명여자대학교	3
연세대학교	105	원광대학교	3
성균관대학교	76	광운대학교	2
이화여자대학교	64	송실대학교	2
한양대학교	53	홍익대학교	2
중앙대학교	26	육군사관학교	2
부산대학교	22	영남대학교	2
서강대학교	20	강원대학교	1
전남대학교	19	교육대학교	1
경희대학교	15	한동대학교	1
경북대학교	14	충북대학교	1
한국외국어대학교	13	청주대학교	1
경찰대학	13	안동대학교	1
건국대학교	12	성신여자대학교	1
동국대학교	12	경상대학교	1
아주대학교	11	인천대학교	1
전북대학교	8	동의대학교	1
충남대학교	7	대구대학교	1
동아대학교	6	경기대학교	1
국민대학교	5	기타 4년제대학	3
서울시립대학교	5	기타	2
단국대학교	5	총계	1,005

2008년 시행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통계

□ 최종합격자 현황

○ 연령별·성별 현황

연령	전체		남자		여자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총계	1,005	100.00	623	61.99	382	38.01
18 미만	0	0.00	0	0.00	0	0.00
18이상 20미만	0	0.00	0	0.00	0	0.00
18	0	0.00	0	0.00	0	0.00
19	0	0.00	0	0.00	0	0.00
20이상 25미만	187	18.61	101	16.21	86	22.51
20	0	0.00	0	0.00	0	0.00
21	4	0.40	4	0.64	0	0.00
22	22	2.19	15	2.41	7	1.83
23	73	7.26	38	6.10	35	9.16
24	88	8.76	44	7.06	44	11.52
25이상 30미만	538	53.53	315	50.56	223	58.38
25	93	9.25	43	6.90	50	13.09
26	139	13.83	71	11.40	68	17.80
27	130	12.94	79	12.68	51	13.35
28	100	9.95	69	11.08	31	8.12
29	76	7.56	53	8.51	23	6.02
30이상 35미만	211	21.00	156	25.04	55	14.40
30	50	4.98	28	4.49	22	5.76
31	50	4.98	36	5.78	14	3.66
32	44	4.38	36	5.78	8	2.09
33	34	3.38	28	4.49	6	1.57
34	33	3.28	28	4.49	5	1.31
35이상 40미만	62	6.17	47	7.54	15	3.93
35	23	2.29	17	2.73	6	1.57
36	14	1.39	10	1.61	4	1.05
37	12	1.19	10	1.61	2	0.52
38	6	0.60	5	0.80	1	0.26
39	7	0.70	5	0.80	2	0.52
40이상 45미만	6	0.60	4	0.64	2	0.52
45이상 50미만	1	0.10	0	0.00	1	0.26
50이상	0	0.00	0	0.00	0	0.00

○ 학력별·성별 현황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점유율	인원	비율	점유율
총 계	1,005	100.00	623	61.99	100.00	382	38.01	100.00
대학원 재학 이상	131	13.03	94	9.35	15.09	37	3.68	9.69
대학교 졸업	490	48.76	295	29.35	47.35	195	19.40	51.05
대졸이상 계	621	61.79	389	38.71	62.44	232	23.08	60.73
대학교 수료재학중퇴	383	38.11	233	23.18	37.40	150	14.93	39.27
3년제이하 대학 졸중재	0	0.00	0	0.00	0.00	0	0.00	0.00
고등학교 졸업·중퇴	1	0.10	1	0.10	0.16	0	0.00	0.00
대졸미만 계	384	38.21	234	23.28	37.56	150	14.93	39.27

○ 학력별·법학전공별 현황

구 분	전체		법학전공		법학비전공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 계	1,005	100.00	813	80.90	192	19.10
대학원 재학 이상	131	13.03	103	10.25	28	2.79
대학교 졸업	490	48.76	374	46.00	116	11.54
대졸이상 계	621	61.79	477	47.46	144	14.33
대학교 수료재학중퇴	383	38.11	336	33.43	47	4.68
3년제이하 대학 졸중재	0	0.00	0	0.00	0	0.00
고등학교 졸업·중퇴	1	0.10	0	0.00	1	0.10
대졸미만 계	384	38.21	336	33.43	48	4.78

○ 면제·비면제 현황

구 분	전체		1차시험 면제		1차시험 비면제		1·2차시험 면제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 계	1,005	100.00	757	75.32	237	23.58	11	1.10

○ 출신대학별 현황

(※ 본 자료는 응시자 본인의 응시원서 기재 기준임)

출신대학명	합격인원	출신대학명	합격인원
서울대	275	원광대	4
고려대	182	숙명여대	3
연세대	104	기타4년제대학	
성균관대	77	광운대	2
이화여대	63	송실대	
한양대	53	홍익대	
중앙대	26	육군사관학교	
부산대	22	영남대	
서강대	21	강원대	1
전남대	19	교육대	
경희대	15	한동대	
경찰대학	14	충북대	
경북대	13	청주대	
건국대	12	조선대	
동국대		안동대	
한국외대		성신여대	
아주대	11	경상대	
전북대	7	인천대	
충남대		동의대	
동아대	6	대구대	
국민대	5	경기대	
인하대		기타	
서울시립대		총 계	
단국대			

말씀 자료

1. 인사 말씀

- 대만 정부 양조상 고선부 부장님을 비롯한 방문단 일행의 대한민국 법무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 바쁘신 방문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무부를 방문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선부 부장 답례 말씀 예정)

2. 방한 관련

- 고선부 부장님께서서는 한국을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음
 -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떠신지
- 짧은 체류 기간 동안 대한변협, 사법연수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을 방문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힘드실 테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람

3. 방한 목적 관련 (대만의 법조인 선발 제도 개편)

- 대만은 2011년부터 검사, 판사 및 변호사 시험의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들었음 (시험과목, 인원 선발 기준 등 변경 예정)
- 그리고, 2014년부터는 검사, 판사 및 변호사시험을 통합한 삼합일(3합1) 고시를 실시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들었음

※ 현재 검·판사는 공무원인원특정고시, 변호사는 전문고시제도를 통해 선발
- 고시제도 개편을 계획 중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4. 우리나라의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및 로스쿨 제도 도입 배경 소개 (대만 측 관심 의제)

가. 사법시험 제도

- 현재 한국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크게 법학교육, 선발 시험 그리고 연수제도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법학교육은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법조인 선발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법시험을 통하여 실시되며, 선발된 자들에 대한 실무연수는 사법연수원에서 담당하고 있음

- 사법시험은 선택형 시험인 1차 시험, 논술형 시험인 2차 시험, 구술 면접시험인 3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사법연수원은 2년 과정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들은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을 합산한 성적을 기준으로 자신의 적성에 따라 검사, 판사 또는 변호사의 영역에서 활동하게 됨
- 금년에는 약 1,000명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선발될 예정됨

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도입

- 고도의 전문지식과 국제적 감각을 두루 갖춘 우수 법조인력 양성을 위해 2007. 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9. 3. 전국 25개 로스쿨이 문을 열었음

- 로스쿨 제도는 '비법학 학부 교육,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교육(실무교육 포함), 변호사시험'의 구조를 골자로 하며, 한국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변화하게 되었음
- 로스쿨의 최소 수업이수학기는 6학기로서, 수료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됨

다. 변호사시험 제도

- 로스쿨제도 도입에 따라 법무부는 로스쿨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변호사시험제도 마련을 위하여 변호사시험법을 입안하였으며, 위 법안은 2009. 4.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음
- 위 법은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내용으로 함

※ 일본과 같은 예비시험제도는 도입하지 않음

- 시험과목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 필수과목과 국제법, 경제법 등 7개 선택과목과 법조윤리 시험 등 이고, 사법시험과 달리 1차, 2차, 3차 시험 등 단계의 구분이 없음

라.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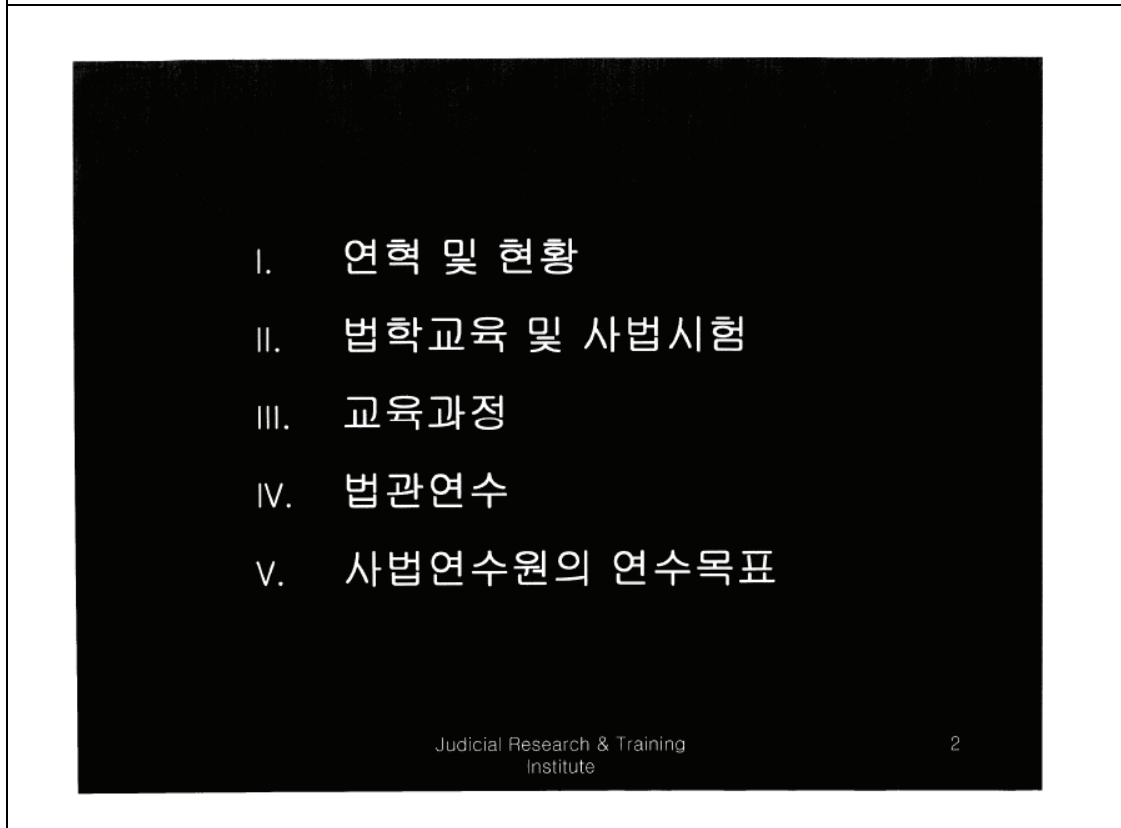
-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 도입 이후에도 현재의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유지가 되며, 최초의 변호사시험이 시행되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양성되게 됨

5. 마무리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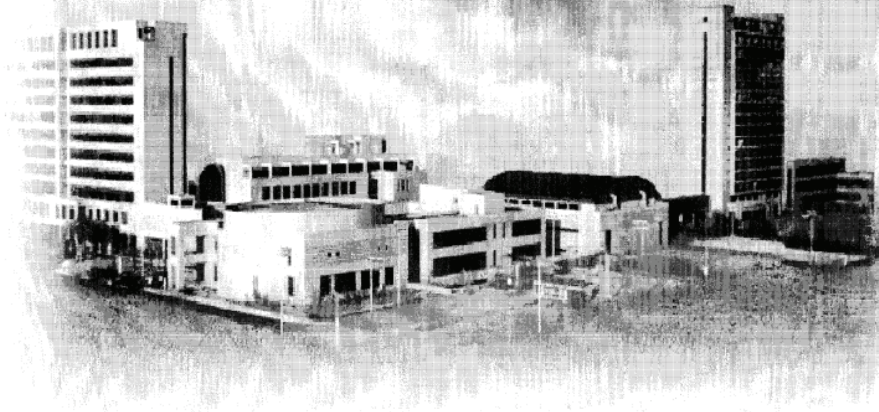
- 저희들의 경험이 대만의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
-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 경치를 마음껏 만끽하시면서 뜻 깊고 보람 있는 방문이 되시기를 바램
- 끝으로, 한국 법무부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남은 방문기간 동안 편안하고 유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램
- 감사합니다.

※ 선물(부장: 한지 나비 쌍합 보석함) 및 법무부 영문 소개책자 증정, 사진 촬영

附錄 6 韓國司法研修院書面答覆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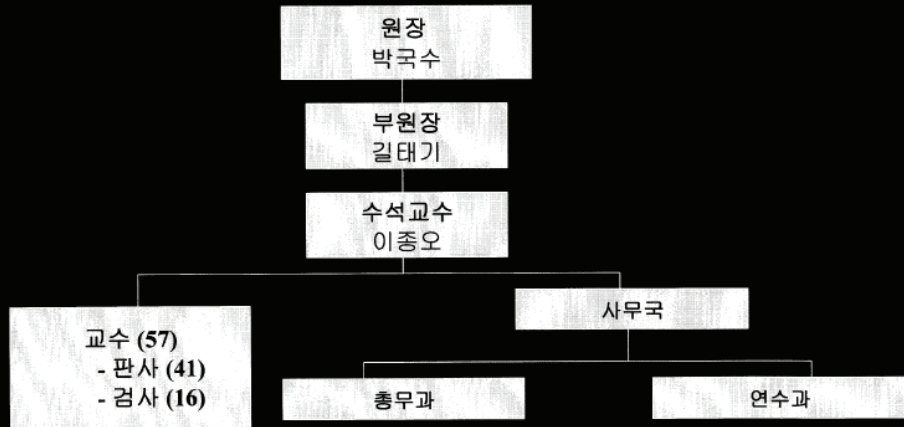
연혁 및 현황



사법연수원 연혁

- 1971년 사법시험 합격자 교육을 위하여 대법원 산하에 설립
 - 대한민국 유일의 법률실무가 양성기관
- 통산 14,300여 명의 법조인 양성
 - 대한민국 판사의 99%, 검사의 100%, 변호사의 85%
- 1978년부터 신임법관연수 실시
- 1983년부터 법관세미나 실시
- 1979년부터 군법무관시보 위탁교육 실시

사법연수원 조직 현황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5

인원구성

원장	고등법원장	1명
부원장	검사장	1명
수석교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
교수 57명	법관 41명	민사교수실 14명
		형사교수실 14명
		변호사교수실 4명
	검사 16명	기획교수실 9명
		경찰교수실 14명
일반직 88명	사무국장	1명
	총무과	65명
	연수과	22명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6

시 설 현 황

- 부지면적 : 83,096 m²
- 건물 연면적 : 59,805 m²
- 시설구성
 - 본관동 10층: 교수실 및 사무국
 - 강의동 : 대강의실 6개, 표준 강의실 18개
 - 도서관동 : 534석
 - 기숙사동 : 16층 200실(2인/실)
 - 후생동 : 대강당(1046석), 소강당, 체육관, 식당
 - 법관연수동 및 법관숙소동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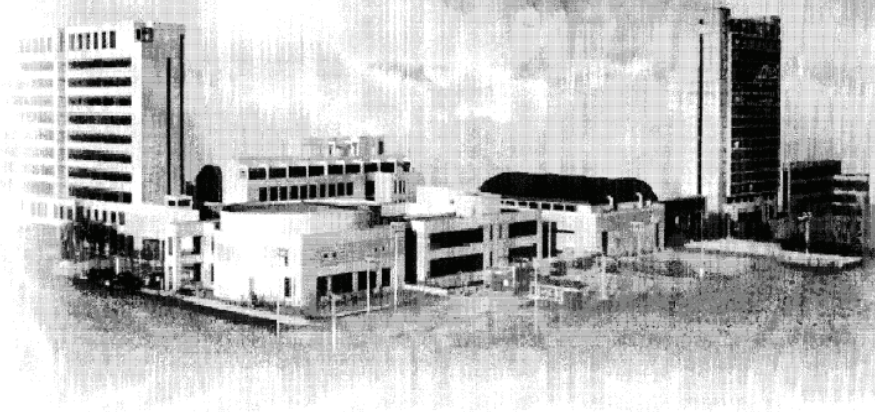
사법연수생의 지위

- 사법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하여 사법연수생이 될 수 있음
- 법조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2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제39기 1,001명 임명 (여성 348명, 34.76%)
 - 제40기 969명 임명 (여성 379명, 39%)
- 국가공무원의 신분
 - 국고에서 소정의 급여 지급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8

법학교육 및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이전의 법학교육

- 대학원 단계가 아닌 학부 단계에서 4년간 이론 중심의 법학교육
- 법과대학 졸업자가 아니어도 사법시험 응시 가능
-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이 도입될 예정 - 25개 대학, 2,000명 정원
- 2,016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 병존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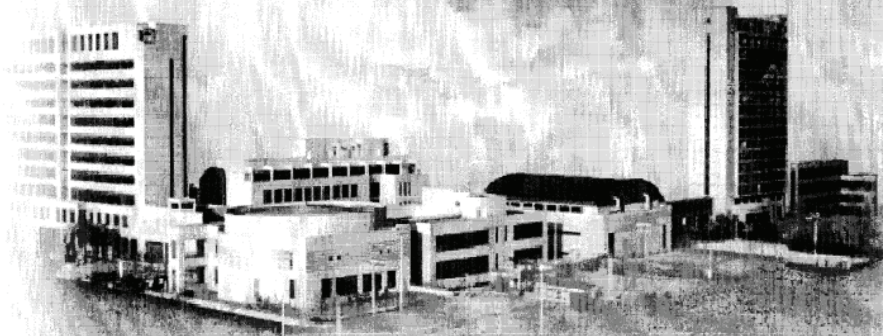
사 법 시 험

- 행정부에 소속된 법무부에서 주관
- 2007년 18,000명이 응시하여 1,011명이 최종 합격
(합격률 : 5.6%)
- 1차 시험 : 선택형
- 2차 시험 : 논술형
 - 1차 시험 합격자만 응시 가능
- 3차 시험 : 구술시험
 - 2차 시험 합격자만 응시 가능

사법시험 과목

- 필수과목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영어
- 1차 시험에서의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세법 등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관

-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실무지식과 법조윤리 교육
- 1997년 대학원 형태의 2년-4학기제, 학점제, 전공제 도입
- 전공분야 및 법조윤리 교육의 강화
 - 국제적 경쟁력과 봉사정신, 민주주의적 소양을 갖춘 법조인 양성

교 수 진

- 전임교수 : 1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판사, 검사로 구성
 - 2년 내지 3년 근무 후 다시 법원, 검찰청으로 복귀하여 실무에 종사
- 외부강사 :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들이 수시로 출강
 - 민사변호사실무, 형사변호사실무 및 특허, 조세 등 전문분야

교 과 과 정

- 1학기 : 기초과정
 - 주로 기본필수과목을 통하여 실무의 기초지식을 교육
- 2학기 : 발전과정
 - 기본필수과목과 전공과목에 대한 심화된 내용을 교육
- 3학기 : 임상과정
 - 법원, 검찰청, 변호사 사무실 및 전문분야 실무수습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면서 실무능력 체득
- 4학기 : 완성과정
 - 교육성과의 정리 및 평가

전문분야 교육과정

- 8가지의 전공분야
 - 민사법, 기업법, 형사법, 헌법 및 행정법, 지적재산권법, 조세법, 국제거래법, 사회경제법 분야
- 전문분야 실무수습 (1개월)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증권거래소, 감사원, 정보통신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조지워싱턴대, 콜럼비아대 등 113개 기관

법조윤리교육의 강화

- 법조론, 법조윤리론, 법조책임론을 각 1, 2, 4학기 원내수습기간 중 교육
- 합반강의와 소규모 세미나식 수업을 병행
- 인터넷 사이트 “열린마당(www.plaza.or.kr)”을 통한 무료법률상담 실시
- 의무적인 사회봉사활동
 - 근로봉사(12시간)+ 법률상담봉사(60시간)

실무수습

- 각 2개월씩 법원, 검찰청, 변호사 사무실에 배치되어 실무수습
- 재판의 심리 및 수사에 참여하고,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장, 소장, 준비서면 등을 직접 작성하면서 이론을 실무에 접목시킴
- 변호사 실무수습기간 동안 전문기관에서의 대체수습도 허용(UN 등 국제기구, 외국의 법률기관도 허용)

평가

- 각 과정마다 시험을 통하여 평가됨
- 기본적인 학점체계(상대평가)
 - A+(4.3 : 7%), A0(4.0 : 8%), A-(3.7 : 10%)
 - B+(3.3 : 15%), B0(3.0 : 20%), B-(2.7 : 15%),
 - C+(2.3 : 9%), C0(2.0 : 7%), C-(1.7 : 5%),
 - D(1.3 : 4%)
- 평균평점 2.35(1학기) 또는 2.05(2학기) 이하인 경우 다음 학기에 전체 과정을 재수습
- 2회 유급의 경우 면직 처리

개 별 지 도

- 지도교수 1인이 24-25명의 연수생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상담지도
- 매달 4시간 이상의 조별 모임시간 확보
- 토론, 등산, 영화감상,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조별 활동 실시

법 관 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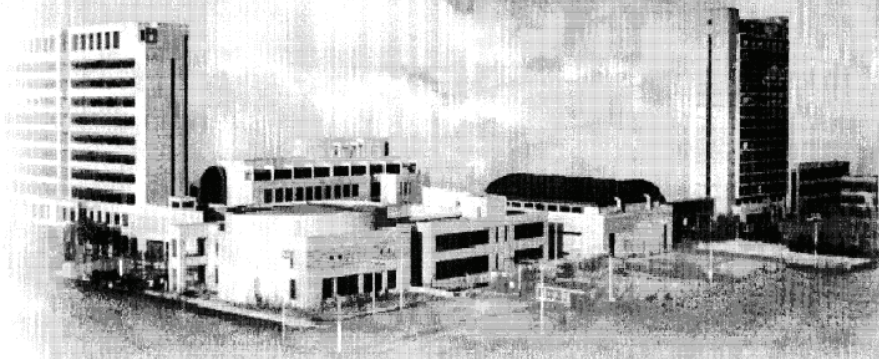
법 관 연 수

- 경력별 연수
 - 모든 판사가 최소 5년에 1회 이상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운영
- 분야별 연수
 - 형사법, 조세법, 행정법, 파산법 등 특정 분야업무를 처음 맡게 된 법관을 대상으로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을 목적
- 주제별 연수
 - 실무상 쟁점이 많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소주제 중심의 연수
- 세미나
 -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실무편람 편찬

2008년도 법관연수 개요

연수 종류	과정 수	연수 인원
경력별 연수	신임법관 연수 등 11개 과정	589
분야별 연수	형사실무법관 연수 등 10개 과정	560
주제별 연수	기업회계의 이해 등 12개 과정	435
세미나	가사재판장세미나 등 8개 과정	343
합계	41개 과정	1,927

사법연수원의 연수 목표



사법연수원의 연수 목표

-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전문 법조인의 양성
- 사회에 봉사하는 법조인의 양성
- 21세기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민주적인 지도자 양성

감사합니다

사범연수원

한국의 사법연수제도 소개

2008. 9. 23.

사법연수원 교수 유해용

사법연수제도의 개요

◆ 사법연수원의 주요업무

- 사법연수생수습 :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양성
- 법관연수 : 법관에 대한 계속 교육
- 기타 연수 : 군법무관시보 위탁교육, 사법보좌관 후보자 교육

사법연수제도의 개요

◆ 사법연수원의 위상

- 대법원 산하의 대한민국 유일의 법조실무가 양성기관
- 사법연수원에서 배출한 법조인은 통산 13,300여 명
- 대한민국 판사의 99%, 검사의 100%, 변호사의 85%가 사법연수원 수료자
- 법률 실무 위주 교육 : 법률이론 + 소송절차 연습 + 법률 서면 작성 연습(원내 임상교육) + 각 분야 실무수습(원외 임상교육)

3

사법연수제도의 개요

◆ 사법연수원과 미국의 로스쿨 비교

구분	사법연수원	미국 로스쿨
기본 시스템	국가 독점체제	민간 자율 경쟁체제
교육 목표	판사·검사 + 변호사 양성	변호사 양성
교육 내용	법률실무 교육 위주	법률이론 교육 위주
교육 방향	표준형/획일성	개방형/다양성
교과목 구성	공통 필수 과목 다수	선택 과목 다수
교수 요원	현직 판사·검사 중심	전문 교수 중심

4

사법연수제도의 개요

◆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천과정

법조인 양성제도	사법관시보제도	사법대학원 제도	사법연수원제도
시행기간	1945년~1961년	1962년~1970년	1971년~현재
성격		서울대학교 부설	대법원 산하

5

사법연수제도의 개요

◆ 대학원체제로의 전환

-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1995년에 「법률서비스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세계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법연수원의 개편방안 마련
 - 대륙식 법조인 양성제도에 미국식 로스쿨 교육방식을 접목
 - 학기제와 학점제 실시
 - 변호사 실무교육의 확대
 - 전문분야 교육 강화
 - 직업윤리 교육 강화
- 1997년에 입소한 28기 연수생부터 개편된 연수제도 시행
- 2002년 일산으로 이전하면서 사법연수생 1,000명 시대 개막

6

사법연수제도의 개요

◆ 법학전문대학원 출범에 따른 변화

- 2009년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교하면, 과도기적 법조인 양성시스템으로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이 당분간 병존
- 2011년부터 사법연수생이 단계적으로 감축되다가 2019년 이후에는 연수생 수습 기능 상실 예정

7

사법연수제도의 개요

◆ 법학전문대학교 출범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미래 역할

- 법관연수 확대·강화
- 신규 변호사 교육 및 경력 변호사 계속 교육
-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실무교육 지원
- 행정부 법무담당관, 군법무관 등에 대한 위탁교육
- 예방법학 내지 교양법학 프로그램 신설
- 국제사법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법관 교육과정 개설
- 사법행정과 재판제도에 관한 장기적·학술적 연구

8

사법연수생 수습

◆ 사법연수생의 교육 목표

- 전문 직업교육에 의한 숙련된 실무법조인(법관·검사·변호사)의 양성
- 21세기와 세계화·국제화에 대비한 전문법조인의 양성
- 전인격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할 공익법조인의 양성
- 선진 일류국가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할 민주적 지도자의 양성

9

사법연수생 수습

◆ 교육의 기본방향

- 현행 재판실무와 부합하는 충실한 기본실무교육
- 법조윤리 및 인성교육의 강화
- 전문분야교육의 심화
- 변호사실무교육의 강화
- 국제경쟁력 강화
-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강화

10

사법연수생 수습

◆ 교수진

- 전임교수 법관 43명, 검사 16명 총 59명/일반직원 90명
- 14개 반으로 나누어 부장판사 교수 2인과 부장검사 교수 1인 각각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를 전담 교육
- 민사변호사실무 및 형사변호사실무 과목은 각각 전임교수(변호사 경력자) 2인과 외부강사(변호사) 12인이 분담하여 교육
- 1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판사와 검사가 전임교수로 2년 내지 3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근무하고 다시 실무로 복귀
-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들이 강사로서 수시로 출강

11

사법연수생 수습

◆ 사법연수생 현황

기수	입소인원	평균연령	여 성	비법학 전공
34기	972명	29.95세	230명(23.7%)	276명(28.4%)
35기	887명	30.17세	187명 (21.08%)	270명 (30.44%)
36기	987명	29.88세	243명 (24.62%)	246명 (24.92%)
37기	977명	29.24세	309명 (31.63%)	263명 (26.92%)
38기	971명	28.88세	365명 (37.59%)	238명 (24.51%)
39기	1,001명	29.07세	348명 (34.77%)	235명 (23.48%)

12

사법연수생 수습

◆ 연수생 생활지도

- 연수생의 신분
 - 국가공무원 신분
 - 충실의무, 겸직금지의무, 영리행위금지의무 등 부담
 - 국가 예산으로 일정액의 급여 지급
- 반.조 지도반 활동
 - 14개 반 × 3개 조 체제
 - 조별로 민재, 형재, 검찰 교수가 지도교수로서 지도반 활동 담당
 - 인간관계 훈련/효율적인 그룹 활동

13

사법연수생 수습

◆ 교과목 구성

- 2008년에 입소한 39기의 경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총 69학점
-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등급평가과목의 학점은 총 58학점
- 법원.검찰.변호사.전문분야 실무수습 8학점 및 사회봉사연수 3학점은 pass/fail로 평가
- 등급부여 과목의 종류 및 비중

과목	기본 실무과목	일반 법률과목	전공 과목	외국법 등	법조 윤리	실무 수습	교수 지도학점	합계
학점	35	5	4	3	3	4	4	58
비율	60%	9%	7%	5%	5%	7%	7%	100%

14

사범연수생 수습

◆ 1년차 원내교육 시간 배분

수습분야	시간	비율(%)	수습분야	시간	비율(%)
법률실무	412	28.0	행사,지도활동	108	7.3
법률이론강의	184	12.5	자치회	45	3.0
법조윤리	30	2.0	모의재판	32	2.2
사회봉사	82	5.6	자율활동	519	35.3
교양과목	58	3.9			

15

사범연수생 수습

◆ 학기별 · 수습분야별 이수 학점

수 습 분 야		1 학기	2 학기	3 학기	4 학기	합계	
법률이론	일반법	3	2			5	
	전문 및 특별법	2	2			4	
	외국법 및 법학인접분야	1	2			3	
법률실무	원내 교육	변호사실무 - 민사	3		3	10	
		형사	2		2		
	실무	민사재판실무	5			4	9
		형사재판실무	4			4	8
		검찰실무	4			4	8
	수습	변호사실무수습		3	6		9
		법원실무수습					
검찰실무수습				3		3	
전문분야실무수습							
법조윤리	법조론, 법조윤리론, 법조책임론	1	1		1	3	
	사회봉사연수	3				3	
교수지도		1	1	1	1	4	
계		11	11	10	19	69	
		통합과정 : 18					

16

사법연수생 수습

◆ 학기별 수습기간 및 내용(2008년 39기 기준)

학 기	유 형	수 습 기 간	비 고
1년차 1학기 (5.5개월)	기초과정	2008. 3. 1. ~ 2008. 8. 15.	원내교육
1년차 2학기 (6.5개월)	발전과정	2008. 8. 16.~ 2009. 2. 28.	원내교육 (4.5개월) 및 실무수습(2개월)
2년차 3학기 (6개월)	임상과정	2009. 3. 1. ~ 2009. 8. 31.	실무수습
2년차 4학기 (5개월)	완성과정	2009. 9. 1. ~ 2010. 1. 31.	원내교육

17

사법연수생 수습

◆ 39기 학기별 세부 학사일정

1학기 5.5개월 (2008. 3. 1. ~ 8. 15.)			2학기 6.5개월 (2008. 8. 16. ~ 2009. 2. 28.)								
강의 3½개월(15주)	시험 2주	법률상담봉사 2주 자율학습 5주	강의 3½개월(15주)	시험 2주	자율학습 2.5주	직역별 실무수습 2개월					
3학기 6개월 (2009. 3. 1. ~ 8. 31.)			4학기 5개월 (2009. 9. 1. ~ 2010. 1. 31.)								
직역별 실무수습 2개월	직역별 실무수습 2개월	전문 분야 실무 수습 1개월	자율 학습 1개월	기록 작성 1개월	시험 2주	세 미나 2주	특 강 6주	수 료 여 형 1주	진 료 안 내 2주	자 율 학 습 2주	취 업 지 도 1 개 월

18

사법연수생 수습

◆ 기본실무 과목

과목	1, 2학기	4학기	특징
민사재판실무	5학점	4학점	▶ 반별 강의
형사재판실무	4학점	4학점	▶ 1, 2 학 기 통 합 평 가 (1 학 기 15%+2학기 75%+교수점수 10%)
검찰실무	4학점	4학점	▶ 교재 강의/사례연구/각종 법률 서면 작성 연습/모의재판
민사변호사실무	3학점	3학점	▶ 법률이론과 판례를 실무상 자주 등장하는 문제 해결에 접목
형사변호사실무	2학점	2학점	

19

사법연수생 수습

◆ 일반법률 과목

1학기	2학기	특징
보전소송	민사집행법	▶ 각 1학점/5단계 등급
부동산소송	손해배상소송	▶ 수사절차론 : 반별 강의
수사절차론		▶ 나머지 과목 : 7개 반 편성

20

사법연수생 수습

◆ 법조윤리 과목(각 1학점 총 3학점)

1학기	2학기	4학기	특징
법조론	법조윤리	법조책임	▶대강당특강+반별토론식 수업 ▶실제 사례 위주 교육 강화

◆ 법률영어 및 영미법 개론(각 1학점, 총 2학점)

1학기	2학기	특징
법률영어	영미법개론	▶7개 반(수준별) 편성 ▶원어민 강사/Only English ▶영미법 전반에 대한 소개

21

사법연수생 수습

◆ 전공과목

- 민사법, 기업법, 형사법, 공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사회경제법, 국제법 등 8개 계열 중 1개 선택
- 학기별 2과목(총 4과목, 각 1학점)

◆ 외국법 및 법학인접과목

- 2학기 1과목(1학점) 선택

22

사법연수생 수습

◆ 3학기 실무수습

구분	기간	기관	수습내용
법원 실무수습	2개월	각급 법원	법관 업무 소개 판결서 작성 훈련 조정 참여 국선변호활동
검찰 실무수습	2개월	각급 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실제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 등 담당
변호사 실무수습	2개월	로펌 및 개인변호사사무소	의뢰인 상담 입회, 지도관의 법정 변론 참관 각종 소송서류 작성
전문분야 실무수습	1개월	국가기관, 언론사, 공 사기업, 국제기구 등 110여 개 기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심화 현장 학습

23

사법연수생 수습

◆ 평가

- 시험 유형 : 진위형, 선다형, 단답형, 약술형,
모의기록에 따른 판결서 등 작성형
- in class & closed book & hand writing test 원칙
- 대부분 상대평가
- 과락 및 유급제도

24

사법연수생 수습

◆ 학점 및 등급제도

구분	등급비율	해당 과목
10단계	A+(7%), A0(8%), A-(10%), B+(15%), B0(20%), B-(15%), C+(9%) C0(7%), C-(5%), D(4%)	기본실무 5과목
5단계	A+(15%), A0(20%), A-(30%), B+(20%), B0(15%)	일반법률과목, 법조윤리과목
3단계	A+(30%), A0(50%), A-(20%)	전공과목, 외국법과목 교수지도학점

25

사법연수생 수습

◆ 최근 5년간 취업현황

구분	수료 인원	판사	검사	로펌	개업 고용	공공 기관	기업	사회 단체	군 복무	기타	미정
33기	966	112	77	177	346	36	46	16	147	9	
34기	957	96	85	178	311	58	55	18	146	10	
35기	895	91	90	172	209	63	43	11	170	46	
36기	975	89	88	273	204	74	46	4	180	16	1
37기	973	95	76	347	125	46	62	3	195	21	3

군복무후 취업하는 상황은 미포함

법관연수

◆ 연혁

- 법관연수 시작 : 1978년 7월 환경문제에 관한 법관세미나 등
- 경력별 연수의 확대 및 체계화(1992년)
- 전문분야 법관세미나 도입(2000년) ⇒ 세미나 결과를 재판실무편람으로 발간
- 분야별 연수 강화(2004년)
- 경력별 연수/분야별 연수/주제별 연수/세미나 체제 정립(2007년)
- 역할극 시행 등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2007년)
- 2007년까지 총 326개 과정의 연수에 14,041명의 법관(예비판사 포함)이 참가

27

법관연수

◆ 법관연수의 목표

- 전문지식의 함양 및 재판실무능력의 배양
- 법관으로서의 품격 향상과 가치관의 정립
- 친목 도모 및 근무의욕 고취

28

법관연수

◆ 연도별 법관연수 시행결과

연도	연수회수	총 연수일수	연수인원
1978	4	30	152
1985	8	20	200
1990	5	26	178
1995	9	39	358
2000	18	98	779
2005	21	70	1,081
2007	36	275	1,726
2008(예정)	41	225	1,927

29

법관연수

◆ 경력별 연수

- 신임판사 임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약 5년 단위로 징검다리 연수
(신임법관연수 ⇒ 초임단독연수 ⇒ 중견법관연수 ⇒ 초임지법부장연수)
- 해당 업무를 맡기 전에 직책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 전달 위주로
편성하고 연수 참가를 의무화
- 기타 고급관리자연수/법조경력자 신임법관연수/시군법원판사연수

30

법관연수

◆ 분야별 연수

- 특정분야의 업무를 처음 맡게 된 법관을 대상으로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실시하는 법관연수
- 종류 : 형사/행정/지적재산권/손해배상/의료/건설/상사 실무 법관연수
- 특수 분야별 연수 : 지원장 연수/외국어 연수

31

법관연수

◆ 주제별 연수

- 실무상 쟁점이 많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테마 중심의 법관연수
- 연수 주제는 법관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현안 위주로 매년 새롭게 선정
- 원내연수 : 사법정보화/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과 실무/소송상 감정의 쟁점과 개선방안/기업회계의 이해/기업인수·합병(M&A) 관련 법률과 실무/재판의 심리학/조세소송의 이론과 실무/조정·화해의 전략과 기술/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무
- 원외연수 : 법관의 리더십과 사회적 역할/국민과 사법/법과 경제학의 만남

32

법관연수

◆ 세미나

- 각종 제도개선방안이나 특정 전문분야 관련 주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 발표와 토론
- 종류 : 가사재판장세미나/소년보호재판장세미나/바람직한 민사재판모델 정립을 위한 세미나/신 형사소송법의 시행·정착을 위한 세미나/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세미나/민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전문분야 세미나/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

33

법관연수

◆ 2008년 법관연수 일정 개요

연수 유형	연수인원 및 기간	세부 연수 주제
경력별 연수	11개 과정, 589명, 116일	법조경력신임판사연수 I, II, 신임판사연수, 군법무관 출신 신임판사연수, 지법부장판사연수 I, II, 초임단독판사연수 I, II, III, 중견법관연수, 전임시군법원판사연수
분야별 연수	10개 과정, 560명, 44일	지원장연수, 형사, 행정, 손해배상, 지적재산권, 의료, 건설, 상사실무연수, 외국어연수 I, II
주제별 연수	12개 과정, 435명, 36일	원내연수 사법정보화 법관연수, 재개발, 재건축의 법률과 실무, 소송상 감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업회계의 이해, 기업인수 합병(M&A) 관련 법률과 실무, 재판의 심리학, 조세소송의 이론과 실무, 조정, 화해의 전략과 기술,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무
		원외연수 법관의 리더십과 사회적 역할, 국민과 사법, 법과 경제학의 만남
세미나	8개 과정, 343명, 25일	가사재판장세미나, 소년보호재판장세미나, 바람직한 민사재판모델 정립을 위한 세미나, 신 형사소송법의 시행·정착을 위한 세미나,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세미나, 민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 전문분야 세미나
합계		41개 과정, 1,927명, 221일

34

國家圖書館出版品預行編目資料

韓國醫師考試 OSCE 與司法考試制度/ 楊朝祥·
林光基·黃慶章 著. — 初版. — 臺北市：
考選部，民 99.03
面： 公分

ISBN 978-986-02-2833-5 (平裝)

1. 考試制度 2. 醫師 3. 司法人員 4. 韓國

574.324

99004995

書 名：韓國醫師考試 OSCE 與司法考試制度
編 印：考 選 部
作 者：楊朝祥·林光基·黃慶章
出版機關：考 選 部
地 址：台北市 116 文山區試院路一之一號
網 址：<http://www.moex.gov.tw>
電 話：(02)22369188 轉 3132
傳 真：(02)22367928
出版年月：九十九年三月

考選部出版品編號：MOEX-099-004(D-1)

GPN: 1009901086

ISBN: 978-986-02-2833-5 (平裝)